第143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7月20日(水)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請願審査小委員會構成의件
2. 現況報告(계속)(質疑)
   가. 勞動部所管

審査된案件

1. 請願審査小委員會構成의件 …… 1面
2. 現況報告(계속)(質疑)
   가. 勞動部所管(質疑) …… 1面

(14時25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읍니다.

○**立法調査官 孫俊哲** 立法調査官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

1. 請願審査小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請願審査小委員會構成의件을 上程하겠읍니다.

방금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가 있었읍니다마는 韓國勞總으로부터 勞動關係法改正에관한請願이 저희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읍니다. 이 請願의 處理와 관련하여 國會法 第118條와 國會請願審査規則 第8條에는 委員會의 請願審査를 專擔할 小委員會를 構成하고 閉會中에도 活動하도록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回附된 請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請願을 審査하기 위하여 請願審査小委員會를 構成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小委員會는 방금전에 各黨의 幹事와 會議해서 事前에 協議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民正黨 2人 野圈 3黨에서 各 1人씩 해서 5人으로 構成하되 小委員長은 民正黨側에서 選任하기로 이렇게 合意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委員長에는 金東仁委員 委員에 李康熙委員 李海瓚委員 李仁濟委員 金炳龍委員 이렇게 構成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李台燮委員** 紹介議員이 委員長 해도 關係없읍니까?

○**委員長 金令培**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勞總에서 請願한 件은 紹介議員이 金東仁議員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請願審査小委員會가 이번에 勞總에서 請願한 件만을 審査하는 것이 아니라 常設로서 앞으로 어떠한 請願件도 審査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異議가 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2. 現況報告(계속)(質疑)
가. 勞動部所管(質疑)

(14時29分)

○**委員長 金令培** 議事日程 第2項 現況報告를 계속해서 上程하겠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勞動部所管에 대한 質疑가 있겠읍니다.

먼저 質疑해 주실 委員은 金炳龍委員께서 해주시겠읍니다.

○**金炳龍委員** 먼저 委員長님 그리고 勞動部長官 同僚委員 여러분께 제가 제일 먼저 質問을 드리게 되어서 우선 한쪽으로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質問을 드릴 事項은 勞動時間 短縮問題에 대해서 먼저 質問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勞動時間이 勞動法 42條1項에 의하면 1週日間에 걸쳐서 1日 8時間 勤勞로 해서 48時間 勤勞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法案은 약 한 20年前에 制定된 法이고 全世界的으로 가장 우리나라가 勤勞時間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난날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나라가 빈약하고 產業이 發展이 안되고 하루에 8時間이 아니라 10時間 내지 12時間 일을 해도 살기가 어려웠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는 우리가 國民所得이 3,000弗線에 육박해 있고 企業도 25年前에 比하면 4·50倍 成長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法的인 勤勞時間이 全世界에서 가장 긴時間을 우리가 피땀흘려서 일을 해 나왔읍니다. 이제는 勤勞時間을 좀 단축시켜서 우리 勤勞者들도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고 또 그 職場에서 職業病이나 또는 피로의 회복을 위해서도 勤勞時間을 좀 短縮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1千萬 勤勞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勤勞時間을 딴나라의 例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읍니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같은 나라는 週31時間 「스웨덴」이 34時間 英國이 37時間 「핀란드」가 38時間 「카나다」가 40時間 美國이 38時間 蘇聯같은 共產主義國家에서도 40時間 日本도 40時間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勤勞時間을 단축시켜서 勤勞者의 행복을 위해서 좀더 時間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勤勞時間을 단축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선 企業人들이 생각할 때 時間을 단축시키면 生產性이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實施하고 있는 약 100餘個 企業體가 있읍니다.

그 業體의 결과를 조사해 보면 日東製藥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의 會社들이 거의 다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生產性이 도리어 감소가 아니라 10%가 성장이 됐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會社에 종사하면 1週日이면 5日 일하고 2日間을 휴식해서 그마만큼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 다음날에 會社에 출근하면 성심성의껏 일을 해주기 때문에 도리어 不良이 안 나오고 生產性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法으로 40時間 勤勞할 수 있도록 法을 改正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어서 40時間하면 土曜日을 제외한 金曜日까지 8時間 勤勞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全 事業體가 거기에 다 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의 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물의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政府方針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1週日에 40時間 勤勞를 할 수 있도록 政府가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80年度이후 8年동안 企業人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年度이후 企業人을 중심으로 勞動組合法을 改正해서 地方에 있는 勞動組合을 거의 다 해산을 하고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키고 그 勞使協議會法에 의해서 企業을 중심으로 해서 生產性에 주력하도록 이렇게 第5共和國政權이 모든 일을 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惡法은 撤廢되어야 되겠고 또 企業人만을 살찌우는 것보다는 적어도 1千萬勤勞者들이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週 40時間을 政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48時間에서 40時間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答을 勞動部長官께서는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質疑할 事項은 80年 5·17이후 권력과 힘에 의해서 집단으로 많은 勞動組合幹部 및 組合員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희생을 당했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政府가 5共和國에서 勞動組合法을 改正하면서 產別勞動組合에서 聯合體를 바꾸어 가지고 勞動組合을 약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地方에 있는 勞動

團體를 다 해산시키는 이런 法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勞動組合幹部나 任員으로서 일하던 사람까지 힘에 의해서 다 내쫓겼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數千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심지어는 勞動組合이라면 自律的인 團體요 民主的 方法에 의해서 우리가 選出됐는데 政府가 一方的으로 解雇 내지는 그 團體의 長을 強制辭任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生存權마저 박탈했읍니다.

얼마만한 罪를 지었고 이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만큼 생각을 했으면 生存權마저 끊었겠느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政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밝혀야 될 것은 그동안에 집단으로 解雇된 숫자 또 生存權을 박탈한 解雇者數字 몇 名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年5月17日이후 不當解雇 및 拘束者解雇 이것은 물론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과거의 잘 잘못을 잊어버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약한 國民들이 어떠한 權力이나 힘에 의해서 당한다고 하는 것은 民主主義社會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5·17이후 부당하게 解雇 및 拘束者가 많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不當解雇 및 拘束者數字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勞動部長官께서는 答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企業人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난날 80年度이후 企業을 중심으로 勞動組合을 약화시키면서 또 企業을 보호하는 勞使協議會法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勤勞者들에게 희생을 요구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29이후 자유라는 명분아래 우리 勞動者들이 모두가 事業場에서 8年동안의 쓰라렸던 것을 하루아침에 노출시켜서 勞使紛糾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企業人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었으며 또 企業人들이 그러한 法을 악용해서 그동안 不當勞動行爲를 한 企業人들을 政府는 몇 사람이나 拘束을 시켰는가 또 不當勞動行爲로 인해서 立件했는가 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80年度이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7·8年동안 1千萬勤勞者들은 年賃金引上 4% 내지 5%정도 賃金引上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賃金引上自體가 과연 勞使間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政府나 이 자리에 계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이나 또는 傍聽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政府가 一方的으로 經濟企劃院에서 今年度 賃金引上은 몇 % 이러면 그것을 勞動組合이나 또는 勤勞者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8年間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勞動協議會나 또는 勞動關係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도 하고 건의도 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8年 동안에 걸쳐서 企業人들에게 그야말로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을 주었읍니다.

그 혜택을 주었다는 증거로서는 뭐냐 昨年度 6·29이후 勞使間의 협의에 의해서 賃金引上된 것을 보면 平均 15%이상 25% 심지어는 30%까지 賃金引上을 한 事業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소위 政府가 8年동안에 걸쳐서 4% 내지 5% 많으면 6%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20%線까지 賃金引上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한 無計劃的이고 또 政治人들의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주었다 뺏았다하는 이러한 政策을 政府가 한다고 하면 우리 1千萬勤勞者가 政府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政府로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勤勞者를 억누르고 자유를 박탈해서 政府가 발표하는 4% 내지 5% 賃金引上을 할 수 있다는 與件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政府는 이렇게 勞使間의 自律的인 체제아래서 政府가 개입하지 않고 직접 勞使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賃金引上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勞動部

長官께서는 좀 答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5% 4% 이와같이 勤勞者들을 혹사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全世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용납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機關들이 참여하고 관여를 해서 우리 勤勞者들의 待遇改善에 대해서 방해도 하고 政府를 조정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한데 대해서 또다시 앞으로 政府가 이렇게 개입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質問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行政體制를 보면 특히 勞動部行政體制를 우리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는 現職에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반드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을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勞動部가 지금 地方事務所 地方廳 이렇게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勞動組合을 설립해서 申告할 때는 地方行政官廳에 申告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勞動問題에 대해서는 앞으로 地方事務所나 또는 勞動部에 申告를 할 수 있도록 勞動行政을 一元化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答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報告事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答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린게 있읍니다. 産業安全課로서 지금 勞動部가 그 體制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14萬이나 되는 災害者가 나오고 있읍니다. 安全이라고 하는 것은 災害가 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해야 되고 政府는 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安全公團도 필요하고 安全課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그와같은 安全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勤勞者들이 좀더 직장에서 안심하고 災害가 안 나는 방향에서 政府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1個課 가지고는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最小限度 局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全體事業場까지 安全에 관한 敎育 내지 企業主에게 敎育을 시켜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政府가 유도를 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리고 申告畢證에 대해서 앞으로 勞動關係法改正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勞動組合이 설립되면 區廳이나 또는 道나 勞動部에 申告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申告畢證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勞動部가 行政官廳에 道나 市에 제출안하고 勞動部의 申告로서 끝날 수 있도록 政府가 行政을 一元化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報告事項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늘 答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勞動委員會法 또는 그 組職 여기에 대해서 政府가 자세한 答辯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中央勞動委員會를 裁判所로서 政府는 이를 改正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裁判所의 委員長 하면 과거에는 長官級으로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次官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次官級으로 과연 判事나 권위있는 辯護士나 이런 분들과 충분히 의견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政府로서는 앞으로 長官級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이 몇 가지를 質疑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勞動部長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7 이후에 權力에 또는 힘에 의해서 集團解雇에 대한 責任問題 또는 이 사람들의 對策問題 여기에 대한 확실한 答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質疑를 끝마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會議進行에 대한 한 말씀 미리 드려두겠읍니다.

國會法 第56條에 의하면 常任委員會에서는 同一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 등의 제한없이 發言할 수 있고 또한 一問一答式으로 質疑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委員長으로서는 國會法 規定에 따라서 會議를 進行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李仁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李仁濟委員 제가 質疑하기 전에 議事進行發言을 먼저 하겠읍니다.

지금 共和黨 金炳龍委員께서 質問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質疑와 答辯의 活力을 위해서도 共和黨 金炳龍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長官이 答辯한 후에 그 다음 제가 質問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委員 말씀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慣例에 의하면 委員長과 幹事會議에서 몇 委員이 質疑를 하고 答辯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合意 決定된 데에 따라서 會議를 進行하고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開議하기 전에 幹事會議에서 合意한 바가 있읍니다. 그 內容은 먼저 네 분이 質疑를 하고 政府側 答辯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분의 質疑를 듣고 答辯을 듣도록 이렇게 合意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李委員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더 能率的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一問一答式의 質疑는 사실상 不可能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質疑하시는 委員 個個人이 그러한 式으로 質疑를 하면 自然的으로 一問一答式의 質疑答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委員長으로서 주지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委員님 여러분들의 自由에 속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李仁濟委員 本委員은 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一問一答式의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한 자세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에서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勤勞者가 1,000名以上인 業體 가운데 勞組가 아직 未結成된 業體가 34個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大規模의 業體에서 요즘처럼 勞組設立 또 勞動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狀況 가운데에서도 아직 勞組가 結成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會社에서 使用者側의 집요한 勞組設立 妨害行爲로 勞組가 設立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읍니다. 勞動部에서는 이와 같이 大規模 業體에서 勞組가 設立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調査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答辯말씀 드리기 전에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李仁濟委員께서 一問一答式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廣範圍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제가 잘 파악이 되지 못해서 충분한 答辯을 드리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事前에 양해를 구하면서 答辯을 드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 實務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가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李仁濟委員께서 質疑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勞動部로서는 1,000人以上 雇用하고 있는 業體 아직 勞組가 未結成되어 있는 業體에 대해서 왜 안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까지는 심층있게 저희들이 分析은 안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業體들이 勞組를 結成하려고 할 때는 저희들은 結成을 할 수 있도록 또 잘 結成이 되도록 政府로서는 勞動行政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積極的으로 勞組便에 서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지금 在野 勞動運動團體가 多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勞動部에서도 몇십個 團體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資料를 통해서 提出을 해주었읍니다.

지금 勞動部는 이와 같은 在野 勞動運動團體들이 지금 어떤 내용의 機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調査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在野 勞動運動團體라고 하는 것이 어떤 規制나 處罰의 對象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勞動運動의 活性化라든지 또 勤勞者들의 權益을 신장하는 그런 肯定的인 機能을 다수 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勞動運動團體들의 肯定的인 機能 分野는 사실은 勞動部에서 흡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部가 이런 在野運動團體와 어떤 對話 채널을 평소에 갖고 있는지 이런 점에 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

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읍니다.

저희 勞動行政을 담당하고 있는 勞動部로서는 지금 李委員께서 표현하신 이 在野 非在野 이것은 저희들이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國會에서 정해준 勞動關係法에 의거해서 法테두리內에서 勞動運動을 하는 그러한 機關 혹은 團體하고는 저희들이 積極的인 對話를 推進하고 또 현재까지 推進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指示가 되었읍니마는 積極的으로 對話의 통로를 트는 方向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報告드립니다.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세번째로 都市零細家內工業 勞動者들 또 中小企業에 종사하는 勞動者들은 作業場의 여러가지 與件 등으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서 勞動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제 地域區 이야기를 해서 안됐읍니다마는 選擧運動 期間中에 安養의 「그린힐」이라는 縫製工場이 火災事件이 일어나서 23名의 어린 女性勞動者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大慘事가 일어났읍니다. 그 現場을 살펴니까 우선 工場 자체가 無許可工場이고 또 그 無許可工場의 일부에 아직 待避施設도 없는 작은 寄宿舍 施設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닥친 火災에 피하지 못하고 모두 死亡을 한 그런 事件이었읍니다.

그것은 그 工場 뿐만 아니라 서울 변두리라든지 서울 周邊地域의 都市의 대부분의 家內工業이나 中小企業들이 工場用途가 아닌 建物에 貰들어서 아주 不良한 環境 가운데 作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環境 때문에 勞動者들은 상당한 職業病이라든가 이런 火災時에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그래서 「그린힐」火災이후에 어떤 事態가 벌어졌느냐 하면 安養市에서는 모든 無許可工場에 대해서 移轉을 하도록 독촉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렇게 되니까 事業者들은 또 적당한 옮길 工場이 없기 때문에 아주 먼 地域으로 移轉을 한다든지 또 事業을 廢業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렇게 되면 또 勞動者들은 失業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평소에 勞動部와 다른 經濟部處 사이에 協力을 해가지고 서울 변두리나 周邊都市에 이런 家內工業이나 中小企業을 經營하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條件에서 工場에 들어갈 수 있도록 家內工業團地나 또는 中小企業團地 또는 요즘 이야기 하는 「아파트」型 工場이라든지 이런 制度를 빨리 開發해 가지고 勞動者들이 위험으로 부터 해방되고 또 事業이 廢業한다든지 長距離로 移轉할 때 오는 生存權의 위협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런 制度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勞動部에서는 그와 같은 分野에서 政策開發을 어느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仁濟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우리 李委員님 地域 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 都心에도 그와 같은 형태의 環境이 미비된 零細工場이 많습니다. 가령 例를 들어서 淸溪川商街의 工場 저도 한 두번 실지 現場을 둘러봤읍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勞動部로서는 關係部處와 協議해서 이번에 工場을 移轉하면서 새로운 環境에서 새로운 作業으로 그대로 營爲하는데 그 사람들이 市場性 問題도 있기 때문에 交通이 편리한 都市圈 地域에 政府가 投資를 해서 「맨션」工場 다시 말씀드려서 賃貸工場 형식으로 지어서 零細商人들을 移住시키는데 移住할 때는 稅制上으로도 特惠를 줄 수 있는 그같은 政策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總理室 또는 商工部하고 이 문제는 현재 協議中에 있읍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無許可工場 그 地域으로 부터 移轉命令을 받았을 때에 都市圈內에는 사실 마땅한 工場敷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政府全體의 國土利用計劃에 이러한 零細性 工場을 移轉할 수 있게끔 可及的이면 都市圈內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면 生産社員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交通問題까지도 고려를 해서 劃期的인 政策을 施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勞動部만의 힘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政府 經濟部處 各部에서 종합해서 이러한 문제를 현재 協議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돼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月餘가 지났다 하는 것을 經過를 參考的으로 報告말씀 드리겠읍니다.

○李仁濟委員 다음은 勞動部傘下 勤勞福祉公社

에서 여러가지 産災事故 또 職業病을 治療하기 위한 醫療施設을 經營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 職業病 가운데는 무슨 硅肺症이라든가 또는 重金屬汚染疾患…… 상당히 一般人들한테는 없는 그런 특이한 疾患으로부터 勤勞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本委員의 常識으로는 이와 같은 특수한 疾患을 治療하는데는 一般 醫療陣 가지고 잘될 것이냐 하는 疑問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傘下醫療機關의 醫師들의 明細를 요청해서 여기 나와 있읍니다마는 先進國의 例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특수한 疾患에 대한 特殊醫療陣을 養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관한 計劃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이런 産災分野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等閑視해왔던 政策의 一環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읍니다. 과거 急成長하는 過程에서 輕工業으로부터 重化學工業으로 産業構造가 개편됨에 따라서 그 期間에 있었던 公害問題가 潛伏期間을 거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時期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金炳龍委員님께서도 좋은 指摘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 현재 1個課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課의 性格 내지는 人員의 增員을 지금 硏究하고 있고 措置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産災部門에 대한 專門人員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고 또 知識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가령 例를 들어서 塵肺患者는 炭鑛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點檢을 하다보니까 아직 완전히 點檢이 되지 못해서 發表는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一部 造船業界 鐵鑛業界 또는 纖維縫製工場에서 塵肺患者가 발생하는 事例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제가 서울大學病院長하고 通話를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産災를 취급하는 機關은 可及的이면 國內의 權威있는 病院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서울大學病院하고는 産災契約이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일단 簡易契約을 해서 만나보았읍니다마는 서울大學도 이런 産災部門에 대한 專門醫師들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 分野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特別計定에서 또 할 애받는 限이 있더라도 앞으로 積極的으로 投資해서 필요한 人員을 養成시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業務를 推進中에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지난번에 이란 캉간에서 爆發事件으로 大林勤勞者들이 多數 死亡하고 負傷당하는 事件이 일어나서 우리 社會에 충격을 주었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海外 勞務官이 派遣되지 않은 나라에 우리나라 勤勞者들이 나가 있을때 이 監督系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캉간 現場은 이란 領事館의 領事한테 監督業務를 委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이란 문제가 발생하자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는 勞務官이 常駐하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勞務官을 急派시키려고 指示는 했읍니다. 그런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公館長한테 저희들 業務를 指示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事故가 나기 전에 勤勞監督業務를 누가 대신 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당시에 公館長한테 지시해서 現地 領事가 이러한 業務를 執行을 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것이 現地領事한테 監督業務를 委任하고 또 평소에 어떻게 監督하고 있는지 그 狀況을 수시로 報告를 받으셨읍니까? 文書로……

○勞動部長官 崔明憲 文書로 報告받은 적은 없읍니다. 平常時에 별일이 없을 때는……

이번에 문제가 나다보니까 이러한 脆弱點이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參考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政策的으로 보완을 시킬 생각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勞務官이 派遣되지 않은 國家에 나가있는 業體에 대해서는 勤勞監督이 사실상 안되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勞動部의 勞務官이 나가서 監督하는 것보다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外務部當局과 協議中에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勤勞者들이 나가있는 데

는 저희 勞動部의 勤勞監督官을 派遣시키도록 요청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國家財政上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이 끝나면 擔當局長으로 하여금 우선 調査班을 編成해서 저희 勞務者가 나가 있으면서도 勞務官이 없는 地域은 가서 한번 점검을 시켜볼 그러한 計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읍니다.

大林産業이 「캉간」現場 工事를 맡아가지고 나갈 때 勤勞者가 한 이삼百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勞動部에서는 戰爭地域이니까 會社에 대해서 戰爭保險에 加入하도록 이렇게 指導한 일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러한 地域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各種 保險은 전부 다 加入하도록 그렇게 지금 指導를 하고 있고 중복이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는 전부다 加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大林産業에 대해서 「이란」 「캉간」現場에 就業시키는 勤勞者들에 대한 戰爭保險을 들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指導한 사실이 있다 말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戰爭保險까지는 저희들이 具體的으로 指示는 안 했읍니다. 그러나 勤勞者들이 현지에서 産災입을 때 줄 수 있는 그러한 保險은 전부 加入하도록 그렇게 指示가 되어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이 勤勞災害補償保險인데 그것은 加入되어 있지만 戰爭爆擊으로 인해서 死亡하거나 負傷한 사람은 勤災事故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會社에서 이번에 補償을 안해 줬다면 전혀 補償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戰爭保險에 하옇든 加入하도록 이렇게 指導한 사실은 없단 말이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이 戰爭保險이라고 危險手當保險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保險은 指示가 되어 있지 않고 勤勞者에 대해서는 災害保險을 당연히 加入하도록 이미 指示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大林의 경우는 勤災保險에 加入하고 있으므로 그 水準은 勤勞基準法 水準 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補充質問하겠읍니다.

우선 勞動部에서 海外勤勞監督官을 파견하는 例가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현재 저희들이 12個 나라에 나가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다 해서 몇 名 나가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10個國에 12名이 나가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이란」 「캉간」現場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이란」에는 없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戰爭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한 勤勞現場에 왜 監督官이 파견 안됐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地域뿐만 아니라 北「예멘」 여러가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파견하려고 關係當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빨리 타결이 안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李相洙委員 납득이 안가는 것이 가장 勤勞條件上 문제가 있는 戰爭地域에 왜 勤勞監督官을 파견 안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파견 안됐었읍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해봤었는데 冒頭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비단 그 地域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勞務官 파견문제는 저희들이 任意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外交官 地域이기 때문에 外務部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사건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다소 힘들겠읍니다마는 國會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 勞動部를 위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全地域에 다 내보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李相洙委員 만일 勤勞監督官을 파견했다면 이번 事態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는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읍니다.

○盧武鉉委員 李仁濟委員 質問 答辯에 관해서 조금 미흡한 部分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李仁濟委員님의 맨 첫번째 質問에서 1,000名이상의 事業體에서 勞組未結成業體가 34個인데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왜 아직 設立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分析을 해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같은 社會的으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 分析을 할 義務가 勞動部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分析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로는 政府로서는 勞組의 편에 서서 指導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勞組의 편에 서서 指導한 具體的인 實例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質問속에서는 지난번 三星重工業 巨濟造船所에서 勞組設立 방해를 이유로 하는 말하자면 勞組設立을 했을 때 같은 날짜로 勞組設立申告書가 이미 接受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勞組設立申告書가 반려되고 그 이후 勞組設立을 하려던 위재학씨를 비롯한 數人의 勞動者들이 서울에 와서 籠城을 했던 事件…… 그 事件에 관해서 勞動部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政府로서는 勞組 편에 서서 指導를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調査를 해서 어떤 法的인 措置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勤勞福祉公社에 관한 李仁濟委員의 質問과 관련해서 현재 中央病院……

○梁慶子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盧武鉉委員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質問順序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른 質問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質問에 포함해서 質問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議事進行發言했읍니다.

○李相洙委員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관련된 문제를 그때그때 質問하는 것이 效率的인 것같습니다.

○盧武鉉委員 答辯이 충분하다면 묻지 않아도 좋을 것같은데……

○委員長 金令培 盧武鉉委員님 發言하시는 도중에 다른 한 쪽의 委員들로부터 異議를 提起받았읍니다. 따라서 梁慶子委員께서 자기 發言順序가 온 다음에 質問할 要旨를 얘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國會法이 새로 改正이 되어서 議員 一問一答式의 質疑가 許容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것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같은 委員들간에 산만해지고 異見이 생겨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委員長으로서 걱정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를 다루는데 성실하고 충실하고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會議進行에 있어서 원만하고 질서있게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精神下에서 이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하면 피차간에 불편한 관계없이 進行할 수가 있을까하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質疑順序가 오면 一問一答式으로 하든 一括質疑를 하든 그것은 自由에 속하는 것이고 또 他委員이 들을 때에 答辯이 미흡하다 이럴 때에도 이것은 자기 質問順序가 왔을 때 그 점을 확실하게 質疑해서 答辯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피차에 불편한 관계가 덜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것이 서로 양해가 안 된다고 하면 잠시 停會를 해서 幹事會議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會議를 進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盧武鉉委員 저로서는 委員長님 의견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핏보면 그것을 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견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나의 쟁점이 떠올랐을 때 그 문제를 한번 완전하게 파헤치고 넘겨버리는 것이 發言順序 與否보다는 실질적으로 충실한 討論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梁慶子委員의 異議도 받아들이고 委員長님의 勸告도 받아들이겠읍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방식도 고려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質疑는 李海瓚委員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質疑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얘기를 좀 根源的인 것부터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解放後 産業化過程이 대개 65年頃부터 약 20年에 걸쳐서 시작되어왔는데 그 동안에 무수한 勞動者들이 죽은 사람도 많고 負傷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 勞動部에서 提出한 資料를 확인해 보

면 지난 20年동안에 약 한 3萬名 가까이 죽었읍니다. 또 30萬名 가까운 사람이 負傷을 당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大林事件으로 해서 10餘名이 死亡한 것이 굉장한 社會的 문제가 됐는데 지난 20年동안에 3萬名 가까운 數字가 産災로 죽고 또 30萬名에 가까운 數字가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年동안에 정말 엄청난 戰爭을 치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年동안에 産業戰爭을 치르는 과정속에서 勞動者들의 賃金이라든가 人間的인 멸시라든가 이렇게 겪어온 희생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많은 勞動者들이 희생을 치르면서도 經濟成長을 이룩한 결과는 반드시 社會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몇 가지를 먼저 묻겠읍니다.

하나는 지난 65年度부터 지금가지 實質經濟成長率과 實質賃金成長率間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勞動者한테 分配되느냐 企業主가 獨占하느냐에 따라서 그 社會의 分配程度가 決定이 되고 그런 不平等度가 바로 社會的인 安定을 가져오느냐 불안을 가져오느냐 하는 큰 가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勞動部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生産性向上部分과 實質賃金向上部分의 격차 그것이 20年동안에 누적되어서 현재의 經常價格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우리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당장 答辯을 못드리겠고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예. 좋습니다. 실제로 高麗大學校에 있는 勞動問題硏究所의 어느 敎授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가 나중에 정확한 資料는 제시를 하겠읍니다마는 현재 勤勞者 한 사람당 5,700萬원에 상당하는 돈이 獨占財閥에게로 몰려갔다 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읍니다. 결국 5,700萬원이라고 하는 算出方法論에서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勞動部의 資料에 의해서 제가 算出을 해봐도 큰 차이는 안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800萬 勞動者라고 할 경우는 엄청난 富의 편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돈이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약 1割의 人口가 土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바로 그 돈이 土地의 70%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經濟構造에서 利子나 賃貸料 이른바 不勞所得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GNP 중에서 약 20%에 해당이 되고 있읍니다. 그 불과 얼마 안되는 이른바 利子나 賃貸料所得者가 차지하고 남는 돈 남은 生産量을 가지고 勞動者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紛糾가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도 獨占財閥인 大企業에 있어서는 經濟的인 條件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下都給業體를 중심으로 하는 中小企業에서는 더 나쁜 條件에서 分配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韓國經濟 20年 과정속에서 엄청난 構造的인 不均衡의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勞動問題를 行政府 官僚라든가 이런분들한테 문제를 추궁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읍니다. 아마 行政府 官僚들도 經濟部處와 閣僚會議에서 勞動部의 힘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실텐데 바로 우리가 원천적으로 생산한 富의 基本的인 分配構造에도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勞動問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만한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비애를 갖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勞動問題이기 때문에 또 勞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人間의 상품만이 아니고 자기를 실현해 내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限 그래도 고쳐보자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勞動組合의 活動이 本格的으로 시작된 것은 대략 70年代 後半부터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일부 勞組가 있었고 個人的인 勞動의 저항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70年代 後半에 民主勞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다가 80年度에 오늘 資料要請에 보면 醇化敎育이라든지 淨化措置 당한 名單을 提出을 요구했으나 하나도 提出이 안됐읍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저도 80年度에 治安本部 特殊搜査隊에서 調査를 받을 적에 이른바 勞總委員長

들이 저하고 같이 調査를 받았던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資料提出이 안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質問을 하겠읍니다. 그런 이후 대개 87年과 今年에 들어와서 勞動爭議가 비약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왜 87年과 88年에 爭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長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먼저 逆으로 맨 마지막 部分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昨年 11月 現 執行하고 있는 勞動關係法이 改正되기 전까지는 어떤 部分에서는 勞動3權이 희생됐던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昨年 6·29宣言 이후 엄청난 勞使紛糾가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삼천오륙백件 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昨年 6·29 이후 그러한 民主化로 가는 國民의 열망과 더불어 勞組運動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勞動關係法이 改正이 됐는데 그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今年에 들어와서는 昨年 下半期에 있었던 勞使紛糾와는 달리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마는 그래도 勞使雙方이 어떤 法 테두리內에서 制度圈內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몇 年 더 계속되면 우리나라 나름대로 독특한 勞使間의 관행이 정립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또 勞動行政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啓導라고 할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質疑하신 勞動生産性과 實質賃金間의 격차 이것은 李委員님께서 65年 이후 현재까지 약 20餘年間의 것을 요구를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여기 資料에 나와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統計調査가 集計되기 시작한 것은 1970年부터 昨年 87年까지 18年間의 統計數字가 나와 있읍니다.

이 統計內容을 볼 것같으면 이 期間中 勤勞者의 名目賃金은 23倍로 上昇하였으나 物價上昇率을 감안한 實質賃金은 3.4倍로 증가했고 한편 産出量을 기준으로 한 物的 勞動生産性은 5.4倍로 上昇하고 附加價値 生産性은 3.2倍로 上昇한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 따라서 産出量 基準의 勞動生産性만으로 판단한다면 勞動生産性 增加에 비하여 實質賃金 增加率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物的 勞動生産性의 기초가 된 産出量 增加는 勤勞者의 生産效率向上 이외에도 機械設備의 增加 새로운 技術과 經營技法의 도입 등 複合的인 要因에 의한 것으로 産出量 增加가 모두 生産職 勤勞者의 기여에서만 이룩됐다고는 100%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附加價値 基準의 生産性은 外國의 例를 보거나 理論的인 관점에서도 成果配分의 指標로 보다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附加價値 生産性은 生産職 勤勞者뿐 아니라 常備 勤勞者 전체를 對象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價格變動狀況을 감안해서 策定한 實質 附加價値 生産性은 3.2倍로 上昇한 것으로 나타나 實質賃金 增加가 반드시 勞動生産性 上昇에 못미친다고 一律的으로 規制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附加價値 生産에 있어서의 資本과 勞動의 관계에 관한 지루한 經濟學的 論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그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補充答辯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일부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生産性 上昇率에 비해서 勞動費의 上昇率이 못미쳤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政府도 6共和國 出帆以後 勤勞者들의 中産層化를 위해서 積極的인 配分 기타 稅制面에서라든지 여러가지 部門에서 積極的인 政策을 앞으로 施行하겠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常識的으로 말씀드려서요.

어느 小說家의 小說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한 배를 타고 어떤 환상의 섬을 찾아가면 寶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같이 노를 저어서 힘을 합쳐서 가자 라고 船長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千辛萬苦끝에 그 섬에 다다랐읍니다. 그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마 30萬名의 勞動者가 다쳤고 3,000名의

勞動者가 죽었을 겁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주 實物이 많은 섬인데 그 섬에는 이미 主人의 푯말이 다 붙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年의 經濟成長過程에서 우리가 지금 도착해 보니까 西小門 땅은 三星에서 차지했고 桂洞 땅은 現代에서 차지했고 乙支路 땅은 「롯데」에서 차지하고 이런 式으로 20年의 經濟成長 끝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이미 1割밖에 안되는 地主가 70%의 都市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社會로 변모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그렇게 生産性에 있어서의 機械設備와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常識的 判斷에 얼마나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점을 저는 확인하고 싶고요. 質問이 아닙니다. 다시 質問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에 제 質問의 趣旨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87年에 많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 3,300個의 事業場에서 一連의 波濤와 같이 紛糾가 발생했는데 왜 하필 87年에 와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것입니다.

80年부터 86年까지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다가 87年에 와서야 全國 勞動者들이 이른바 3,300個 事業場의 數字만 해도 그것이 몇십萬名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87年에 와서 그렇게 한꺼번에 波狀的으로 紛糾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잘 아시다시피 昨年 6·29以前의 紛糾는 불과 200件 內外였었읍니다. 6·29宣言以後에 社會 各分野에서 民主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勞動運動도 그러한 방향으로 指向하다 보니까 그러한 엄청난 紛糾가 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응 거쳐야할 그러한 일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紛糾가 발생하기 이전에 勞動者들은 그러한 民主化를 要求를 안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당시는 제가 이 分野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責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러한 欲求는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狀況은 잘 아시다시피 政治 社會 文化 모든 分野의 複合的인 狀況이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社會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個人의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複合的이라고 抽象的으로 말씀하셨는데 複合的인 것이라는 內容을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具體的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長官님이 答辯하시기 어렵다면 제가 長官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한 社會에서 勞動者들의 權益을 보장하는 것은 近代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의 個人의 權利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社會가 이른바 獨占財閥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富가 편중된 社會속에서의 弱者인 勞動者들의 權利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基本的으로 勞動政策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勞動者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根本的인 組織이 이른바 勞組 勞動組合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 勞動組合의 活動을 저해하는 政府의 政策이 이른바 勞動統制政策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라는 제가 직접 勞動研究論文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豫斷的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실제로 80年부터 86年에 이르기까지 勞動部가 勞動統制를 하기 위해서 勞動者들의 集團的인 움직임을 統制하기 위해서 施行한 政策을 말씀해 보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 自負心을 갖고 있다면 한 가지 어느 部處보다도 勞動者의 權益保護 伸張을 위해서 노력하는 部가 있다면 勞動部라고 저희들은 自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勞動統制를 하기 위해서 과거 勞動部가 선두에 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狀況을 저희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가지 社會的인 構造 이것이 그러한 結果를 낳도록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다 具體的인 것은 저 자신도 좀더 연구해서 나중에 별도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묻겠읍니다.

이른바 關係機關對策會議라는 것을 勞動部가 勞動問題에 관해서 가끔 하는 것으로 新聞에 報道도 되고 또 확인도 됩니다마는 勞使問題가 발생했을 적에 勞動部가 關係機關對策會議를 하는데 關係機關對策會議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가 와서 勞動關係對策會議를 하는 것은 주로 經濟部處의 長官들이었었읍니다. 아까 우리 李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힘있는 勞動部가 되려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읍니다. 또 國會도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勞動委員會가 별개로 常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 勞動部 혼자만의 힘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가령 발생했을 때 例를 들어서 經濟部處 相互間에 積極的인 그러한 協調가 필요할 때 저희들은 關係官會議를 召集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간 建設業體들에 대한 여러가지 勞使問題에 문제가 있어서 建設部長官 經濟企劃院長官 이것은 勞動部長官이 主가 되어서 召集을 해서 이러한 對策會議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흔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對策會議 할 것 같으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갖는 會議로 알고 있는데 本人이 赴任해서 한 對策會議라는 것은 주로 勞動行政을 보다 有效適切하게 施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經濟部處 長官들끼리 모여서 여러가지 勞動問題에 관한 문제를 協議한 그러한 會議였었읍니다. 그러나 일부 地方에서 저희들이 報告를 받았읍니다마는 地方에서 實施하고 있는 對策會議에서는 그 地方長官 가령 例를 들어서 道知事 市長이 주축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 關係機關長들이 모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정확한 報告는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長官님으로서는 業務를 管掌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地方에 있는 勞動爭議에 있어서도 地方長官을 비롯한 關係對策機構에 누가 참석하는 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인데 關係機關對策會議에 治安次元에서 참가하는 사람은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本部에서 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읍니다.

○李海瓚委員 아니 地方에서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地方에서는 地域勞動對策會議라고 하는데 地方 勞動對策會議 委員長은 市 道知事가 되어 있읍니다. 委員으로서는 關係地方 官署長 그 다음에 地域勞動對策實務會議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委員長이 市道 副知事 委員은 委員長이 위촉하도록 이러한 人員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安全企劃部員은 참가를 안하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여기에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읍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長官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같은데 昨年에 제가 직접 勞動問題로 立件된 사실이 있는데 그때 安全企劃部長이나 檢察이 참석을 했어요. 정확히 答辯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本人이 赴任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만약에 地方勞務行政에 對策會議에 安企部가 참가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長官님은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再考를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報告드렸읍니다마는 그 地域에는 地域對策委員長이 市 道 地方長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勞動部로서는 그런 문제는 附屬問題는 地方長官들에게 委任되어 있기 때문에 參考的으로 그러한 문제가 돌출될 때는 長官으로서 저의 意見을 전달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李海瓚委員 長官님 所見으로는 그런 關係對策會議에 安企部라든가 保安司라든가 이런 民主次元의 治安이 아닌 그런 部署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문제는 옳고 그르기 이전에 제 자신은 제 常識線에서 業務를 執行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淸州에서 택시 罷業이 있어가지고 두번

을 淸州에 갔었읍니다. 淸州에 가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던 끝에 淸州에서 6月1日에 그 勞組側 代表 5名과 事業主들이 協約을 해서 協定을 맺었는데 바로 그로부터 이틀후에 淸州「택시」가 全面的인 罷業을 했었읍니다. 淸州「택시」가 全面的인 罷業을 한 후에 제가 얼마후에 淸州에 갔었읍니다. 가서 淸州 勞動事務所長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읍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關係對策會議에서 收拾方案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분들이 收拾方策을 모색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副知事하고 保健局長하고 事務所長하고 安企部가 참가를 한다고 하시더구만요. 安企部 누구냐 라고 하니까 朴課長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가를 한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議員生活을 하면서 여러個 現場을 다녔읍니다만 너무나 勞務行政官吏들이 자꾸 食言의 말을 그 다음에 바꾸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날은 錄音器를 틀어놓고 하자고 해서 錄音器를 틀어놓고 서로 對話를 나누었읍니다. 그 「테이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필요하시다면 複寫를 해서 드릴 수 있읍니다. 바로 淸州勞動事務所長이 安企部가 참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管轄部署를 責任지고 계신 長官님으로서는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다르다고 누구나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委員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사실인데 積極 是正시키겠읍니다.

단 한 가지 治安當局者가 가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 對策會議에 오는 것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冒頭에서 말씀하신 安企部나 혹은 保安司 저희들 本部에서는 그러한 事例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地方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가 地方長官 내지는 저희 關係事務所長한테 指示하도록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87年에 왜 이렇게 勞使紛糾가 산더미처럼 쏟아졌느냐 하는 것의 한 背景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勞使間에 自律的인 調整을 하도록 그렇게 勞務行政이 施行되는 것이 아니고 勞動者들의 움직임은 바로 治安의 不安으로 본다 혹은 흔히 冷戰社會속에서의 「매카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바로 빨갱이들의 장난이다 이러한 姑息的인 思考方式을 가진 사람들이 勞動者의 움직임을 無條件 社會不安要素로 보고 그것을 계속 統制하는 內治次元에서 統制하는 한 일환으로 바로 安企部라든가 保安司가 참가하는 것을 當然視해 왔던 그러한 勞動에 대한 관념때문에 꾹 눌려있었던 문제가 昨年 6月以後 그러한 統制力이 약해지면서 산더미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우선 물은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長官으로서 제 분명한 所信은 무슨 體制自體를 부인하는 勞動運動을 憑藉해서 이러한 어떠한 分野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勞動部로서는 단호히 對處하겠다는 政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李委員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떠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對策會議에 참여하고 있다 만일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積極 저희들이 防止하는데 全力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두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뒤에 質問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점을 우선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 勞動委員會가 많이 있을테지만 오늘은 그래도 몇 가지 굵직한 대목은 質問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양해를 드립니다.

○李相洙委員 잠깐 議事進行發言하겠읍니다.

아까 梁慶子委員께서 各 質問者가 質問한 다음에 補充質問은 나중에 자기가 質問할 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았읍니까? 저는 盧武鉉委員의 입장에서 反對합니다. 사실 우리가 效率的으로 會議를 進行하려면 그리고 가능하면 實體的인 眞實을 발견해서 문제를 處理하는데 서로 協調하려면 오히려 關聯問題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짚어서 處理하는 것이 훨씬 效率的입니다.

만일에 委員長께서 그러지 말고 자기가 質問할 때 하라고 한다면 제가 전부 적어가지고 제가 할 때 時間制限이 없으니까 저는 無限定

으로 하겠어요. 그것이 좋을는지 차라리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建設的인 意味에서 묻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는지 다시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李相洙委員 말씀 理由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委員長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會議進行만은 원만하고 秩序를 유지하는 方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러한 뜻에서 바탕을 두고 委員長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의 事案을 놓고 質疑 應答을 할 때 그 事案에 대해서는 모든 委員들이 누구든지 質疑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制度化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李相洙委員 發言內容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좋으냐 또 全體意思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合意가 되면 또 그렇게 進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서로간에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方法으로 進行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서로가 확연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論難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李海瓚委員께서 아직 계속 質疑中이시지요?

그러면 다음 한 분이 梁慶子委員이 남아 계신데 梁慶子委員의 質疑까지 마치고 그 다음 政府答辯을 듣고 우리가 따로 幹事會議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可否間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 質問하십시오.

○李海瓚委員 質問을 계속하겠읍니다.

역시 政府의 統制政策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政府의 統制政策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동안에 「블랙리스트」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高麗皮革에서 勞動者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總務課 事務室에서 700餘名의 名單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됐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실을 長官님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알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名單이 있는데 특히 城南住民敎會 이해학牧師라는 분이 하시는 敎會입니다. 이해학牧師 海字 돌림이기 때문에 저하고 가까운 친척지간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학牧師가 하시는 城南住民敎會 敎人들의 일부가 「블랙리스트」名單에 들어가 있읍니다. 敎人이기 때문에 勞動者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 敎人이 勞動者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70살 먹은 할머니 名單이라든가 아주머니名單도 거기 들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누가 작성한 것이며 작성해서 돌리는 「블랙리스트」가 城南一圓에 언제부터 배포가 되고 무슨 목적으로 돌려진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말씀드리겠읍니다. 88年6月중 한겨레신문 東亞日報 등에 報道된 바 있는 勤勞者「블랙리스트」關聯記事에 대해서 新聞에 의거해서 當部는 즉시 該當事務所 내지 該當機關에 지시해서 眞相調査를 명했읍니다.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城南 高麗皮革의 경우 勞務擔當職員이 自社勞使紛糾에 대비하여 작성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大田에 한우나 또 제일제침의 경우는 會社에서 해고된 勤勞者 모임인 한마음會라는 친목계가 있답니다. 친목계의 會員名單을 「블랙리스트」라고 報道됐다고 변명하고 있읍니다.

또 金星社 平澤工場의 경우는 그 平澤社 및 下請業體 勞使紛糾를 예방한다 해 가지고 농성에 가담했던 勤勞者名單을 下請業體 23個所에 통보 하달했던 것같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부분은 저희 城南事務所에 의거해서 告發이 됐읍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블랙리스트」問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향후 勞動部로서는 부당한 人權侵害라고 보면서 만일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단호히 그와 같이 지시하고 실행하는 會社에 대해서는 依法措置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블랙리스트」는 憲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할 수 있는 權利를 박탈하는 대단히 反時代的인 反勞動的인 그런 문서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하셨다고 하는데 金星社 平澤工場에서 동신電子에 보낸 採用關聯業務協

調要請의件이라는 公文書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 公文書에 보면 최경호 이재무 염길자 오창욱 네 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紛糾를 주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사유를 적시를 하고 住民登錄番號와 最終學歷까지 소개를 하면서 當 工場勞使紛糾關聯解雇者 또는 退職者 採用으로 인한 貴社의 勞使紛糾事前豫防을 위해서 보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중에서 보면 흔히 요즘에 말하는 僞裝就業者라고 하는 學生들이 勞動運動을 하기 위해서 就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高等學校卒業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이도 61年生에서 67年生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입니다.

67年生이면 이제 20살밖에 안 된…… 이 文件이 昨年것이니까 20살밖에 안된 아이의 就業을 이렇게 방해할 목적으로 보낸 文件입니다.

"上記人들이 入社志願時 貴社를 위해서도 반드시 採用하지 말기 바람" 金星社 平澤工場社長 도장 꽝 찍고 公文날짜까지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명백한 「블랙리스트」가 24個 事業場에 돌았다고 지금 長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認知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勤勞基準法에 위반이고 憲法精神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平澤事業場에 대해서 勞動部가 어떤 告發措置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報告를 드렸읍니다마는 金星社 平澤工場問題는 서울 南部支廳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읍니다. 지금 李委員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紛糾는 87年8月13日부터 8月26日까지 있었던 勞使紛糾過程에서 발생됐던 것입니다.

參考的으로 平澤工場 勤勞者는 5,570名을 고용하고 있는 會社인데 그 가운데 組合員은 4,500名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읍니다마는 經營者가 무슨 지시한 것이 아니라 今年 3月25日 同社 下請業體인 동신電子외 22個所에 최경호 외 3名의 勤務期間 解雇事由로 해서 住民登錄番號까지 적어서 돌렸다고 하는 것이 사실확인이 됐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告發이 되어서…… 지난 6月28日 告發이 됐읍니다. 현재 南部支廳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李海瓚委員 勞動部가 직접 告發하셨읍니까? 被害當事者 네 名이 告發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當事者가 직접 告發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勞動部는 아무 措置도 취하지 않았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여기에 대한 경위만 저희가 水原地方勞動事務所를 통해서 조사한 바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事業主가 이렇게 명백하게 勤勞基準法을 위반했을 경우 勞務行政을 관장하는 勞動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마땅히 告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앞으로 告發하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앞으로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는 勞使紛糾過程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가령 馬山에 있는 統一產業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보면 會社가 이른바 秘資金이라고 해서 安企部라든가 이런 데에 情報費 형식으로 上納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단 그 會社뿐만이 아니고 大學校에서도 그런 文件이 발견이 되어서 社會的 物議를 자아냈던 적이 있었읍니다. 결국 한 事業場에서 본다면 이런 資金은 새로 얻어진 附加價値를 工場設備를 더 늘리든가 福祉施設을 하든가 賃金으로 주든가 積立시켜서 會社가 어려울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秘資金으로…… 이른바 稅金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經營에 큰 압박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一般的인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

바로 이런 것중에서 혹시 저는 기우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약 300名의 勤勞監督官들이 약 11萬個의 事業場을 勤勞監督을 하고 있는데 바로 勤勞監督官도 이런 대상이 혹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이 된다고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임하고 나서 특히 勤勞監督官問題는 對民窓口役割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勞動部의 거울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勤勞監督官은 特定職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勤勞監督官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當部에서는 현재 職列을 改正해서 보다 우수한 사람들 정예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 職制改編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勤勞監督官에 대한 것은 敎育을 통해서 좀더 사명감과 의식을 개조시켜서 지금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우가 없도록 앞으로 이것은 본인이 在職間에 전력을 경주해서 시정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統一問題에 대해서는 지난 번 本會議에서 盧武鉉委員님께서 質問하셨을 때 저도 答辯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침 內務部長官께서 이러한 答辯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答辯은 안 했읍니다마는 그 搜査結果 저희 當部에 소속해 있는 職員의 어떠한 非違事實이 나오면 이것은 法에 의거해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海瓚委員 그 다음에 저도 議會活動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에 在野活動을 하면서도 勤勞監督官의 問題點은 누누이 겪어 왔읍니다.

실제로 300名의 勤勞監督官이 11萬個의 事業場을 일일이 다 돌아 본다는 것은 저도 現實的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勤勞監督官이 돌아다 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 勞動者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某 勤勞監督官은 스스로 자칭 자기는 勞動者의 아버지다 그랬는데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는 勞動者의 搾取者지 아버지는 아니었읍니다.

실제로 勞動者들이 勤勞監督官 만나는 것을 警察署刑事 만나는 것 보다도 더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事業場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저는 여러번 경험을 했읍니다.

차제에 勞務行政의 가장 중요한 部署중의 하나가 저는 地方勞動事務所의 勤勞監督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業務이기 때문에 刑事立件할 수 있는 權利까지도 부여해 놓고 있읍니다. 勤勞監督官들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地方勞動事務所長은 勤勞監督官에 대해서 얼마만한 統制力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의심스러운 바가 많았읍니다. 勤勞監督官은 다른 데로 가더라도 역시 勤勞監督官을 하기 때문에 勞動部의 다른 職員과 달라서 所長의 지시가 그렇게 유리할 때는 먹히고 불리할 때는 잘 안 먹힌다는 것을 많이 느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政策的인 문제입니다마는 勤勞監督官選定問題와 人事權問題에 관해서 보다 勞動部의 政策이 合目的的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質問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一線行政機關과 유사한 勞動委員會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얼마전에 原州基督敎病院에서 成完熙씨라는 鑛山勤勞者가 운명을 했읍니다. 그 경과를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成完熙씨가 28살된 採炭鑛夫인데 이분이 焚身을 한 끝에 죽었읍니다. 그래서 葬禮問題를 가지고 會社側과 대단한 충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焚身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한테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會社에서 不當解雇를 당해 가지고 地方勞動委員會에 救濟申請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復職判定을 받았었읍니다. 復職判定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會社는 이를 거부했읍니다. 그래가지고 出勤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막고 이런 不法을 자행을 했었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成完熙씨가 부상을 당해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워서 警備員으로 發令을 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또 解雇를 했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救濟申請을 내서 다시 地方勞動委員會로부터 復職勝訴判定을 받았읍니다. 그래도 會社에서는 또 出勤을 거부시켰읍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분통이 터져 가지고 焚身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렇게 地方勞動委員會의 判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會社가 復職을 거부했는데 그것을 당시 그 지역에서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勞動部가 當該事業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行政監督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28살밖에 안된 아주 젊은 青年 勤勞者가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30年이상을 이 사회를 위해서 生産을 할 중요한 人力이 이렇게 죽어 갔읍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중에… 우리가 엊그제 産災에서 확인해 본 3,000名중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토록 勞動部가 勤勞監督을 제대로 안하고 警察이라든가 會社와 勞動行政擔當者들이 한 죽음을 몰고 간 것에 대해서 長官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勞動部의 취약이 바로 勤勞監督官의 資質問題입니다. 勤勞監督官 375名가운데서 실지 勤勞監督官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公募해서 就業시킨 人員은 불과 2·30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이 勤勞監督官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현재 固定化되어 있는 그 職列을 再調整하고 一般職가운데서 우수한 사람을 勤勞監督官으로 보내는 이러한 制度로 개선하기 위해서 業務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거의 退職에 가까운 사람들이 大多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問題點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300餘名에 달하는 人員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만은 기필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次的으로 2 내지 3交代로 전원 며칠간의 集團敎育을 시키고 그 다음에 勤勞監督官으로서의 새로운 자세를 갖는 방향으로 현재 전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일천합니다마는 中央官署에 다시 말씀드려서 勞動部 中央이 가지고 있는 全權限을 현재 地方廳長한테 다 위임했읍니다. 그래서 事務官의 이동까지도 地方廳長 손에 의거해서 하게끔…… 豫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신 저희들도 廳長 내지 事務所長한테 全權을 다 주었기 때문에 自己責任下에서 그 地域에 대한 勞動行政에 책임을 지우는 責任經營을 시킨다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勞動部 全體에 대한 책임은 長官이 지겠읍니다.

그대신 在職하는 동안 제 소신껏 勞動行政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저희 勞動部의 취약한 부분이 솔직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勞動委員會에 계시는 여러 委員님들의 힘에 의거해서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보충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차제에 제가 한 가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金炳龍委員님께서 사실은 맨처음 質疑를 하셨는데 도중에 一問一答式으로 하다 보니까 答辯順序가 좀 바뀐 것같은데 이 점은 委員長님을 통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海瓚委員 역시 勞務行政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勞動部의 勞動統制政策중에서 앞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勞動行政의 統制政策의 問題點중에서 두번째 事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例로 淸州「택시」紛糾件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淸州에 제가 내려갔던 원인은 淸州「택시」 20個 事業體인데 20個 事業體와 「택시」技士들간에 爭議가 해소가 안 되고 있읍니다. 부분적으로는 됐지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진정이 저희 黨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간에 爭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내려갔는데 참 수모를 당했읍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87年度 賃金과 88年度6月1日 체결한 團體合意사이에는 오히려 勤勞條件이 더 저하되어 버렸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지난 84年 大邱에서의 「택시」罷業이래로 技士들이 職業으로서의 安定性이라든가 過速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시」技士들이 日給制가 아니고 月給制를 실시해서 安定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지난 84年 大邱「택시」들의 大規模 罷業이후의 基本政策이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번 淸州에서 協商을 맺은 것은 昨年의 月給制였던 賃金制度가 日給制로 바뀌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淸州勞動事務所長한테 확인을 했읍니다. 交通部에서의 「택시」

技士들의 月給制指針이 바뀌었는가를 확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바뀌었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로 全國의 「택시」들이 罷業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오히려 「택시」技士들의 勤勞條件을 月給制로 부분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安定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政府의 政策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勞動事務所長의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事務所長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가를 확인해 볼려고 서울에 와서 제가 交通部에 다시 확인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바뀐 사실이 없다고 答辯을 했읍니다.

두번째 淸州에 내려가서 그렇게 바뀐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바뀌었다고 주장하느냐 했더니 交通部의 指針이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가져 왔읍니다. 交通部指針에 보니까 日給制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月給制를 하도록 하되 月給制에관한件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月給制로 하되 기존의 月給制를 할 때의 여러가지 기준이 너무 事業主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勞動者들한테 부담이 될 적에는 勞使間의 합의에 의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指針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事務所長이라는 사람이 勞動委員資格으로 간 사람한테 그런 허위적인 報告를 일삼아 하는 것을 보고 勞務行政의 一線機關이 얼마나 잘 못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두번째로는 그렇게 賃金案중에 두번째로 나빠진 것이 뭐냐 하면 「택시」技士들은 1年이상을 한 職場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賃金團體協約案에 보면 1年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는 「보너스」를 200%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前年度 協約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個月에서 1年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는 100%를 주고 1年이상한테는 200%를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결국 6個月에서 1年사이 근무한 사람들은 賞與金을 거의 못 받게 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는 열 달이 지나면 配車라든가 이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企業主의 횡포들이 있읍니다.

바로 이렇게 악용을 하는 日給制로 전환을 시키고 賞與金條件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조건으로… 比較表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勤勞條件의 악화였고 勤勞條件의 악화일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景氣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실제로 物價上昇이 되는 것이 아니고 物價가 引下될 경우에는 勤勞條件의 악화도… 名目上의 악화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協約이 잘 됐다 라고 事務所長이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또 하나는 6月1日 勞使協定이 맺어지고 3日 總罷業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反民主的인 勞組活動이었다. 勤勞活動이었다는 것을 事務所長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民主的인 勞組活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勤勞監督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또 6月30日에 갔을 적에는 뭐라고 答辯하느냐 하면 勞動事務所의 입장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때는 또 그렇게 答辯을 했읍니다.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바로 전에 처음에 懇談會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勞動部가 勞動者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勤勞條件을 개선을 해서 이 勞動部業務報告를 보면 第2項이 勞動部의 行政指針이 勤務條件改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場事業所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이런 점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여기서 아무리 質疑를 하고 長官님이 아무리 미사려구를 써서 答辯을 해도 그것은 막말로 말해서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勞動部長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우선 質疑로 부탁을 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읍니다.

여러가지 紛糾가운데 業種에 따라서 각기 그 양상이 달랐읍니다. 특히 運輸業界가운데 「택시」 저도 몇 個 地域 「택시」勞組委員長 또

는 經營主를 직접 만나 봤고 특히 城南市의 경우는 全體「택시」勞組委員長들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그네들의 애로를 들었읍니다.

저희 勞動部로서는 현재 일부 「택시」業主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횡포에 대해서 다 認知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 몇 번 啓導를 하다가 안 될때에는 단호히 이 부분을 措置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택시」다 혹은 「버스」다 하는 이러한 大衆交通 수단 이것이 國民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와 같은 政策을 施行해감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 部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淸州事務所의 경우 물론 그 정도의 判斷力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淸州事務所長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長官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冒頭에서 說明했듯이 勤勞監督官 못지 않게 이런 全權을 주다시피 하고 있는 一線 官署長들에 대한 敎育을 새로운 방향으로 敎育을 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어떠한 변천을 가져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갔을 적에 저희 平民黨의 趙世衡 內務委員하고 勞動委員會의 입장에서 제가 같이 갔었읍니다. 그리고 朴永祿 院外副總裁 3名이 갔는데 거기에서 淸州市長하고 淸州 西部警察署長하고 勞動委員會 委員長하고 淸州勞動事務所長하고 네 사람의 機關長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하고 있는데 朴永祿 副總裁께서 會社側의 입장을 듣고자 하고 한 사람만 會社社長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불렀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約 20名의 「택시」會社社長과 건달들 한 4·50餘名이 市長 事務室 淸州市長 事務室로 쳐들어 왔읍니다. 와 가지고 "國會議員이면 다냐 이 새끼들아 때려 죽여 버린다" 하고서 저희들한테 대들기 시작을 했읍니다.

그런 광경을 저희가 보면서 趙世衡議員은 內務委員이십니다. 당해 警察署長이 바로 입회한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暴行을 하겠다고 공갈 협박한 現行犯이기 때문에 당장 逮捕하라…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읍니다. 우리가 言爭을 한 적도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쳐들어 온 것입니다. 暴行을 하겠다는 現行犯이니까 당장 逮捕해라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 버렸어요. 그리고 所長도 어느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로 그런 광경을 저희가 목격을 하면서 이른바 그래도 國會議員이 어디 가면 그렇게 대드는 말하자면 厚顔無恥하고 眼下無人한 그런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國會議員이란 것이 할만한가 싶은데요. 바로 國會議員한테 그렇게 대들 정도면 그 사람들이 勞動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지도 않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읍니다.

개중에는 신분을 파악해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職銜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택시」業主가 官에 와서 그렇게 횡포를 부릴 정도로 특히 國會議員한테 횡포를 부릴 정도로 官과 業主間의 관계가 이렇게… 좋게 말해서 密月이고 나쁘게 말해서 癒着인데 이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限 勞務行政에 있어서의 改善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특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質問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결론삼아서요 淸州件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淸州件은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명백하게 勤勞條件이 前年度보다 惡化된 것입니다. 勞動者들 「택시」技士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前年度의 賃金制度를 그대로 따라 주고 今年度에 政府에서 발표한 物價上昇率만큼만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月給制로 다시 還元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前年度 月給制下에서의 今年度 政府에서 발표한 消費者物價上昇率만큼만 올려달라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勤勞者들의 基本要求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團體協約이 체결되었다고 그래서 淸州事務所長은 다시 바꿀 수 없다고 저한테 答辯했읍니다.

長官님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좀더 具體的으로 現地狀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參考的입니다. 여기에 「데이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個別的으로 우리 李委員님께 전달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重點的으로 저희들이 本部에서 직접 확인해서 전체 勤勞者에게 어떠한 「마이너스」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積極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本部에서 개입을 해서 한번 시정조치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이 資料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읍니다마는 個別的으로 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속칭 救社隊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救社隊라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미지」로서는 몽둥이를 들고 勞動者들을 때리는 두들겨패는 그런 「이미지」로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나 漢字로는 會社를 구하는 部隊다 이런 뜻인데 과연 지난번 懇談會에서도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勞動者들은 그러면 廢社隊냐… 勞動者들을 두들겨패는 사람들이 救社隊라고 하면 勞動者들은 廢社隊냐… 이것은 逆說的인 얘기입니다.

勞動者들이 일터를 잃어 버리면 밥을 굶는게 勞動者들입니다. 자기의 勞動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이 勞動者들인데 자기의 勞動을 파는 場所를 망치는 것은 勞動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勞動者들을 廢社隊로 몰고 가기 위한 相對的 개념으로 救社隊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救社隊는 表現上의 문제가 물론 있지만 또 하나는 대개 30名의 勞動者들이 농성을 할 경우에는 約 50名 내지 100名의 勞動者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패거나 폭행을 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救社隊會社를 위한 사람들이라면 다 勞組에 加入을 하면 勞組에서 多數를 차지할텐데 그래가지고 勞組 執行部도 차지하고 民主的인 勞組를 運營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데 왜 勞組하려는 사람들은 내쫓고 패면서 會社를 구출하는 것이냐 勞組라는 것을 마치 會社를 망치기 위한 기구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勞組가 생기면 會社가 망한다 라는 事業主의 인식이 바로 救社隊로 동원되는 管理職이라든가 혹은 管理職외에 請負로 돈을 주고 사 오는 暴力團들의 인식에 그렇게 基本的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마치 하나의 救社隊로 동원되는 暴力輩들의 자기의 暴力을 행사하는 명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이데올르기」的인 虛僞意識을 가진 救社隊들이 이른바 勞動者들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제가 救社隊 暴力에 관한 資料를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자세히 안 나와 있읍니다.

얼마전에 女性團體聯合이라고 하는 團體에서 낸 資料集에 의하면 救社隊라고 안 하고 職場暴力輩라고 되어 있읍니다. 바로 職場에서 이루어진 暴力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건데 그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제가 오늘 미처 못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로 長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事實的인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제가 그 책을 複寫를 해다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出版社에서 救社隊에 종사했던 사람이 자세한 전기를 쓴 책이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처럼 우리 社會에서 救社隊라고 하는 것이 마치 社會의 안정과 會社를 살리기 위한 이름하에 이른바 白骨團과 같은 폭행을 恣行하는 專門 暴力集團으로 社會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事例중에서 極端的인 경우에는 放火를 하는 경우까지 있읍니다. 그러면서 勞動者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읍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 보았던 경우중에서 安山에 있는 半月工團에 東洋綜合고무라는 데가 있읍니다. 이 資料에는 東洋綜合고무는 救社隊가 명백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東洋綜合고무에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社長도 시인을 했었읍니다. 會社의 常務라는 사람이 救社隊를 동원을 해가지고 約 40名의 勞動者가 농성을 하는데 100名을 데려와 가지고 두들겨 패서 끌어냈던 사실이 있읍니다. 生産職 社員이 70名밖에 안되는

그런 工場…… 70名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工場에서 100名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會社의 全員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勞組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勞組를 더 잘 할텐데 그렇게 勞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暴力을 恣行할 수 있느냐… 그 사진이 저희 黨에 들어온 것에 의하면 常務가 現場指揮를 하고 있는 사진이 다 나와 있읍니다.

바로 그것을 비롯해서 大韓光學件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大韓光學件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재에 깊이 관여해서 나중에 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社長하고도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 救社隊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勤勞者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또 告訴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해서 해결이 되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사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救社隊로 아주 惡質的으로 나타난 것이 韓國 야쿠르트, 이 경우도 제가 뭐 具體的으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東洋綜合고무의 경우 그 다음 馬山에 있어서의 TC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 점에 대해서 그 救社隊를 동원해서 勤勞者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事業主를 엄단하겠다고 이미 勞動部長官이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救社隊가 동원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勞動部의 資料에 의하면 두 件만 救社隊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보고 있는 反證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소위 말하는 救社隊 이 用語 자체가 저희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勢力이건간에 暴力을 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당한 勞組結成을 반대하거나 勞組運動 자체를 暴力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報告書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도 그 이상의 많은 件數를 저희들이 司直當局에 告發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공공연하게 이러한 勞動運動을 방자해서 저희 中央勞動委員會를 점거해서 器物을 파괴한다거나 光州 廳長을 내쫓고 籠城하고 器物을 파괴한다거나 저희 城南事務所 器物破壞 내지는 습격같은 것 이러한 폭력을 일삼는 일부 소위 신성한 勤勞者라는 이름을 盜用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부 勢力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저희들이 이것 저것 물론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읍니다마는 救社隊건 아니건간에 當 勞動部로서는 폭력이 행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어느 쪽을 막론하고 法에 의거해서 立件措置하겠다는 것이 저희 部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당한 勞動運動을 전개하는데 勞政活動을 전개하는데 더욱 더 폭력을 개입시켜서 이런 것을 저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단호히 개입하겠다는 政府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이 문제도 積極的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勞動部에서는 大韓光學과 製鐵整備工業 2個의 事件만 救社隊로 확인되어서 立件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立件內容과 告發措置 內容에 관해서 具體的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浦項에서 있었던 문제는 3個會社 다 告發된 것으로 알고 있고 大韓光學 그 다음에 馬山의 TC電子도 告發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救社隊문제로 해서…

○李海瓚委員 勞動部가 직접 告發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직접 했읍니다. 현재도 調査 進行중에 있는 資料를 지금 찾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使用者를 告發했읍니까 아니면 누구를 告發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使用者를 告發했읍니다.

○李海瓚委員 뭘로 告發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組合法 혹은 爭議調整法에 의거해서 違法事項에 적용시켜서 告發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不當勞動行爲로 告發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

읍니다.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勞動組合 活動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勞動部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 대단히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얼마 전에 날짜는 명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마는 勞動部에서 이른바 無勞動 無賃金 「노우워크 노우페이」라고 하는 지침을 某 會社의 質疑에 대한 回信의 형식으로 발부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도 그 문제가 일어날 때는 國內에 없었읍니다마는 돌아와서 그 報告를 들었읍니다.

그것을 일부 한 두個 新聞에서 報道가 되었는데 사실 내용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實務者들이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단 저희들은 어떠한 형태건간에 原則論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勞動部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都下新聞에서 마치 저희 部의 지침으로 全 事業場에 下達된 것같이 報道가 되었는데 전혀 내용과는 다릅니다.

○李海瓚委員 이런 것에 대해서 質疑한 會社는 없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會社는 있었읍니다.

○李海瓚委員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答辯을 어떻게 하셨읍니까 안된다고 하셨읍니까 된다고 하셨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勞動爭議行爲 즉 罷業期間중 賃金支拂 요구에 대하여 특별히 지침이나 원칙을 마련 시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다만 昨年 이후 勞使紛糾가 많아지면서 일부 個別事業場으로부터 爭議行爲 期間중에 賃金등 중요한 勤勞條件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當部에 質疑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政府는 法에 의거해서 法 테두리내에서 爭議行爲期間은 勤勞의 중단으로 勞使關係에서 權利 義務事項이 一時 중단되어 勤勞基準法上 勤勞의 代價인 使用者의 賃金支給義務는 原則的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法 條項을 인용해서 견해를 回信한 바 있으나 勞動爭議 期間중에 賃金支給 여부는 특별히 勤勞者에게 現實的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이것은 그 協議過程에서 명칭은 어떻게 붙이든지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勤勞者에게 不利益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勞使 쌍방이 협의해서 慣行이 확립되도록 하라는 지침을 얘기를 해주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런 質疑를 한 會社는 어디어디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實務者들이 파악하기로는 株式會社 統一 그리고 韓國重工業 두 會社입니다.

○李海瓚委員 지금까지 그런 質疑를 한 會社는 두 會社 뿐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李海瓚委員 그런 無勞動 無賃金이라고 하는 지침은 실제로 앞으로의 勞動爭議가 벌어졌을 경우 상당히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얼마 전 經濟新聞에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經營者協會라든가 이런 事業主들이 共同으로 이런 慣行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본 적이 있읍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勞動者들은 몇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라고 보고 있읍니다.

勞動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현재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勞動組合의 歷史에 비추어 보건대 이른바 爭議基金이 확보되어 있는 勞組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爭議基金이 확보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勞動部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勞動部는 組合費를 組合에서 징수했을때 그것을 爭議基金으로 일부를 축적하기보다는 勞動福祉費 형식으로 사용해서 意圖的이든 意圖的이 아니든 組合의 爭議基金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基本的인 勞動組合에 대한 政府의 입장을 가져왔었읍니다.

그런 時點에 와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지침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우선 지적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爭議基金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賃金이 지불되지 않으면 勞動者들은 곧바로 斷食籠城을 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 집 안에 있는 쌀이나 갖다 먹으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家計에 타격이 오고 본인 개인의 食生活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그런 限界線上에 勞動者들이 놓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第3者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爭議를 하든가 이런 勞使協議過程에서 다른 사람들이 爭議費用을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금지시켜놓고 있는 것이 또 현행 勞動法의 중요한 條項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처럼 勞動者들이 罷業이라고 해서 賃金을 못받을 경우 현재 우리 社會 속에서는 바로 斷食籠城이라고 하는 極限的인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勞動部도 충분히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職場閉鎖라든가 勞動爭議의 發生事由가 가령 賃金率 引上을 둘러싼 것이라고 하는 雙方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는 또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勞動組合이 생기면은 救社隊를 동원해서 勞動組合을 깨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해고를 시켜놓고 이에 勞動者들이 항의하면 救社隊를 통해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勞動統制政策 속에서 나오는 그런 職場閉鎖라고 한다면 그것은 歸責事由가 분명히 勞動者들에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不賃金 지침을 勞動部가 만약에 現時點에서 취하게 된다면은 勞動者들의 이익과는 正反對되는 勞動政策이 되리라는 豫見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자리에서 勞動部長官은 公式的으로 無勞動 無賃金이라고 하는 基本指針은 지금 현재는 실시할 의사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자세로 會社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公文을 各 事業場에 보낼 용의가 있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문제는 현재 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法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勞動部長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再闡明하는 입장에서 事業場에 이것을 書翰으로 해서 보낼 생각을 전연 갖고 있지 않습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質問을 너무 오래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선 마지막 質問만 하고 다음 質問 기회가 저한테 돌아올 때 다시 또 補充해서 하겠읍니다. 오래 하니까 목도 아프고요.

勞動統制중에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이른바 僞裝 休廢業이 대단히 중요한 統制중의 하나입니다.

會社를 운영하다 보면 經濟與件이 나빠져서 休業을 하거나 廢業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勞動者들의 爭議에 대한 攻擊手段으로 休廢業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여러 個의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代表的인 「케이스」를 제가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京畿道富川市松內洞에 있는 大宇電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大宇電子의 경우는 지난 6月12日 僞裝廢業을… 저는 僞裝이라고 豫斷은 안하겠읍니다. 廢業하고 事業主는 사라졌읍니다.

그랬는데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난 88年4月30日 朝興銀行으로부터 그 동안 貸出額이 꾸준히 신장했고 새로운 製品을 개발해서 88年중에 「캐나다」 英國 「프랑스」 濠洲 등에 상당량을 輸出할 계획이 있어 成長가능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有望 中小企業으로 선정했던 企業입니다. 그런 會社가 불과 두 달만에 不渡라고 해가지고 廢業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둘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事業主가 勞組가 만들어지니까 위장해서 廢業을 했든가 아니면 朝興銀行 富川支店이 이 事業體에 대한 企業評價를 잘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분명히 제가 단정할 수가 있읍니다.

어느 경우인가를 勞動部에서도 알고 계시면 우선 答辯해 주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오늘 質疑가 끝나기 전까

지 서회들이 다시 조회해서 나중에 별도로 資料를 제출해 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돈을 빌려주는 銀行이 얼마나 信用調査를 꼼꼼히 합니까? 저도 銀行에서 돈을 빌려 봅니다마는 정말 信用이 웬만해가지고는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그렇게 빌려 줄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만에 꼭 42日만에 廢業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분명히 事業性에 있어서 유리한 전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社長은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다고 할지라도 朝興銀行이 法定管理를 하고 勞動者들이 生産을 해서 會社는 살리는 경우가 우리의 경우에서도 자주 있고 또 外國의 事例에서도 자주 있다고 봅니다.

바로 經營能力이 없어서 企業主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그것은 代理管理人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온 勞動者들에 대해서 就業의 기회를 계속 보장해 줄 수도 있고 賃金을 滯拂하지 않고 계속 줄 수 있는 勞動者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會社가 망해도 그 企業主는 살아나는 그런 1971年度의 不實企業 量産될 때의 논리가 이제 바로 福祉社會로 가고 있는 社會속에서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企業主는 망해도 會社와 勞動者는 살아서 生産活動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社會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까지 그런 앞으로의 會社管理의 전망까지 관련해서 大宇電子에 대한 일련의 勞動部의 對策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너무 긴 시간을 質疑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또 앞으로 다른 분들이 質疑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다음에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더 質問하기로 하고 제 質問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梁慶子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梁慶子委員 李海瓚委員님 정말 根源的이고 現場踏査를 통한 소상한 質問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읍니다. 많은 공부를 더불어 했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음으로 진행되는 議事方法에 一問一答으로 응하시는 勞動部 關係者 여러분들이 정말 假紙없이 열심히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本委員의 質問에 대한 政府側의 책임있고 성실한 答辯을 구하고 또 먼저 質問에 대한 實體와 眞實把握을 위해서 혹시 뒤에 또 質問하실 委員들의 實體와 眞實把握이 시간 관계상 소홀히 될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一括 質問하고 一括 答辯을 구합니다.

本委員은 어제 화려한 經濟成長의 뒤안길에서 피나는 勞動의 代價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절규하고 있는 勞動現場을 그려보면서 또 職業病에 목숨을 잃고 食物人間이 된 어떤 勤勞者를 생각하면서 勞動部의 政策報告를 들었읍니다. 勞動部의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노력이 역력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勞動政策이 아직도 企業主에게는 權威的이고 또 勤勞者 편에서 볼 때는 形式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資料를 대하면서 어쩌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勞使問題가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勞動委員會의 新設은 더욱 그 意義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勞動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勞動現場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勞動問題를 勞動問題 그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社會 全般의 環境이 문제이고 企業主와 勤勞者와 그리고 消費者라는 상대가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더욱 賦存資源이 없는 나라로서 世界貿易에 도전해야 되고 그래서 生産과 市場을 우리 自意로 선택할 수 없고 다만 품팔이 결국 勤勞者의 勞賃에 의존하며 輸出貿易을 할 수 밖에 없는 經濟後進國 戰爭을 치른 分斷國家의 經濟成長은 결국 勞使 모두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經濟中進國으로서 부상된 우리 經濟의 時點에서는 새로운 몫의 分配가 이루어져야 함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政治人 특히 勞動委員會의 역

할과 責務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일에 黑白을 論해서 추궁하기보다는 어렵고 취약한 점은 밝혀 補完하고 개선하며 예방하는 政策의 示顯으로 책임있게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勤勞者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취지에서 本委員은 長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産災豫防政策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經濟는 지난 25年間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産業構造도 高級化 多樣化되는 등 크게 변화했읍니다. 급격한 産業化의 물결에 따라 機關設備 大型化 建設工業의 大規模化 등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의 增大와 새로운 生産技術 工法의 導入에 의해 일어나는 有害物質로 인한 職業病의 발생 有害한 作業環境 등으로부터 勤勞者의 保護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읍니다. 勞動部에서는 産災豫防과 勤勞者의 保護를 위해서 1次的으로 汎國民的인 産業安全 意識鼓吹와 專門的 災害豫防事業을 실시하고 事業場別 無災害運動을 확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對策의 수립이 아주 미흡하다고 어저께 저는 판단했읍니다. 資料에 나와있지 않은 具體的인 豫防政策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害의 「제로」時代 형성을 위해서 定期的인 産業安全敎育 및 自體調査基準強化를 해야 하며 産災危險이 있는 機械 機具 設備環境에 대한 定期檢診制度의 施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産業災害現況을 보면 매일 390名의 勤勞者가 負傷을 당했고 사 오名의 勤勞者가 死亡을 했읍니다. 이는 先進國의 4倍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損失額으로 보면 1兆원이나 되어 우리나라 總經濟規模의 6%에 해당되는 엄청난 金額이라고 합니다. 勞動部는 이를 事前豫防해서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그 財政을 勤勞者 福祉財政으로 轉用할 것을 各企業에 촉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勞動部의 報告에 의하면 産災災害問題點을 分析하면서 事業主의 産業安全保健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또한 事業主의 事前豫防보다 事後補償이 오히려 經濟的이라는 인식팽배를 지적하고 安全保健投資를 다른 損失的 經費로 인식 施設改設을 기피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根據에서 하신 지적이며 판단이고 또 이러한 현실이 있을 때 勞動部로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고 勞動部의 長 短期對策을 보면 그러한 産災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勞動部 自體의 對策을 보면 좀더 東問西答式의 실체를 발견했읍니다.

예컨대 對策을 살펴보면 法制定에 앞서서 기왕에 만들어진 制度를 활용하는 法의 執行者의 성실함과 人間性이 문제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提起되지 않은 문제점을 색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왕에 되어 있는 法을 성실히 執行하지 못하는 원인도 分析을 해서 이것이 결코 勤勞者나 勞動部 一方的으로 행해질 수 없이 企業主라든가 社會 全般에 相對的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체파악을 분명히 해서 對策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答辯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資料에서 職業病을 早期發見해서…… 제가 여러가지 對策을 지적하면서 合理的인 方案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勞動部側에서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컨대 職業病相談室運營을 하면서 거기에 勤勞者나 또 家族들이 와서 相談하는 기회를 준다 하면서 週 2回로 한다는 것은 좋았는데 勤務날짜인 火曜日 木曜日 지정해서 檢診을 하도록 한다는 이런 것은 결코 企業主나 病院이나 그런 一方的인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勤勞者편 아니면 企業主의 生産性 提高의 側面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勤勞者가 현장을 떠날 수 없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土曜日이나 日曜日에도 할 수 있다 라는 전천후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勤勞者가 자기 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檢診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면에서 형식적으로 政策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의 改善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職業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어제 現況報告時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고 「크롬」鍍金 事業場 240個所를 對象으로 精密點檢을 했고 水銀中毒 患者를 여러가지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朝刊을 보니까 어제 報告時에는 칠 팔月중에 調査할 것이다 하고 施行中 이렇게 간단히 저희들에게 報告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時點에 記事가 新聞社로 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그것이 파악이 됐으면 우리 勞動委員會에 먼저 報告하고 더군다나 會議時間에 報告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記事를 먼저 보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그 事項도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男女雇傭平等法에 대해서 質問하고자 합니다.

韓國經濟는 1960年 이후 世界 第12位의 經濟國家이자 GNP 3,000弗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였읍니다. 그동안 經濟發展에 가장 공로가 큰 女性勤勞者들의 男女間 차별대우는 그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는 東方禮儀之國의 女必從夫의 의식속에서 의도적으로 企業活動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당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民正黨과 政府에서는 지난해 12月4日 男女雇傭平等法을 制定 公布하고 그 施行令이 지난 7月7日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本委員은 모처럼 650萬 女性勤勞者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 韓國經濟發展에 女性勤勞者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 法이 제대로 施行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施行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을 예고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男女雇傭平等法의 施行에 있어서 職場에서 대부분 소외받고 있는 女性에게 본래의 男女雇傭平等法의 精神에 어긋나게 오히려 不利益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性의 차이 및 家族狀況을 이유로 採用制度를 거부하거나 勤勞條件을 달리 할 염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制度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使用者 동일한 勞動 및 동등한 價値를 가지는 勞動에 대하여 同日賃金을 支給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法的 補完用意는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賃金支給의 기초가 되는 勞動評價基準 俸給 手當 昇給基準등 賃金과 관련된 모든 事項은 性區別없이 동등한 條件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制度的 裝置用意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事業主는 勤勞女性의 婚姻 姙娠 또는 出産을 이유로 勤勞女性을 解雇 休職 轉職 減俸 기타 不利益 措置를 못하도록 法的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育兒 休職期間은 産前 産後 有給休暇期間을 포함하여 1年이내로 하되 이 期間은 勤續年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法의 경우는 勞使間 相對法이므로 勞使雙方間에 이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弘報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勞組委員중에서 女性勞組委員의 疏外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勞動組合法 第11條에는 組合員은 어떠한 경우에도 人種 宗敎 性別 政黨 또는 身分에 의하여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産別 女性部長 現況을 살펴보면 總 20個 産別에서 女性勤勞者의 權益을 대변해야 하는 女性局長이나 部長이 있는 곳은 겨우 12個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職種上 女性이 없기 때문에 女性部長이 없는 것으로도 인식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20個 産別勞聯에 女性部長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女性部長이 있는 12個 産別도 불과 3個 産別만이 常勤女性部長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給與는 本組合內에서 支給하게 하는 등 實質的이고 根本的인 勞組活動에 있어서 女性의 活動을 소외 내지 차단시켜 그로 인한 680萬 女性勤勞者의 불만이 大型化되어서 勞使紛糾의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女性部長을 全産別로 常勤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指導와 監督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勞組委員內에서도 男女差別이 있었읍니다. 한 例를 들어보면 같은 勞組委員이면 女性과 男性이

女性勤勞者를 위한 權益保障이나 伸張을 위한 爭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男女委員들이나 委員長이 거기에 호응이나 기피를 해온 그래서 社主나 企業體에 결탁된 御用勞組라고 지탄을 받게 된 동기도 된 그런 事例가 있읍니다.

예컨대 産業銀行에 있는 女性勤勞者들의 문제입니다. 勞動部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읍니다마는 同僚委員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産業銀行의 소위 이경자 事件 內容입니다.

그들의 要求事項은 女行員인 15年 勤務者를 同一號俸의 5年 行員으로 轉職要請한 것입니다. 對象者는 30餘名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기타 다른 市中銀行은 같은 條件에 있는 女行員들을 87年 봄부터 실시해서 國民銀行 中小企業銀行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5個 市中銀行이 11月까지 다 완료했는데 유독 産業銀行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女行員들이 昨年 9月9日부터 籠城을 시작하고 끝내는 관철되지 않아서 女性部長이 斷食을 열하루까지 하게 됐고 그 婦女部長이 強制入院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그것이 婦女部長의 女性部長 자리를 解任시키는 그것도 男子勞組委員長이 거기에 합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읍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는 女性들이 계속 勞動爭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全 女性勞組委員들이 모두 本勞組를 탈퇴를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産業銀行側이나 勞組委員長側에서 아무런 반응도 또는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그러기에 우연인지 모르지마는 제가 昨年 가을에 豫算執務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고 또 勞組委員이 됐다기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勞組委員으로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하고 깊이 개입을 한 결과 이것이 원만한 합의를 찾아가지고 모두 바로 원상회복을 하고 女性部長도 다시 再就任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를 봤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읍니다.

政府는 차제에 이러한 勞動部側에서 이런 勞使紛爭이 발생하기 전이나 또는 勞使紛糾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은 情報를 갖고 直接 介入해서 조정해서 성공한 事例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韓國TC電子의 女性勤勞者暴行事件에 대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最近 一部 事業場에서는 勞使問題를 適法節次에 따라 合理的이고 合法的인 해결보다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勞使間의 감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民主的이고 自主的이고 성숙한 勞使關係定立에 저해요인이 되며 누적된 勞使問題를 성숙한 대화를 통한 根本的인 해결보다는 使用者의 근시안적이고 비민주적인 대응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난 11日 馬山所在 韓國TC電子 女性勤勞者暴行事件의 경우 金屬勞組 資料에 의하면 女性의 수치심을 갖게 하면서 약한 부분만 골라서 건강한 男子 100餘名이 女性勞組幹部 5名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勞動部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依法措置해야 할 것이며 만일 외부에 나온 얘기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러한 선동적이고 야만적인 流言蜚語가 나돌지 않도록 철저한 事後豫備策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은 그 진상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갈 용의가 있으니 협력해 주시면 현장에도 가겠읍니다. 이 事件에 대한 진상과 그 防備策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失業對策과 高級人力 活用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매년 40萬 내지 50萬名의 新規能力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50萬名 規模의 完全失業者 및 都市와 農村의 수많은 不完全失業者들을 위해서 政府와 關係部處인 勞動部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政府는 이를 위해서 公共職業訓練의 擴大 신속한 就業情報網 擴充등 雇傭促進方案이 마련되어야 하며 農工地區 女性人力 및 産業合理化에 따른 職業訓練의 擴大 어제도 報告를 들었읍니다마는 海外人力進出政策을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施行해야 할 것입니다. 本委員 생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좀더 集中的이고 積極的이며 現實的인

職業訓練 斡旋의 실행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어제 資料에 의하면 職業訓練이 앞으로 90年度에 開設할 3個 職業訓練도 그 業種選擇을 보면 이미 3年後 10年後에는 취약해서 다시 영원한 低賃金 勤勞者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業種을 택해서 政府豫算을 들여서 訓練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計劃을 보고 저는 다소의 실망을 했읍니다마는 이왕 少數精銳 내지는 政府가 支援해서 育成하고자 하는 職業訓練이라면 飛行機 製作技術 정도라도 訓練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면서 또 다른 견해와 의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高級人力活用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1960年 이후에 世界에서 유례없는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人力資源의 덕택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앞으로도 産業構造는 지금까지의 勞動集約的 형태에서 技術集約的 構造로 개편이 불가피하며 情報知識産業 및 서비스業 등의 3次産業部分에 대한 치중이 요구됨에 따라 專門的인 知識과 訓練을 받은 高級人力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이미 量的으로 많이 배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우기 안타깝게도 高級人力이 되기까지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나 많은 投資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投資에 비해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高級人力活用은 家庭 그리고 社會 全體의 윤택한 生活을 보장하는 福祉社會로의 지향이라는 의미에서도 積極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長官께서는 高級人力活用方案에 대한 견해를 長官의 어떤 名譽와 實績과 在任時의 어떤 責任感을 가지고 具體的인 方案을 한번 硏究해서 提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勞動部長官 個人的인 입장이나 勞動部長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經濟的 全般에 相對的인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他部署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계획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른 社會問題가 된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예견하면서 答辯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앞에 質問한 분 또 뒤에 質問하는 분 中間時間에 많은 質問을 하면 오히려 제 質問이 愚問이 될 것 같아서 줄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고맙습니다.

장장 세 시간에 가깝도록 會議가 진행이 되었읍니다.

勞動部側의 答辯以前에 약간의 休息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停會를 宣布하겠읍니다.

(17時16分 會議中止)

(17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그러면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勞動部長官 答辯 드리겠읍니다.

맨 처음에 金炳龍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勞動時間 短縮 문제입니다. 현행 48時間으로부터 40時間으로 단축시킬 용의가 없느냐 즉 週 5日制 勤務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世界的인 경향은 週 40時間 勤務制를 채택하고 勤務時間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美國 佛蘭西 英國 西獨 등 先進國에서는 거의 週 5日制 勤務를 실시하고 있고 이웃 日本의 경우는 法條項은 되어 있지 않지만 行政指導로써 週 5日 勤務制 導入을 段階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京畿道 始興에 소재하는 삼화藥品등 이와 같은 會社는 근 10年 이상의 歷史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週 5日制 勤務를 실시하고 있는 業體가 현재 全國的으로 當部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約 70餘個 會社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週 5日 勤務制는 勤務時間의 단축은 물론 勤勞者의 士氣振作으로 作業能率 향상 그리고 雇傭創出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與件이나 所得水準으로 보아 당장 現行 48時間制를 40時間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취지는 저희들 잘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

것은 政府로서는 法制化하기보다는 日本과 같이 行政指導를 통해서 個別事業의 허용하는 範圍 내에서 積極的으로 이와 같은 것을 그 사정에 맞도록 啓導해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法制化 문제는 앞으로 시간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金炳龍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그렇다면 行政指導로 하되 몇 年度 정도에 가서는 法으로써 40時間 勤勞制度로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政府의 미래에 대한 방침을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잘 아시다시피 과거 政府는 經濟開發5個年計劃 이었읍니다마는 社會福祉 측면을 고려해서 이 계획 자체도 社會經濟開發5個年計劃으로 명칭을 바꿨읍니다. 그래서 6次 經濟社會開發5個年計劃이 끝나는 해까지 이 문제에 대한 基礎調査를 해서 그때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도록 한번 나름대로 勞動部의 지침으로서 연구해 보겠읍니다.

두번째는 勞使協議會法을 廢止시킬 의향은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잘 아다시피 1980年에 同法을 制定한 이후 우리나라의 勞使協議會 制度는 諸般 勞使問題 해결을 위한 對話窓口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生産性 向上 그리고 勤勞者 福祉는 물론 勞使紛糾의 事前豫防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勞使協議制度가 團體交涉 기능을 약화시켜 勞動組合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勞使協議制의 逆機能的인 요인을 우려한 나머지 勞使關係의 協力的 측면을 깊이 생각한다면 다시 이런 부분은 否定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즉 勞動組合이 있는 事業場에서는 勞使間에 團體交涉을 補完하는 制度的 措置로서 그리고 勞組가 없는 事業場에서는 勞使間의 綜合的인 對話窓口로서 本 勞使協議會가 그간에 기여한 바도 없지 않아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法이 제정된 이후 約 7年 동안 各 事業場에서 勞使協議會 운영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 段階에서는 이 法의 部分的인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이를 보완하는 각도로 재고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지난 해 이 法 改正時 協議事項중 人事勞務管理의 合理的 運營을 위한 制度改善에 관한 事項을 新設하는 등 勞使協議會法에 대한 일부 보완이 있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勞組가 있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本 法의 적용을 배제하고 勞組가 없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勞使間에 定期的인 대화를 통해서 紛爭要因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물론 法에 대한 存廢 내지는 改正問題는 立法府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當 勞動部로서는 보다 더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드립니다.

○金炳龍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質問하겠읍니다.

勞使協議會法이 지금 長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年度에 制定이 되어가지고 한 7年 동안 적용을 해 나왔읍니다. 물론 企業을 위해서 政府로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愛國 勞動者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法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實例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0年度 이전에 自由黨 때나 民主黨 때나 共和黨 때나 이 法이 없었읍니다. 또 이 法이 없다 해서 勞使問題가 惡化된 사실이 없었읍니다. 또 이 法이 없다고 해서 企業人에게 어떤 큰 타격을 준 것도 없었읍니다. 단 第5共和國에서 一方的으로 企業人을 擁護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法이기 때문에 이 法은 앞으로 반드시 改正 되어야 되겠고 또 폐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대충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7年間에 걸쳐서 勞使間의 협의를 통해서 賃金引上을 결정한 바가 없고 政府가 一方的으로 했읍니다.

거기에 또 모든 勞動團體나 또는 勤勞者나 勞使協議會나 또는 政府나 거기에 따라서 賃

金引上을 해 나왔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7年 동안에 걸쳐서 우리 勤勞者들이 엄청난 손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年間賃金引上을 4 내지 5% 밖이 안 되지요. 企業의 生産性은 15 내지 20% 이렇게 증가하면서 勤勞者에게는 4 내지 5% 引上만을 7年동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法을 적용해 가면서 企業人에게 一方的인 이익만을 추구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企業人들도 이 정도 토대를 닦았고 또 우리나라 國民所得이 3,000弗이상 또 黑字時代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서 반드시 이 문제만은 우리가 해결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勤勞者에게 어떠한 독특한 하나의 利益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法만은 政府에서 다시한번 깊이 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長官께서 政府에서는 꼭 이 法이 앞으로도 유익하다 또는 좀더 수정을 해서 발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政府에서 말씀하실게 아니라 이 法은 80年度에 企業人을 위해서 만들어진 法이니까 앞으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企業人과 政府 國會와 협의를 해서 이 法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政府의 방침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大幅的으로 이 法案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굳이 이 자리에서 答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政府의 방침으로서라도 이 法은 다시한번 앞으로 公聽會나 또는 여러가지 多方面으로 이 法을 연구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政府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일 이 法이 지금 金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企業主一方의 그러한 과실을 더 늘리기 위한 法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한 毒素條項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은 改正을 해서 지금 金委員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改正을 해가고 改正過程에서도 충실한 어떠한 答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때가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세번째 質問입니다. 80年代 淨化措置로 해서 生存權이 박탈된 수많은 勞組幹部들 不當解雇者 數 여기에 대한 措置는 무엇인가하는 質疑의 내용이었읍니다.

솔직히 저희 部로서 당시의 기록이 없어서 淨化됐다는 것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淨化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現職으로부터 이탈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희들이 좀 더 당시의 상황을 깊이 고려해서 비단 勞組뿐만 아니라 各界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권위를 회복하는데 政府로서는 추호의 인색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또 이러한 부분은 저희 部로서 個別的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金炳龍委員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長官께 質問을 하겠읍니다.

勞動組合이라고 하는 것이 任員이나 또는 組合員이 政府主導下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勞動組合 스스로가 團結權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團結力을 과시하고 거기서 組織化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어디까지나 自主的이고 民主的으로 이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신에는 추호의 변화도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金炳龍委員 그것은 당연하지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80年度에 勞動組合은 엄연히 그 당시에 合理的이고 合法的으로 이루어진 團體의 長들입니다.

또 그 法 自體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自律的으로 組合員들이 自由意思에 의해서 委員長을 選出했는데 政府가 一方的으로 辭表를 강요를 하고 또 그 事業場에서까지 解雇 내지 強制辭表를 받도록 이러한 人間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民主主義가 뭐가 좋습니까! 國民은 政府를 믿고 신뢰하고 政府가 하는 일에 國民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政府가 그러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칼자루 쥐고 우리 백성에게 휘두른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읍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한 나머지 제가 알기에는 陳情에 의해서 또는 請願에 의해서 그 당시 勞動部長官인 趙澈權長官이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公文을 내보내서 직장에 就業토록 이렇게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政府가 그런 사과를 하고 또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期間의 補償은 물론이고 名譽回復이 뚜렷하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間接的으로 公文上으로만 해 주도록 해 놓고 뒤로는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崔長官께서는 이 문제만은 꼭 매듭을 짓고 名譽回復이 되고 그분들에게 政府의 잘못으로써 政府의 권력과 힘으로써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 못했다고 인정을 했읍니다. 公文上으로 인정을 했읍니다.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보일 수는 없읍니다. 다만 崔長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잘 알겠읍니다.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충정 저도 십이분 이해가 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現職長官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6共和國 出帆이후 저희 大統領이 統治方向이라고 할까 總和를 가지고 모든 것을 民主的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재 統治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땅히 그러한 분들에 대한 권위가 다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또 제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責任感을 통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신이 在職중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 부분만은 積極的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를 추후에 金委員께 우선 말씀을 드리고 當事者들에게도 個別的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빠른 시일에 들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長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勞動部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는가 방법에 관해서 가까운 시일에 우리 勞動委員들한테 提示할 수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렇게 하겠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計劃 推進過程 그때까지의 결과가 일부 나오면 나오는 대로 中間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네번째입니다. 政府는 앞으로 勞使가 賃金引上을 위해서 自律交涉을 하도록 보장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賃金交涉은 勞使間의 自律的인 交涉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저희 6共和國에서는 지금 지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또 政府의 基本方針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公務員報酬引上率이나 혹은 硏究機關 기타 經濟部處 등의 賃金引上에 대한 事前豫測値가 政府의 賃金引上 가이드라인으로 잘 못 인식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읍니다.

현재는 그러한 오해도 없고 또 지금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自律的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積極的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賃金引上은 勞使가 企業의 經營狀態 혹은 勞動生産性 物價 生計費 등을 감안해서 適正水準에서 自律交涉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도록 이미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5·17이후 勞組幹部退職者의 數 그 다음으로는 5·17이후 不當解雇돼서 拘束된 사람의 數 그 다음에 5·17이후 企業人의 不當한 行爲를 적발해서 告發한 것이 얼마고 拘束된 사람이 얼마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뭐 하시다면 추후에 資料로서 書面으로 提出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만일 本會議가 끝날 때까지 資料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勞動組合申告證을 勞動部에서 交付하는 등 勞動行政을 一元化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勞動組合關聯業務는 勞使紛糾

가 地域社會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地方行政官廳의 協調必要性 등을 고려해서 현재 地方勞動官署에서 交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대한 長短點은 있읍니다.

가령 例를 들어서 저희 地方事務所가 합해서 41個所밖에 안 되는데 事業場은 全國到處에 산재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紛糾가 일어났을 때 저희 事務所까지 오는 거리라든가 여러가지 連絡方法이 현재 內務部傘下의 地方勞動官署하고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勞動行政의 單一化를 가끔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는 政府가 연구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報告드립니다.

그 다음에 産災像防을 위한 勞動部의 職制上 機構가……

○金炳龍委員 長官님! 80年이후 不當解雇者 및 拘束者 數字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추후 알려주겠다는 말씀인데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政府에서도 어느정도 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어느 事業場 이것을 명시해서 25日안으로 본인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알겠읍니다. 25日 전까지 도착시키도록 하겠읍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企業人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숫자도 지금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25日까지……

○勞動部長官 崔明憲 같이 보내드리겠읍니다.

그 다음 産業災害像防을 위한 勞動部의 職制上 기구가 不合理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見解와 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勞動部에 産業災害像防業務를 담당하는 部署는 本部에 産業安全課 불과 13名밖에는 없읍니다. 그리고 6個 地方廳에 역시 産業安全課가 있읍니다. 이 人員이 34名 總計 전국 事業場에 대한 産業安全 부분을 다루고 있는 人員數는 47名으로 되어 있읍니다. 金委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每年 14萬名 이상의 産業災害者가 발생하고 있고 8,700餘個 事業場에 대해서 像防指導와 監督業務를 執行해야 하는 그러한 여건에 있읍니다. 人員도 그렇고 여러가지 기구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當部에서는 高度産業社會에 부응하는 産災像防 政策開發을 위해서 현재 政府하고 협조중에 있읍니다마는 최소한도 産業安全課를 局으로 확대하고 41個 全國 地方勞動官署에 産業安全課를 다시 新設해서 人員을 현재 34名으로부터 저희들이 원하는 人員은 최소한도 265名 約 210·220名이 增員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建議를 하고 있읍니다. 조속히 職制와 人力을 확보해서 産業災害를 劃期的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겠읍니다. 차제에 委員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결들어 부탁드리겠읍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申告證 交付關係인데요. 이것을 地方行政官廳과의 協調關係 이러한 등등으로 해가지고 市 道에서 접수를 한다 하는 말씀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勞動爭議行爲 申告나 모든 절차를 地方行政官廳에 申告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地方行政官廳에 보면 道나 直轄市 또는 餘他市에서는 係長도 아닌 勞政係員 또는 勞政係長 정도가 한 두 사람씩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勞動專門家도 아니고 一般行政員으로서의 勞動問題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과거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政府가 과감하게 좀 시정을 한다는 이러한 政策이 이루어져야지 서로가 눈치작전……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行政官廳의 例를 들어서 道에 하나의 係가 없어진다 또는 그렇게 되면 道가 자기네 業務를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조급한 생각 또는 그 權威的인 이런 생각 道가 있는데 道知事가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勞動問題를 道에다가 申告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自負心과 權威的인 意識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해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現實的으로 안맞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런 건 있지요.

앞으로 일단 勞動部에서 主管이 되어서 申告를 하되 行政官廳에 사유를 寫本을 하나 보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地方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行政官廳에서 地方 道知事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勞使問題를 해결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權威意識가지고 큰 소리 치다 보면 勞使關係를 惡化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한번 再考를 해서 앞으로 勞動部로 모든 것이 一元化되도록 이렇게 政府의 방침이나 또는 勞動部의 방침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그 부분은 저희 勞動部로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이미 방침으로 결정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政府政策에 대한 보다 效率的인 行政機構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時限的으로 大統領傘下에 行政改革調査委員會를 만들어서 年內에 여러가지 결론이 나오게끔 되어 있읍니다. 다시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큰 욕심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積極的으로 노력하겠읍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産業安全課를 産業安全局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것을 施行을 해서 실지 우리 安全에 대한 것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선량한 우리 勤勞者들이 한 사람이라도 덜 災害를 입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安全局하고 일부 부족한 勤勞監督官 문제는 저희들 勞動部에서 특별히 行政改革委員會에서 나오는 答 이전에 臨時措置를 해달라고 해서 總務處에 가 있는 분이 産業安全局 昇格問題하고 勤勞監督官 100名내외 우선 급한 대로 充員시켜 달라 그 가운데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男女雇傭平等法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勤勞監督官은 앞으로는 半數 이상은 女子 勤勞監督官으로 저희들이 採用하려고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현재 절충중에 있고 전번에 個別的으로 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行政改革委員會 答 이전에 年內에 措置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金炳龍委員 좋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安全局으로 하면서 또 勤勞監督官을 약 한 100名 정도 增加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李海瓚委員께서 좋은 質疑를 해주셨읍니다.

과연 勤勞監督官 그분들이…… 물론 다 존경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약 370 내지 380個 業體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年 12달 가도 아마 1個 事業場을 勤勞監督官 한 사람이 돌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첫째는 중요한 것이 勤勞監督官 數字가 적은 것을 補充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아까 李海瓚委員이 지적한 것과 똑같이 정말 그 분들이 司法警察官 역할을 하면서 직접 告發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또 企業人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敎育을 해서 정말 勤勞者 편에 서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政府가 특별히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答辯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許容이 되어서 採用이 되면 저희들은 엄선을 해서 아주 「엘리트」로 이러한 부분은 充員을 할 計劃입니다.

끝으로 勞動委員會를 勞動法院 또는 勞動審判院으로 改編하고 委員의 職級도 上向調整할 用意가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現行 勞動委員會는 機構 및 專門人力의 부족으로 사실 昨年 下半期 勞使紛糾 이후 今年 上半期에 와서는 勞使間에 制度圈內에 紛糾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勞動委員會가 엄청난 業務量을 갖게 되었읍니다. 審判機能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勞動法院問題는 勤勞者의 權利救濟와 利益保護 측면에서 볼 때에 經費負擔의 過多 長期間 소요 專門的 法律知識을 요하는 등 조금 불리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사실 지금 勞動委員會 人員도 增員해 달라는 것을 緊急要請을 하고 있읍니다.

金委員께서 中央勞動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을 次官級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次官級도 못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1級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심같아서는 최소한도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 내지 常任委員은 次官級으로라도 우선 昇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충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勞動委員會를 勞動審判院으로 改編하고 다음에 調停 및 判定業務에 대한 專門性과 迅速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委員會의 組職 資格基準 등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紛爭調停機能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金炳龍委員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勞動委員會 關係法令을 좀 改正을 하는데 지금 勞動審判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審判所라고 할 것이 아니라 勞動裁判所로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名稱을 바꿔야 되지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名稱問題는……

○金炳龍委員 政府가 그런 어떤 意圖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로서는 그 執行하는 業務內容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名稱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法院도 좋고 審判院도 좋지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法院보다도 勞動問題 勞使紛糾를 다루는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오히려 勞動審判院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立法過程에서 立法府에서 정해지는 대로 業務內容에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은 따를 생각입니다.

이상 金委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 李仁濟委員과 李海瓚委員님은 個別 一問一答式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약하고 이어서 梁慶子委員님께서 제기하신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政府의 産業災害 豫防策의 政策이 미흡하고 다음에 이것을 보다 補完할 생각은 없는가 있다면 具體的으로 밝혀라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60年代서 70年代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社會는 高度 産業化과정에서 每年 産業災害가 급증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었읍니다. 災害率도 昨年末 현재 2.66%였었읍니다마는 당시는 4%에서 5% 수준까지 이르렀읍니다.

81年度 事案의 重大性을 인식해서 産業安全保健法을 制定 施行한 이후 産業災害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7年度 昨年 災害率은 2.66%로서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주변 中進工業國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그러한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따라서 當 勞動部에서는 産業災害를 劃期的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長短期對策을 수립해서 앞으로 積極的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모두에서 說明드렸읍니다마는 高度 産業化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한 政策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제부터는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政策 가운데 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勞使를 비롯한 全國民의 産業安全保護 保健意識을 높이기 위한 敎育 또는 弘報를 積極的으로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今年度에 발족한 韓國産業安全公團의 專門人力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는 보충해서 産災多發業體에 대한 安全 保健診斷 또는 技術指導事業을 앞으로 持續的으로 실시할 것이고 當部 地方 勞動官署를 통해 아까도 잠깐 金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人員을 좀 더 확보해 産業安全保健法 違反業體에 대해서는 監督을 강화하는 한편 産業安全保健 技術開發 그리고 産業變化에 따른 安全保健基準 補強등 法的인 制度의 개선을 아울러 추진해 나갈 計劃입니다.

또한 重化學工業化에 따른 重金屬등 有害物質에 의한 職業病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今年 5月부터 來年 9月까지 粉塵 重金屬 有機溶劑등 有害物質 取扱業體가 전국에

한 1,840餘個 있읍니다마는 이들 業體에 대한 特別點檢을 기위 실시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作業環境 改善 그리고 職業病 有所見者에 대한 조속한 療養 作業轉換등 保護措置를 취할 計劃입니다.

來年에 職業病硏究所를 설립할 計劃입니다. 그래서 職業病 豫防과 作業環境改善硏究를 강화할 計劃입니다. 이러한 長短期的 對策중 梁委員께서 지적하여 주신 未備事項에 대해서는 계속 補完 改善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職業病相談室은 各 地方 勞動官署 실정에 따라 勤勞者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運營의 묘를 기해 나가겠읍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대한 專門人力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우선 최우선 해서 補完 내지는 敎育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補充質問 하나 하겠읍니다.

지금 長官께서 對策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對策을 세우려면 정확한 원인의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産業災害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長官께서는……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 개인의 所見입니다마는 産業社會 發展過程에서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미 이러한 분야는 발생이 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潛伏期間이 5年 내지 10年 長期的으로 15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이러한 潛伏期間이 경과됨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과거 이러한 분야에 대한 政策이 일부 소홀 내지 미흡했다는 것을 저는 솔직이 시인하면서 그러한 점을 느낀 이상 그 부분에 대한 補完政策을 積極的으로 開陳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一般的으로 勞動界에서 거의 常識化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勞動條件이 열악해서 勤勞者들이 長期間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産災率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長時間 勤勞 그것이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보다더 根源的인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勞使雙方의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일부 企業主들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해서 勤勞者들에 대한 不當雇傭이라고 할까 不當勤勞를 시킨 그러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비단 長期間 勤勞는 과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근자에는 이러한 業體들도 대개 時間制로 보는 勤勞基準法은 지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保護裝具라든가 혹은 從業員에 대한 事前敎育 내지는 철저히 事前豫防 檢診하는데 소홀함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主 質問者한테 실례가 안되면 더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그 災害의 원인이 施設의 未備 安全意識의 결여 이런 데 있다고 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12時間 13時間 長期間 勞動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災害가 생기는 率이 너무 많습니다.

「택시」만 보더라도 運轉士들이 過勞때문에 보통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원인이 만일에 長時間 勞動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長時間 勞動을 규제할 수 있는 勤勞基準法上의 규제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있읍니다. 李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은 저 나름대로 이해를 좀 잘못한 것같은데 重金屬 기타 有害物質에서 나오는 公害問題를 말씀드렸는데 長時間 勤務로 인해서 過勞에서 오는 産災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勤勞基準法이 있읍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의 경우에는 3交代 8時間 勤勞制를 꼭 지키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분야도 앞으로는 積極的으로 違反業體에 대해서는 經營主를 依法措置할 생각입니다. 長時間 勤勞로 인해서 勤勞者의 피로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입는 그러한 경향도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李相洙委員 한 가지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지금 有害業所는 6時間만 勤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勤務를 시키려면 長官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또 그 이외에 많은 제한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제한을 지키지 않은 業所에 대해서 勞動部

이름으로 한번이라도 告發해본 적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사람들이 6時間 이상 勤務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해온 사실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6時間 勤勞를 시키고 있다 단 6時間 勤勞時間 가운데서 착용시켜야 될 安全保護具라든가 혹은 기타 환경 이것이 미비한 점이 적발이 되어서 改善命令을 저희들이 내린 사실은 있고 또 그 환경을 개선시킨 그러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안 될때는 依法措置를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도 報道된 그러한 내용 대개 零細業體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附隨的으로는 기타 逆作用이 있기 때문에 뭣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積極的으로 어떠한 사정을 보지 않고 심지어 저희들은 個別的으로 지시하기를 그 事業場을 폐쇄시켜도 좋으니까 그러한 補完施設을 할 수 있는 財政能力이 없는 業體에 대해서는 閉鎖措置시켜라 하는 강력한 지시까지 현재 내리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드립니다.

○李康熙委員 지금 李委員님이 質問하신 데에 하나 덧붙여서 質疑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長時間에 대한 문제가 勤勞者들에 대한 열악한 勤勞環境에 하나 더하는 問題點으로 우리나라의 勤勞條件에 많은 대두된 問題點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長官께서 지금 處罰爲主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택시」技士들에 대한 問題點도 어떤 成果給에 대한 문제 또 時間外手當問題로 해서 이런 문제에 시간이 短縮됨에 따라서 收益金에 대한 勤勞者들의 問題點은 없는지 한번……

○勞動部長官 崔明憲 열악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8時間 지날때 10時間까지는 勞使合意에 의해서 하지만 時間이 넘을 때는 그것은 違法事項으로 되는데 어디까지나 時間延長 문제는 勞使雙方의 合意問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대개 運輸業界는 「버스」나 「택시」는 8時間 勞動制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근래 運轉技士들의 要求事項이고 또 月給制로 해달라 여러 가지 手當要求가 있읍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추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제가 質問드린 것은 勤勞時間 延長問題나 이런 것을 어떤 一方的인 勞動部의 行政問題爲主냐 아니면 收入에 관한 문제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구상하고 계시느냐…… 勞動部는 어떤 行政으로 勤勞者의 收入에 대한 문제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勞動時間을 短縮시킬 수 있는 문제 이런 根本的인 문제에 대한 對策이나 어떤 구상이 따라야지 그것이 없이는 一方的으로 해서 勤勞時間을 어기는 데는 어떤 處罰이…… 收入問題하고 상당히 聯關性이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우리 李委員께서 補充質疑한 내용을 알겠는데요. 저 個人 생각으로는 業種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運輸業界의 경우에도 또 다르고 成果給制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勞使雙方이 합의해야 될 사항인데 勤勞者 측에서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違法事項이기 때문에 依法處理하겠다 10時間 범위 내에서는 勞使 쌍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단 勞動部로서는 어디까지나 勤勞者의 收入이 증대되는 방향에서 勞使問題가 이룩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고 아니면 별도 手當을 하나 더 設置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鐵道廳의 경우는 機關士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長距離走行手當같은 것이 현재 지급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勤勞者들의 收益性을 높이는 방향에서 時間問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長官께서 根本的으로 견해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얘기 들어 보니까 勤勞者의 收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勤務를 많이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깔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勤勞者들은 收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3年前 大宇「어패럴」의 김준용委員長이 最後 陳述할 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의 희망은 大統領이 되는 것이고 나이 먹어서 淸溪川에 와서의 희망은 하루라도 빨리 아침 8時에 出勤해서 밤 6時에 退勤하는 會社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勤勞者들은 收入이 문제가 아니고 長時間

勞動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長官께서 많이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좋지 않느냐 하는 식의 견해를 갖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發言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게 아니지요. 같은 時間에 時間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勞動部로서는 8時間이면 8時間 勤勞하면서 勤勞者의 收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勞動政策을 유도하고 지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부득이 해서 勤務時間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勞使쌍방의 合意에 의거해서 하되 그때도 역시 勤勞者의 收入이 높아지는 편으로 勞動行政을 지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勤勞者의 職業病 豫防과 職業病의 早期發見을 위해 定期檢診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어제도 잠깐 業務報告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有害部署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해서는 年 1回 特殊健康診斷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職業病 早期發見 또 발견이 되면 신속한 治療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미 저희들은 年 2回 義務的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앞으로 만일 이러한 法이 다뤄진다면 産業安全保健法 改正過程에서도 좀 더 積極的인 자세에서 이러한 問題點 등을 法에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세째 産災豫防對策중 法改正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制度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梁委員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委員님들께 저희 部가 제출한 産業安全保健長期對策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短期的으로는 梁委員님 말씀과 같이 기존 制度를 활용하면서 産災豫防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中長期對策은 法 制定 내지는 改正 制度의 補完 등을 통해서 根源的인 産災豫防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産業災害豫防對策은 수시로 補完해 나가면서 施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重金屬 鍍金工場 職業病 報道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全業體에 지난 7月4日부터 簡易檢査를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제 報道된 것은 7月15日까지의 中間報告입니다. 京仁地域 鍍金工場 78個 業體에 대한 中間檢査였읍니다. 이것은 어제 報道하면서 사전에 전부 委員님들께 資料를 드렸읍니다.

아마 그 당시에 梁委員님은 안 계셔서…… 어제 가져가신 資料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患者는 早期治療를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措置를 다 完了했고 全國的으로 조사해 보면 퍽 염려스러운 數字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根源的인 對策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또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賃金에 있어서 男女差別이 예견되는 바 同一賃金을 지급할 수 있는 對策이 무엇이냐 하는 質疑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勤勞基準法 第5條에서 勤勞條件에 있어서 男女差別은 禁止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同一職에서의 差別 등은 同一勞動에 대한 同一賃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勤勞監督을 통해서 적극 시정하도록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男女間의 職種과 職務分野의 차이로 인해서 同日勞動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職務分析 작업이 先行되어야 하므로 제반 與件이 합당하게 되면 具體的으로 男女雇傭平等法에 規定하도록 하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法은 施行令이 얼마전에 制定되어서 施行한지 일천합니다. 여러 가지 部分的으로 未備點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法을 施行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補完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어서 男女雇傭平等法에 規定되어 있는 育兒休職制를 勤務期間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長官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育兒休職制는 生後 1年 미만의 嬰兒를 가진 勤勞女性이 신청하는 경우에 1年 이내의 休職이 인정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育兒休職制는 嬰·乳兒의 건전한 成長을 도모하기 위하여 一定期間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기른 후에 勤勞女性이 다시 자기 職場에 復歸하는 制度이므로 이 期間을 勤續期間에 포함되도록 이것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만일 미비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읍니다.

그 다음에 出産을 이유로 한 女性 早期停年制 防止對策 내지는 制度的인 장치가 있

는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마는 88年4月1日부터 施行하는 男女雇傭平等法은 出産을 이유로 早期退職을 시킬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고 동일한 職種에서 男女의 停年을 다르게 하는 경우와 結婚 出産 등 母性機能이 최대로 발휘되는 시기인 30歲 전후를 停年으로 規定하는 경우는 本法에 違背되므로 勤勞監督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 男女雇傭平等法의 弘報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男女差別問題는 慣習的인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先決條件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當部에서는 여기에 대한 積極的인 弘報를 하기 위해서 新年度의 弘報豫算을 대폭 增額해서 이것이 인정된다면 積極的으로 弘報 啓蒙해서 전체 國民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이 政策을 施行해 나가겠읍니다.

○梁慶子委員 한 말씀드리겠는데 솔직이 말씀드려서 다섯 가지 事項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議員立法을 하면서 처음에는 완전한 내용이 담긴 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자면 이 法이 너무 강해서 女性을 雇傭하는 것 자체를 企業主의 입장에서 회피할까봐 조금 완화된 분위기로 이것을 制定해 놓고 보니까 사실 요즘 法의 정신에 어긋나서 執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그래서 調整者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려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改正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女性勤勞者를 代辯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長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심있게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個人的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리고 執行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알겠읍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사정을 具體的으로 잘 모릅니다. 梁委員님 말씀을 100%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 다음 産別勞聯 20個所중 12個所만 女性部長이 있는데 8個所에 女性部長이 없는 이유 그리고 勞組 活動에 女性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質疑였읍니다.

현재 韓國勞總에 加入된 20個 産別勞聯중 鑛山 航運 海運勞聯 등이 女性部長이 없읍니다. 이는 女性을 차별하는 慣行 때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産業上의 特性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採用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勞動組合法 11條 規定에 의해서 組合員은 性別에 의하여 差別待遇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政府는 앞으로 勞動組合 活動에 있어서 女性이 차별 받지 않도록 積極的으로 啓導하겠다는 것을 차제에 報告드리겠읍니다.

○梁慶子委員 具體的으로 4個의 産別외에 4個가 또 있는데 그러한 데 女性部長을 조속히 委囑해서 원만한 女性勞組活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알겠읍니다.

다음 韓國TC電子의 勞使紛糾 경위와 女性勤勞者 暴行事件 眞相糾明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韓國TC電子는 慶南 馬山市에 소재하고 있는데 女性 勤勞者들이 중심이 되서 지난 6月1日 勞組를 結成하였던 바 남자 勤勞者들이 勞組加入을 요구하였으나 勞動組合에서 이를 거절함으로써 남자 社員하고 組合員 간에 감정이 악화되서 지난 7月8日 男女 職員 간에 다툼이 있었고 7月12日 勞組 幹部 5名이 社外 사람과 같이 同社 代表에게 面談을 요구하던 중 남자 職員들에 의해서 구타당하는 등 일련의 충돌로 10餘名이 부상하는 事例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當部에서는 이와 같은 충돌과 관련해서 同社 事業主를 勤勞基準法 違反嫌疑로 지난 7月15日 立件하였으며 향후 勤勞者들의 衝突事態가 事業主의 간여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會社는 社長 이하 현재 5名이 立件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失業解消를 위한 職業訓練擴大計劃 그리고 新設 訓練院에 대한 訓練職種 선택이 잘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88年 현재 6萬2,410名에 대하여 職業訓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失業者와 혹은 非進學 靑少年이 있읍니다. 그래서 政府는 豫算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職業訓練院 施設

을 확충코자 3個 訓練院 新設事業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3年 동안 약 1,200億원 정도를 投入해서 2萬5,000名의 農漁村 非進學 靑少年 가운데서 技術習得을 원하는 사람은 全員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計劃을 수립 完了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失業 勤勞者의 雇傭促進訓練도 계속 擴大해 나갈 計劃입니다.

그리고 新設 중인 3個 訓練院의 訓練職種을 職種別 人力需給 전망 등을 고려해서 專門機關과 그 다음에 産業體의 의견을 십이분 반영해서 앞으로 女性이나 障礙者에게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職種들을 좀더 자세히 연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읍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尖端職種 設置問題는 앞으로 계속해서 訓練院의 工課改編時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科學技術處가 관장하고 있는 訓練院들하고 有機的인 연결을 통해서 보다 效果的으로 이 분야에 대한 政策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大學 卒業者 高級人力에 대한 就業對策에 대해서 長官으로서의 個人的인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機能人이 우대 받는 社會를 만들기 위해서 技能人優待法을 지금 立法豫告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技能資格을 가지면 大學 卒業者 이상의 우대와 學歷을 인정받는 이와 같은 社會를 만들므로 해서 불필요하게 大學進學을 희망하는 일부 人員들을 技能大學쪽으로 또 技能人 養成을 위한 과정으로 흡수시켜서 앞으로는 可及的이면 우수한 人員이 技術分野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政策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梁慶子委員 그것은 大學入學에 대한 過熱이라든가 이런 全般的인 문제를 따졌을 때 아주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政策인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역시 이것을 짚은 이유는 과거에는 技能人을 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傳統的인 慣習에 의해서 官僚主義的인 思考方式이 팽배했던 시절 그리고 官職에 있기를 희망했던 부모들의 敎育熱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技能을 가진 高級人力보다는 「펜」만 놀리는 화이트칼라」의 취향을 가진 高級人力이 現實的으로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린다거나 소외하게 되면 역시 그것도 우리 政策의 하나의 死角地帶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알겠읍니다. 梁委員님 質疑의 취지는 잘 이해가 갑니다. 現存 大學 卒業者 가운데 失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電算網을 통해서 전부 入力해 놓고 業體하고 積極的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은 大企業이나 一般企業들이 政府가 간여해서 就業을 알선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를 잘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분야에도 앞으로 저희들은 勞動部의 政策으로서 한번 실행해 나갈 計劃입니다. 감사합니다.

○李海瓚委員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學校에서 卒業해서 나오는 構造하고 勞動市場 構造간의 격차가 너무 크단 말이지요. 비단 高等學校뿐만 아니라 大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部分的인 여러 가지 施策을 해도 그것은 될지 몰라도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惡循環의 고리가 끊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勞動部의 입장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勞動市場과 學校制度와의 관계가 根本的으로 조정될 수 있는 對策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李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勞動行政을 맡다 보니까 勞動行政 전반에 대한 深度있는 연구를 하는 權威있는 機關들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勞動硏究院을 發足시켰읍니다마는 여기에는 政府가 전연 개입하지 않고 學界의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저희들이 또 혹은 기타 企業體가 주는 「프로젝트」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勞動 전반에 걸친 深度깊은 硏究結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퍽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런 분야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硏究院의 發足과 더불어 勞動部로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孫柱煥委員 金炳龍委員 質問에 대한 補充質問 하나 하겠읍니다.

勞動部 資料를 보면 금년 6月末 현재 賃金 引上率이 全體 平均 13.2%로 되어 있고 大企業의 平均 賃金引上率이 15.4%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이 資料를 보면서 低賃 企業體의 賃金 水準別 引上率이 궁금해서 資料를 요청했는데 그런 資料는 調査된 바 없다고 해서 資料를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企業規模別 平均賃金 및 賃金引上率을 보면 500人 이상의 賃金引上率이 14.1%입니다. 그리고 100名에서 299人까지가 11.4%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企業의 規模가 작을 수록 平均賃金도 낮고 賃金引上率도 동시에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資料는 없지마는 이 企業規模別 平均賃金 및 賃金引上率을 이 表로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 勤勞者의 賃金構造가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다른 資料를 보면 여기 420萬名의 勤勞者의 기준을 어느 선으로 잡았는지 몰라도 400萬名 調査對象者중에 약 半數 이상이 30萬원 미만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全體 賃金勤勞者의 70% 정도가 30萬원 이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大企業의 賃金引上率은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이 低賃金 勤勞者의 賃金引上率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高賃金 勤勞者와 低賃金 勤勞者의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高等學校 卒業者라도 서울 地下鐵의 賃金은 50萬원이 넘고 다른 데에 就業하고 있으면 일이십萬원밖에 못 받는 이런 불균형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勞動部로서는 低賃金業體의 賃金을 引上 유도하는 어떤 對象을 갖고 계신지 하는 것이 첫번째 質問이고

두번째는 賃金引上도 좋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선세되어야 하는 것이 企業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企業의 經營收支가 맞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勤勞者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實業率만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勞動部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두자리 賃金引上으로 해서 支拂能力이 한계에 이른 企業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質問이고

세번째 質問은 지금 역시 제가 요청해서 勞動部가 提出한 資料를 보면 지난 80年부터 86年까지 우리나라의 賃金 및 物價指數가 다른 NICS 國家와 비슷한 規模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난 6年동안에 賃金勤勞者가 賃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昨年부터 일어난 현상이지마는 두 자리 數字 賃金引上이 한자리에 묶여있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企業의 再投資에 미칠 영향 또 그것이 經濟成長의 鈍化要因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점과 두자리 數字 賃金引上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主務長官인 勞動部長官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 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첫째로 低賃金業體를 해소하기 위한 引上對策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最低賃金制를 實施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勞動部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基本給 最低賃金制 1 그룹과 2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第1 그룹이 縫製 小賣業體인 11萬1,000원과 2 그룹이 11萬7,000원 두 개 그룹인데 아직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業體가 지난 6月末까지 저희들이 啓導를 하여서… 40餘군데 여기는 부득이 立件措置를 하면서 그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零細業體는 下請을 주고 있는 原企業主에게 下請費를 引上하도록 措置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곧 來年度 最低賃金額을 결정할 시기에 와 있읍니다. 그래서 일부 企業에서 다소 불만은 있지마는 最小限度 最低賃金 이 부분만은 今年에 비해서 대폭 引上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저희들은 業務를 推進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最低賃金 受給者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으면 하고 그 이상의 문제는 전태만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具體的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案을 사실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企業의 支給限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企業의 支給限界는 스스로 자기가 長期的인 전망을 해서 限界點에 도달했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스스로 勞使間에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企業의 公開性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

을 가지면서 과연 두 자리 數字引上을 지켰을 때에 앞으로 그 企業의 再投資 내지는 擴張 또는 「인플레」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부분은 勞動部長官으로서 政府의 經濟成長 그 比率에 비해서 현단계에서는 두 자리 數字의 勤勞者에 대한 處遇改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읍니다.

(金令培委員長, 盧武鉉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盧武鉉 다음 石準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石準規委員 統一民主黨所屬 石準規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民主黨 國會議員으로서 勞動部가 잘한 것을 덮어두고 잘못한 것 勤勞者의 억울한 것 1千萬 勤勞大衆을 대변해서 말할 責務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어제 勞動部와 各 傘下團體의 報告를 들었읍니다. 報告內容대로 되면 앞으로 勤勞大衆은 生活이 向上되고 權益이 保護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한가지 기쁜 것은 勞動部長官께서 各 地方廳長에게 豫算이라든지 事務官異動까지 移管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勤勞監督官問題입니다. 아까 李海瓚委員이 잠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勤勞者들에게 아버지像으로 보여야 할 勤勞監督官이 착취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착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가지는 勤勞監督官이 勤勞者에게 이상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勞動部의 主人은 勤勞勞動者입니다. 이 勤勞者가 있기 때문에 勞動部가 또 勤勞監督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地方의 勤勞監督官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 전부는 다 그렇지 않지마는 勤勞者에게 군림하고 있읍니다.

被疑者 취급을 하고 있어요. 罪人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보통 勤勞者들은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지 못하고 의복이 남루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니 이것이 勤勞者를 위한 勞動部인지 官廳인지 檢事인지 刑事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勤勞者를 홀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마는 그 監督官을 떠나서 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저는 昨年度 과격한 勞使紛糾가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를 해서 안됐읍니다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녹슬은 머리는 열번 스무번 長官이 잘 하라고 指示를 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一罰百戒主義로 勤勞監督官이 370名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30名 정도를 「모델케이스」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大學을 나와 가지고 정열에 불타고 의욕에 넘치는 인재가 많이 있읍니다. 公開試驗을 해서 일신할 용의가 없는가?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本人같은 사람이 國會議員이 되는 것도 원도 한도 없는 일이고 또 崔長官도 長官되는 것이 一身의 영달이요 가문의 빛입니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읍니까? 長官의 名譽를 걸고 자리를 걸고 이 녹슬은 머리를 참신하고 훌륭한 「엘리트」로 한 30名 정도 교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石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분야는 우리 石準規委員님 생각이나 長官을 맡고 있는 제 생각이나 추호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이것은 本人自身이 勞動部에 대해 어느 정도 業務把握을 다 했다고 할까 거의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1次的인 敎育 그것이 끝나고 난 연후에 對內的인 新風에 의한 刷新 그것 안될 때는 一罰百戒主義로 그러한 引責問題까지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떤 면으로는 그 이상의 각오도 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저희 一線에서 勤務했던 勤勞監督官들이 事業主나 혹은 勤勞者에게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간에 폐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長官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관련된 質問을 한 가지만 하겠읍니다.

勤勞監督官 身上明細書를 提出해 달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별도로 提出하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아무런 對答이 없읍니다. 勤勞監督官 身上明細書는 人事「카드」기 때문에 勞

動部에 항상 비치되어 있을테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提出해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다른 資料와 모아서…

○李海瓚委員 빨리 提出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도 勤勞監督官들을 여러名 만나보니까 지금 石委員님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印象이거니와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事業場이 많아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져서 못 움직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勞動廳 關係資料를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崔杜烈勞動廳長이 勤勞監督官 事務所에 「오토바이」를 支給했던 것으로 資料가 나와 있던데 지금 「오토바이」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이 事故率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豫算措置는 안되고 해서 각자가 자기 車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廳長 자신들도 자기 個人車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政府內 사정입니다마는 역시 豫算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事務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기동성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硏究를 해보고 있는데 요즘 「오토바이」문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거같으면 이것을 권장하겠는데 오히려 事務自體 遂行보다도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고려하고 있다가 중단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드립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質問한 것중에 하나가 당시의 이미 「오토바이」를 支給한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읽어본 資料이기 때문에 年度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오토바이」를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廢棄處分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74年度에 만들었던 것이라는데 한臺도 없이 다 廢棄가 됐답니다.

○委員長代理 盧武鉉 石準規委員님 質問 다 끝나셨읍니까?

그러면 다음은 李相洙委員님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미리 質問書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드리지 못한 점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質問의 效率性을 기하기 위해서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읍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質問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答辯에 곤란한 점이 계시면 나중에 다른 質問者가 質問한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오늘 委員會가 최초의 政策質疑를 하는 委員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뒤에 형식적인 면에서 韓國의 勤勞行政을 맡고 계신 분이 전부 나와 계신 것 같아서 長官님의 勞動行政에 대한 基本的인 立場을 듣고 싶어서 한가지 質問을 드리겠읍니다.

一般的으로 産業社會에서 勞動力을 팔고 사는 勞使間에서 갈등이란 것은 필연적이고 마찰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效率的이고 合理的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이냐가 문제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一般的으로 얘기하기를 勞使의 대등성을 전제로 自律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勞使行政은 갈등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무조건 갈등이 생기면 治安維持的인 次元에서 없어야 되는 것 이러한 基本的인 인식의 바탕에서 勞使行政이 이루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基本的으로 6共和國이 된 다음에 인식의 전환이 문제되는데 長官께서는 勞使間의 갈등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이런 葛藤理論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풀어나간다는 말씀인지? 아까 얼핏들으니까 勞使委員會의 逆機能的인 면만 고려해가지고 勞使委員會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속에서 얼핏보면 葛藤理論이 아닌 勞使間의 어떤 平和的인 出發理論에 입각해서 얘기하신 것같이 느껴져서 묻는 것인데 基本的으로 그런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갈등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저는 처음 就任할 때부터 일단 勞動部를 責任지고 이끌고 나가면서 우선 勞使 雙方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人權이 무시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勞使問題가 이룩될 수 없다 근본을 거기에 두고 모든 勞動行政을 執行하고 企劃해 보라는 指示를 했고 그러한 바탕에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면은 치중할 생각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갈등을 전제로 하지 않

는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바꾸어 얘기해서 요즘 使用者들 중에는 賃金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生産條件하고 달라서 賃金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고 賃金을 정하는 데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전제로 해서 賃金은 내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것이니까 賃金問題로 紛糾가 생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방금 長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盧武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勞動部長官 崔明憲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産業社會에서는 쌍방이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對立하는 兩面性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人格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쌍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 요구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묻는 것은 勞使間에 갈등이 생기고 이랬을 때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견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根本的으로 勞使問題를 바라볼 때 勞使間에 賃金을 주고 받고 勞動力을 팔고 사는 관계에서 갈등은 必然的이라는 前提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굉장히 어려운 哲學的인 質問이신 것 같은데요. 勞使關係는 서로 相對性이 있기 마련인데 어떠한 그런 金錢 가지고 相對方의 人格을 評하고 그것을 산다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런 勞使問題에 서로 對座한다고 할 것 같으면 根本的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李相洙委員 答辯은 하시지 않아도 관계없읍니다마는 西歐에서 이미 勞使關係는 勞動力을 팔고 사는 관계니까 紛爭과 갈등은 必然的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前提로 해서 겸허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을 취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紛爭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갈등을 前提할 수 없다든지 이런 입장을 혹시라도 勞動部長官이 가지고 계신다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惡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게 될텐데 제가 약간 유감스러운데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또…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갈등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서로의 그런 人格과 이해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長官께서는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前提로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勞使가 自律的으로 對等性을 前提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勞使의 對等性을 위해서 현재 勞動組合法이나 勞動關係法에 使用者를 우위로 하는 여러가지 法條項이 있읍니다.

그래서 勞動關係法이 그 當事者間의 對等性을 前提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로서 타당하고 잘 된 法으로 보시는지 앞으로 改正의 必要性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昨年 11月에 一部改正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改正된 現行 勞動關係法이 100% 만족하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社會發展과 더불어 여러가지 앞으로도 이러한 法에 대한 改正 내지는 補完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勞動關係法중에서 가장 兩者의 對等性을 沮害하고 있는 規定이라고 보는 두 가지 점만 제가 물어보겠읍니다.

第3者介入禁止條項이 있지 않습니까? 第3者는 介入해서는 안된다 이 條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一般的으로… 이 條文은 國保委때 삽입된 條文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政府나 勞動部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不純 第3者가 介入해 가지고 勞動運動을 우리 自由民主主義體制에서 볼 때 左傾化 시킨다든지 이런 점을 예상해서 第3者介入規定을 두었다고 한다면 현재 거의 보면 國家保安法이나 또 만일에 勞動者들이 暴力行爲를 할 때 第3者가 거기에 傍助하거나 介入하면 暴力行爲에 관한 處罰法이 있읍니다.

이런 法이 있는데 굳이 그런 法을 두고서도 二重的으로 이 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法을 廢止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일 廢止할 생각이 없다면 무엇때문에 이 法을 두는지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本人이 이해하기로는 현재 第3者 介入을 반대하고 있는 분야는 純粹勞組運動 相互間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 上級團體介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關係없는 第3者가 介入해서 妨害 또는 操縱하는 것 내지는 煽動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가 삽입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前提로 아까 長官께 勞使間의 문제는 對等性을 前提로 해가지고 自律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라고 長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사실 저나 옆에 있는 盧武鉉辯護士이 두 사람은 昨年 第3者介入禁止로 拘束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勞動者들을 위해서 辯護士가 약간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拘束거리가 되는지? 과연 그러면 방금 長官께서 勞使間의 對等性을 前提로 해서 自律的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 한다면 勞動者한테도 辯護士나 敎授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諮問을 받고 도움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이 法을 둔다면 勞動者한테는 이 法에 의해서 다른 第3者로부터 도움받을 수가 없고 使用者는 마음대로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長官의 政策理念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분야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읍니다.

우리 두 委員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法的인 어떠한 制裁를 당했다는 것은 間接的으로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具體的 事項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 第3者介入問題 勞使紛糾現場에서 外部人士가 實態把握 등을 명분으로 해서 활동하는 경우 혹은 또 勞動關係人士가 여기에 介入했을 때 이것이 違法이 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現行 法規上 직접 勞動關係를 맺고 있는 勞動者 또는 當該 勞組 또는 上級 勞動團體 기타 法令에 의해서 정당한 權限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抵觸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勞組設立 解散 勞組介入 脫退 그리고 團體交涉 및 爭議行爲에 관해서 當事者들 操縱 煽動 妨害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자꾸 다시 반복해서 물어서 죄송한데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條文이 있다는 前提下에서 그것을 어떻게 運營하느냐 하는 것 하고 관계없이 예컨대 蔚山의 現代 경우에 聯合體의 權영록씨가 第3者介入禁止로 拘束 되었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蔚山의 특정한 重工業의 勤勞者가 아니면서 聯合體의 代表가 重工業의 勤勞者들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拘束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第3者介入을 문제삼고 拘束한다면 長官이 아까 말씀하신 勞使間의 對等性 自律性 이런 것 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法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立法方向을 묻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上級團體거나 혹은 勞動關係에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現代問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法的인 문제는 저로서는 솔직이 문외한입니다.

法에 대한 것은 司法機關에서 취급할 문제인데 그것이 違背가 되는지 안되는지 與否問題는 法의 判決이 나야 알겠지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혹은 소신을 가지고 答辯을 할 자신이 없읍니다. 솔직이 말씀드려서…

○李相洙委員 答辯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勞動部에서 그런 關係法을 고치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長官께서 對等性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第3者의 介入禁止條項이 當事者間의 對等性을 해치는 條項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長官의 견해에서 여기 立法에 대한 태도를 오늘 밝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具體的으로 이것을 改正한다 못한다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깊이 검토도 안했고 또 솔직이 지금 答辯드릴 자신이 없읍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政府는 政府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고 여기에 계시는 各 黨의 입장이 있고 또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은 직접 立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政府의 뜻도 반영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法을 만드는 當 立法府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行政府는 단지 그것을 執行할 그러한 책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서는 政府의 勞動行政에 관해서는 政府를 대변해서 나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政府의 입장을 말씀해야 할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政府의 입장으로서는 第3者介入法案은 現行 그 法 가지고 그대로 執行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政府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政府의 입장과 長官의 견해는 배치되네요. 長官께서는 對等性을 前提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셨는데 이 條項이 만일 對等性에 걸린다고 하면 長官은 政府의 입장과 다른데 앞으로 勞動行政을 풀 수 있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對等性問題하고 第3者介入問題하고는 조금 해석상 문제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李海瓚委員 관련된 補充質問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企業家 事業主 하고 勞動者는 한 個人으로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人格的인 대등한 관계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集團的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個人的인 人格과는 별개로 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具體的으로 現場에서 關係對策會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關聯機關하고 會社事業主하고 같이 對等을 세우고 勞組設立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區廳에 申告를 할 때에 事業主하고 區廳하고 연결이 되어서 設立申告를 지체를 시킨다라든가 勞組를 결성한 사람이 設立申告를 하면 그것에 대한 畢證交付를 지연을 시키면서 事業主가 만들어오는 幽靈勞組의 申告證을 먼저 접수를 시켜서 勞組의 結成을 방해하는 이런 관계들이 누누이 지적이 되고 新聞에도 거듭거듭 報道가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분명히 事業主편에는 官僚와 關係機關이 작용을 하고 있고 勞動者들 쪽에서 勞動者들의 罷業能力이라든가 勞動法에 대한 이해라든가 罷業經驗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未熟性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敎育하는 그런 일단의 노력이 기울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대등한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第3者介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改廢對象으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第3者介入을 禁止하고 있는 것이 國保委 이후에 생긴 것은 바로 勞動者들의 그런 組織的인 自體防禦能力 이것을 禁止하기 위한 것이지 한쪽의 균형을 깨기 위한 것이지 대등한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3者介入은 아니었지 않느냐 라는 것이 本委員의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長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關係法은 國保委때 이것이 立法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報告드렸다시피 昨年 下半期에 각 政黨間에 합의를 보아서 關係 勞動法이 改正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가지 勞動關係法이 많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爭議調停法에 의거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盧武鉉委員 補充質問 저도 하나 하겠읍니다.

長官님! 지금 韓國의 勞使關係에 있어서 勞動者들과 使用者側의 힘이 交涉力이 거의 대등한 상태로 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각자 위치에서 시각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거의 대등한 입장에 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대등한 입장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인식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논쟁을 제가 더 할 수가 없고요 1970年代에 全泰壹군이 스스로 焚身해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日記帳에 남긴 얘기가 "나한테 大學生 친구

가 한 사람 있었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읍니다.

현재 企業人들은 經濟人聯合會도 있고 商工會議所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 會社에 大學校 나온 大學院 나온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있읍니다. 또 돈을 주면 언제든지 辯護士를 選任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날 約 500名 정도의 勞動者를 勞組에 加入시키고 있는 勞動組合에서 組合費를 얼마 정도 거두어서 顧問辯護士를 어느 정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勞動敎育을 위해서 專門家를 초빙하는데 1時間當 講師料가 얼마되며 그런 것을 엄두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生産職 勞動者들이 과연 누구에게 講義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누구를 講師로 초빙하면 될 것이라고 엄두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現實自體는 인정하십니까? 대등하다고 보시지만 具體的으로 이와 같은 現實下에 있다 라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法律的 지식을 이용하기도 힘이 들고 專門的 지식을 이용할 기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충분한 敎育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 정도는 인정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個人的으로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勞組에 加入되면 그 上級團體에 그러한 문제가 건의가 되면 團體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交涉하는데 대등한 입장에서 交涉할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계속 묻지요.

長官께서는 法律的인 측면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외람되지만 勞動政策을 펴기 위해서는 根本的인 어떤 制度的인 改革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制度의 改革은 法律的인 改廢를 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長官께서는 法律的인 質問에 관해서 정확한 答辯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만일에 長官께서 자신이 없으시다면 다른 關係局長님이 말씀해도 관계없읍니다.

우선 최근에 문제되는 自由金融勞聯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自由金融勞聯이 설립된지가 지금 무려 한 9個月이 넘었읍니다. 넘었는데 勞動部에서 申告證을 주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단적으로 해서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具體的인 것은 實務局長한테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우선 組織의 重複 또 현재 慣行 勞總의 認准證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具體的인 것은 저희 擔當勞政局長이 나와 있기 때문에…

○李相洙委員 오히려 정확히 答辯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答辯하시기 전에 擔當局長이 대신해서 答辯에 임할 때는 지금 첫 會議가 되고 각 委員님들께서 지금 關係者들 사실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會議錄作成의 速記關係도 있으니 만큼 무슨 局을 맡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밝힌 다음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具然春입니다.

李相洙委員께서 質疑하신 韓國自由金融勞聯 申告證의 未交付 사유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평소에 全國金融勞動組合聯盟이 全國銀行勞組를 중심으로 運營되는 점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가지고 있던 第2金融圈 勞動組合들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第2金融圈 45個 勞動組合 代表者들이 87年11月27日 韓國自由金融勞動組合聯合이라는 명칭으로 聯合團體를 設立해서 總會를 開催하고 11月28日 勞動部에 設立申告를 제출하여 왔읍니다.

同 設立 申告書를 검토한 결과 勞動組合의 組職對象이 全國金融勞動組合聯盟과 중복되고 있고 또 單位 勞動組合의 總會 또는 代議員大會에서 金融勞聯에 대한 脫退決議가 없었읍니다. 또한 上級 勞動團體인 韓國勞動組合總聯盟에 加入되지 않는 등 法的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지적돼서 일단 반려가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88年2月5日字로 全國金融勞聯에서

第2金融圈 勞動組合을 組織對象에서 제외하는 規約改正을 함으로써 現行 勞動組合法 3條 5號 但書에 의한 制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련 되었읍니다.

이렇게 원래의 全國金融勞聯에서 規約을 改正하고 있던 중에 自由金融勞聯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第2金融圈 중에서 保險勞組가 全國保險勞組組合聯盟을 設立해 가지고 韓國勞總의 加入 認准證을 받아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해서 저희 勞動部에 4月12日字로 設立申告證 交付를 申請해 왔읍니다. 그래서 保險勞聯의 申告事項을 검토해 본 결과 韓國勞總의 認准書가 붙어 있고 適法하다고 인정돼서 設立申告證이 나가게 됐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全國保險勞聯과 自由金融勞聯과의 組織 重複事項이 다시 생겨났읍니다. 그래서 역시 規約上의 문제가 발생됐읍니다. 그래서 저희 部에서는 勞總에 대해서 傘下組織으로서 지도를 잘 해서 포용하도록 계속 지도했고 또 自由金融勞聯에 대해서도 勞總에서 요구하는 事項을 충족시켜서 勞總에 加入하도록 권장했읍니다. 그 결과 自由金融勞聯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또 規約을 일부 修正해서 勞總에 加入申請을 다시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그 어간에 역시 勞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반려가 되기는 했읍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旣히 勞總에서 요구한 事項을 自由金融勞聯이 다시 代議員大會를 開催해서 전부 충족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勞總에서 認准證을 交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찰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勞總의 加入節次를 畢하는 대로 바로 設立申告證이 交付되도록 할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7月6日字하고 7月14日字 自由勞組의 委員長이 가서 面談한 일이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때 局長께서는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保險勞組의 組織對象을 조정하면 申告畢證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名稱變更은 된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 組織對象도 사실 全保聯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해결된 셈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약간의 문제는 있읍니다만 과거에 遡及해서 組織重複을 다시 바로잡을 수는 없고 組織重複을 피하는 방향으로 自由金融勞聯의 規約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데 약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 보고 싶은데 지금 保險社가 많이 있는데 그 保險社 중에서 일부는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聯盟體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加入해 있는 勤勞者를 自由金融勞組가 포함시켜서 세운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미 全國保險聯盟으로 나간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保險社와 나머지 特殊銀行만인 勞組를 만든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복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保險社가 16個가 있는데 8個 保險社는 自由金融勞聯에 加入되어 있고 8個 保險社는 별도로 保險勞聯이라는 組織을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保險勞聯規約에 보면 保險社에 勤務하는 勤務者들로 組合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現行 自由金融勞聯의 規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現實的인 慣行으로 볼 때 勞動組合의 規約上 組織이 중복되는 부분은 과거로 遡及해서 그것을 확연하게 갈라나갈 수는 없읍니다. 시정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는 그 組織對象을 구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이 勞動組合規約上의 組織 慣例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自由金融勞聯側이 規約을 改正해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保險社는 旣存 組織으로 포용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保險勞聯을 組織對象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規約을 改正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로써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정확히 합시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현재로써 保險勞聯規約하고 중복되는 問題點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거로 遡及해서……

○李相洙委員 제가 다시 묻겠는데 마치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論理를 펴면 特定된 勞組가 2個의 聯合勞組를 만들면서 우리 분야의 모든 勞組는 앞으로 우리 聯合體의 會員勞組로 하겠다고 하면 다른 모든 餘他의 單位勞組가 聯合體를 못 만든다는 結論이 되는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現行 勞動組合法 3條5號 但書에 의하면 일단 기존 勞動組合이 組織對象으로 하고 있는 분야의 勤勞者를 다른 勞動組合이 組織對象으로 할 경우에는 規約上의 組織對象 중복으로 해서 거기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勞動組合의 規約上 組織範圍가 그렇게 확연하게 規定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분야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그런 경우에 앞으로 組織對象을 구분해서 保險은 保險勞聯으로 보내겠다고 規約을 自由金融勞聯 側에서 改正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勞總에서 앞으로 認准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認准書를 끝까지 받지 못한다면 저희 行政官廳의 權能으로써 검토해서 申告證을 交付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문제나 責任所在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지금 예컨대 自由金融勞組가 聯合體 勞組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規約에다가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全國保險勞組까지도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全國의 保險勞組가 제가 알기로는 特定된 保險會社만을 前提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長官께서는 마치 全保險會社를 다 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설사 全 保險會社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特定의 몇個 勞組가 단순히 規約上에다가 앞으로 全國에 있는 모든 保險勞組를 다 우리 會員勞組로 하겠다고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다른 保險勞組가 聯合體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勤勞者의 團結 選擇의 自由를 완전히 제한하는 해석인데 그 해석을 고집할 용의가 계신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現行法上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보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自由金融勞組에게 申告證을 안 주는 이유가 勞總에서 認准證을 안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현재 組織對象問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일단 해소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좋아요. 그러면 認准證이 없기 때문에 지금 勞動部에서는 申告證을 안 주고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認准證이 없으면 申告證을 안 준다는 法的인 근거는 어디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오랜 慣行입니다. 물론 法에 의해서 行政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만 法과 더불어서 오랜 行政慣行이라는 것도 일종의 準法律的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勞動組合法 3條의 但書 5號를 보장해 주는 慣行으로 해석을 하고 可及的이면 거기에 따라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그런데 慣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法的인 慣習으로서 물론 法을 補助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勞動部에서 勞動組合設立을 방해하거나 制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便法이 慣行이라 해 가지고 法으로 應할 수 있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部에서는 勞動組合의 組織을 방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리고 勞動組合을 組織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行政官廳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읍니다. 뒤에서 後見을 해주고 또 事業主의 不當勞動行爲같은 것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가면서 신속하게 設立申告證을 交付하고 있는 것이 근간의 저희 行政實態입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答辯대로라면 自由金融勞聯이 아직까지 認准證을 못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동안에 몇 個의 保險業體 勞動者들이 모여서 保險勞聯을 만드니까 또 다시 組織對象이 중복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投資信託會社중에 自由金融勞聯에 介入 안한 몇個 會社가 다시 投資信託會社를 組織對象으로

해서 가령 2個 會社가 모여서 聯盟을 만들어 버리면 自由金融勞聯은 또 다시 規約을 改正하지 않는 이상 또 組織對象이 중복됩니다. 그런 結論이 나오는 것 맞습니까? 지금까지 勞動部가 취해온 理論에 따르면 지금 내가 말한 그런 結論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勞組設立이 自由設立主義입니까 準則主義입니까 許可主義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組設立은 自由設立主義입니다. 다만 法上 申告를 해가지고 申告證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申告되지 않은 勞動組合은 勞動組合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勞動爭議라든지 團體交涉이라든지 이런 手續에 대해서 보호받을 權利를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自由設立主義라고는 할 수가 없고 自由設立主義이면서도 거기에 設立認可 비슷한 것이 가미된 制度라고 보겠읍니다.

○盧武鉉委員 認准證이란 制度가 지난 87年11月에 法改正이 되고 난 다음부터 施行된 慣行이지 그 이전에 생긴 慣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件의 勞組設立을 뒤에서 도와준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 法이 改正되고 나서 組織對象의 重複問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니까 새로이 튀어나온 制度입니다.

○李相洙委員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局長께서 慣行이라고 했는데 그 慣行이 法的으로 權威있는 勞動委員會나 法院에서 한번이라도 判例로서 蓄積된 慣行입니까? 그렇기 않으면 勞動部의 實務者들이 一方的으로 만들어 낸 慣行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아직 法的으로 蓄積된 慣行은 아닙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勞動部 자체내에서 완전히 實務者들이 활용하고 있는 慣行이란 말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國會法上 勞動委員會를 代表하는 委員長의 입장에서 지금 答辯하고 있는 局長한테 경고 좀 해야겠읍니다.

지금 局長은 委員質問에 申告畢證을 法的인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안해 주는 이유를 단순히 勞總의 認准證이 없어서 안해 준다 그것을 慣行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자꾸 強辯하고 있어요. 그런 傲慢不遜한 태도가 어디 있어?

여기는 國會요! 國會는 法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놈의 慣行을 가지고서 된다 안된다 局長이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政治的인 문제예요. 그러니만큼 行政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委員質問에 성실한 答辯이 필요한 거야! 이것은 長官께서 책임있는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局長이 答辯하는 과정에서 지금 委員長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長官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소위 말하는 自由金融勞聯 全國事務金融勞聯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하다 보니까 可及的이면 좋은 방향에서 勞使間에 어떤 紛爭이 없이 勞組 본연의 任務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다 보니까 과거 先例 때문에 慣行이라고 했던 것같은데 本 臨時國會가 끝나는 대로 이 문제만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쌍방이 損害가 없는 방향으로 타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長官으로서 身上的인 發言입니다마는 이 사람 본인이 告發되어 있읍니다. 自由金融勞聯에 의해서… 제 個人의 생각으로써는 法에 告發되어 있는 長官으로서는 法의 最終的인 審判이 난 연후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생각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건전하게 勞動運動을 하겠다는 自由金融勞聯의 인사들의 뜻을 십이분 양해해서 이번 臨時國會가 끝나면 이 문제는 積極的으로 여러 委員님들이 討議한 그 내용을 참작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이것은 自由金融勞聯의 勞組設立 申告問題만이 아니고 지금 勞政局長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國會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勞政局長 答辯態度를 보아하니 官僚들의 權能을 萬能으로 생각하고 있는 傲慢不遜함이 보입니다.

처음에 答辯하실 적에는 勞總介入 認准書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처음에 自由金融勞聯에서 勞組設立申告할 적에 組織對象이 어디하고 중복됐었읍니까? 그 때는 勞總에 認准書가 없었다고? 그랬지 組織對象의 重複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答辯하실 적에는 이제는 認准書를 만일 勞總이 안준다면 政府의 權能을 가지고 認准書를 안주어도 設立申告書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答辯하셨읍니다.

速記錄을 確認해도 좋습니다.

바로 처음에 設立申告를 했을 적에 그런 權能을 가지고 있는 勞政局長이 당연히 勞組自由設立主義에 의해 가지고 設立申告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認准書가지고 拒否하고 그 다음에는 全保聯가지고 拒否하고 이제 와서 이것이 社會問題化되고 國會에서 문제가 提起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權能으로 處理하겠다고 하는 그런 一貫性없는 行政態度를 가지고 어떻게 勞組行政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年 밖에 實施되지 않은 慣行을 가지고 慣行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읍니까? 분명한 謝過의 말과 答辯을 하십시오.

○李相洙委員 長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自由金融勞組에 대한 申告證은 長官께서 바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常任委員會가 끝나기 전까지 自由金融勞組에 申告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이 아니라 저희 全關係者들이 이 國會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內部業務는 사실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長官의 權限으로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줄 수 있는 그간의 過程을 지금 현재 다 거쳐놓고 있읍니다.

例를 들어서 이런이런 것을 是正해라 그러면 是正이 됐고 한데 아직 저의 손까지 그것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中間에 口頭로만 報告들었기 때문에 本 臨時國會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時間이 있으니까 곧 그러한 문제는 措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相洙委員 長官! 정말 本委員을 분노케 하는 發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9個月동안이나 全國의 勞動運動에서 관심의 對象이 되었던 문제고 勞動部長官을 相對로 職務遺棄로 告訴까지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長官께서 확고한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檢討해서 決定하겠다 한다면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長官 그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李海瓚委員 한 가지 말씀을 더 여쭙겠는데요. 職務遺棄 및 勞動法違反嫌疑로 大檢에 告發되어 있는데 長官은 大檢에서 調査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大檢에서 召喚되게 되면 가야지요. 그런데 저희 實務者들이 一次的으로 갔다 온 것으로 報告를 받았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만일에 長官께서 아직도 慣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納得하시지 못해서 지금도 그 문제를 保留하신다면 慣行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局長께서 나오셔가지고 自由設立主義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약간의 制限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勞組組合法 14條에 보면 規約에 所屬된 聯合團體의 名稱이 나와 있읍니다. 아마 이것에 根據해 가지고 所屬된 聯合團體로부터 認准書까지 받아 오라고 하는 모양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勞組도 設立 안된 마당에 上級團體에 介入해가지고 認准書를 받아오라는 것이 우선 말이 됩니까?

내가 앞으로 勞組를 設立하면 어떤 上級團體에 加入하겠다. 이 정도의 規約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직 加入도 안된 勞組한데 너 上級團體에 加入해가지고 認准書 받아오라!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선… 어때요? 말이 안되고 論理에 안맞으면 慣行을 지금이라도 取消해야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慣行이라는 것은 지금 1年밖에 안되었다는데 잘 아시다시피 즉 法改正되기 전에 產別勞組라는 것은 產別團體는 16個 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勞組 產別團體의 設立이 자유롭게 되어서 현재 그 法에 의거해서 實施하고 있는 過程에서 잘 아시다시피 化學勞聯에서 고무勞聯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第2金融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過程에서 이러한 문제가 提起되었던 것인데 그 慣行 자체가 傳統的으로 오랜 期間의 慣行이나 歷史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잘못된 慣行이라는 것이 認定되면 또 이 문제가 9個月동안 끌었던 문제이고 長官께서는 지금 職務遺棄로 告發까지 당해 있어서 많이 생각했던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認准書에 관계없이 自由勞聯을 認定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사실 제대로 말씀 안해 주면 長官께서 지금까지 모두 하신 그 意志를 疑心할 수 밖에 없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委員님께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解釋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해줄 용의가 없다면 本 臨時國會가 끝난 다음에 再考한다는 말조차 本 長官이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參酌해서 그 부분에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만일 다른 勞動政策問題처럼 다른 機關하고 協議해서 處理할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도 백번 양보하고 열심히 해서 가능하시면 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말할텐데 이 문제는 勞動部長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끌거나 關係機關과 協調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決斷을 내려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關係機關하고 協議하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李相洙委員 그러면 그렇게 解釋하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李相洙委員 그러면 自由金融勞聯은 長官께서 申告證을 주신다는 것으로 알겠읍니다.

그 다음에 最近에 지금 駐韓「프랑스」大使館에 勤務하고 있는 우리나라 勤勞者들이 있읍니다. 알고 계신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알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 勞動者들도 勞動組合을 設立하기 위해서 申告證을 받기 위해서 지금 區廳에 申告證交付를 要請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勞動部에도 아마 陳情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申告證을 안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선 그 法的 이유를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문제는 外國公館 國際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決定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고 해서 外務部하고 相議를 했읍니다.

外務部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外國公館員 接受國內에서 派遣國 政府를 代表하여 公的 機能을 遂行하는 國家機關임에 비추어 外國公館에 대한 國內法의 適用問題는 國際條約 또는 國際慣行 등을 檢討하여 處理되어야 할 事案으로서 國際法上 接受國은 外交使節의 任務遂行을 위하여 충분한 便宜를 提供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外交使節에게도 接受國 法令을 遵守할 一方的 義務는 있는 것이나 동시에 治外法權 등의 外交特權 등이 있어 國內法을 違反하였다 하더라도 그 履行을 擔保할 法的 手段이 없고 駐韓 外國公館 韓國人 職員들이 勞組結成 및 團體行動으로 인한 兩國의 摩擦은 자칫 外交問題로 飛火될 가능성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外國에서도 公館에는 勞組가 設立된 事例가 없고 國際法上 相互主義原則 適用을 감안할 때 外國公館의 勞組設立을 許容하고 있지 않는 것이 國際慣例라는 外務部의 의견을 參考해서 駐韓 外國公館에 勤務하는 韓國人 職員의 勞組結成은 制限할 수 밖에 없다고 判斷이 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제가 우선 두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금 「프랑스」에 우리 韓國大使館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自國에 駐在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大使館에 勤務하는 自國의 勤務者들을 위해서 勞動組合을 法的으로 許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의 입장을 고려해서 「프랑스」 大使館에 勤務하는 우리 勤勞者가 勞組設立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事大的인 根性에서 나온 處理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갖습니다. 우선… 그런 外國의 例를 확실히 調査해 보았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이 互惠平等의 原

則에 의해서 만일 프랑스에서 그러한 事例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事項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報告드렸듯이 外務部를 통해서 그와 같은 事情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쪽까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勤勞者들이 아주 어렵게 勞組를 設立하려고 할 때는 勞動部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해도 參考로 그 設立을 沮害하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硏究해 가지고 확실한 根據가 있을 때 設立을 막아야 될텐데 단순히 外務部에 알아보고 애써서 만든 勞組設立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자세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째로 말씀하시기를 紛糾가 생겼을 때 勤勞者들을 措置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例컨대 勞組委員長이 勞使紛糾를 일으켜가지고 解雇되면은 解雇된 것에 대해서 法的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가 오히려 勤勞者들이 損害가 아니냐 그래서 아예 組合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勞動部에서 얘기해 가지고 아마 返戾하라고 했다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그 勞組를 設立하려고 했다가 지금 崔昇民委員長이 解雇되었읍니다. 그 것 아시는가요?

○委員長 金令培 저… 委員님 여러 委員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事項이 있읍니다.

오늘 勞動委員會 會議가 아무래도 늦게까지 持續이 될 것같습니다.

能率的으로 會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國會안의 議員食堂에 食事注文을 해놓았읍니다. 사실 8時까지라야 된다고 하는데 5分이 지났읍니다. 그래서 잠깐 停會를 하고 食事를 하신 다음에 會議를 계속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점을 質疑者이신 李相洙委員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李相洙委員 미리 準備를 위해서 말씀인데 이 부분하고 職業病問題만 묻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食事 끝난 다음에 계속하겠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잠시 停會하겠읍니다.

(20時 7分 會議中止)

(21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質疑를 계속해 주십시오.

○李相洙委員 지금 時間도 9時가 넘었는데 제가 너무 오래 質問하면 뒤에 계신 課長님들이 延長手當줘라 夜間手當줘라 그러면 곤란하니까 가볍게 하겠읍니니다.

아까 물었던 駐韓 프랑스 大使館 勞組設立問題에 관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包括的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 보겠읍니다.

아까 長官께서 말씀하신 때 세가지 문제 때문에 그 申告證을 주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첫째 이유인 國際法上의 相互主義原則에 입각해서 볼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駐在하는 外國의 大使館에 勤務하는 勤勞者들한테 勞動組合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조사하셔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駐在하는 다른 나라 大使館에 勤務하는 프랑스人들에게 勞組를 허용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申告證을 줄 수 있을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번째 이유로서 治外法權的인 大使館에서 勞使紛糾가 일어나면 外交上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團結權이나 團體交涉權을 주면서도 公務員들에게 이 團體行動權을 주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일단 프랑스 大使館에 勞組를 設立하겠다는 취지는 단순한 團結權의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設立을 시키고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團體行動權은 약간 제약하더라도 治外法權的인 면에서 外交上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 문제를 수용할 수 없으신지?

그 다음 세번째로 勞組를 만들어도 勞組活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大使를 상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쪽에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아가서는 현재도 解雇되었지만 괜히 勞動組合 활동하다가 解雇되면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손해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治外法權的인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勤勞基準法으로 處罰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지금 崔昇民군이 解雇당했는데 解雇無效를 프랑스를 상대로 解雇無效訴訟을 제기하고 賃金請求를 해가지고 만일 判決에서 이기면 현재 프랑스가 우리 韓國에 가지고 있는 大使館 建物이라든지 財

產에 대해서 押留해 가지고 判決을 執行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 勞組를 設立해 가지고 活動케 하는 것이 勤勞者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측면이 전부다 받아들여진다면 申告證을 교부할 생각은 없으신지 包括的으로 묻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答辯드리겠읍니다.

지금 저희들 休息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다시 재차 확인했읍니다.

佛蘭西 國內法上 外國公館에 대해 勞組設立을 금지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읍니다. 그러나 사실 勞組가 設立된 駐佛 外國公館은 현재 全無하다는 것입니다. 世界 어느 國家에서도 外國公館에 勞組를 設立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가 되었읍니다.

아까 모두에서 잠깐 說明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外交的인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李委員께서 質問이 계신 그 내용은 깊이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公務員勞組와 비슷하게 團結權을 주고 行動權을 제한하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方法이 없겠는가 또 만일 주었다면 할 용의가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先例가 있다면 저희 勞動部로서는 역시 우리 內國人이고 勤勞者이기 때문에 勤勞者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積極的으로 그 문제는 한번 취급해볼 상황인데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거듭 강조하겠읍니다마는 外交的인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 各部間에도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더우기 佛蘭西 本國政府하고의 교섭은 저희보다는 外務部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具體的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난 연후에 결과를 나중에 常任委員會나 個別的으로 우리 李委員님께 결과를 通報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本委員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으니까 長官께서 세가지 측면을 존중해 가지고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너무 우리나라 政府가 事大主義的인 어떤 屈辱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勤勞者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積極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職業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 열다섯살 먹은 文松勉군이 불과 35日만에… 놀라운 일인데 水銀蒸氣가 뿜어 나오는 협성機械에 入社한지 35日만에 中毒이 되어서 죽었읍니다.

35日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長官께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읍니다.

이 少年이 죽은 다음에 職業病問題에 관해서 勞動部가 취한 조치는 어떠어떠한 것이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우선 1次的으로 文군에 대해서 저희 實務者들이 제가 문책하기 전에 잠깐 報告를 받았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변명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희 부하들이 하는 그 변명 자체를 長官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은 없었읍니다.

일응 저희 部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요즘 보시다시피 저희 部로서도 일부 생소했던 분야도 많습니다마는 또 技術的인 면에서 일부 미숙했던 점도 없지 않았읍니다.

현재 계속 조급한 생각으로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勞使紛糾 못지 않게 과거 취급했던 產業災害問題는 저희 部가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이 분야에 대한 事前豫防 또 현재 나타나고 잇는 患者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法 이전에 人間的인 측면에서 그네들이 빨리 완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報告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에 겸해서 李委員께서 故 文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本人이 서울大學病院長을 직접 만났읍니다.

그래서 이 文군에 대한 「챠트」가 있는데 좀더 具體的으로 알기 위해서 院務課長이 日本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는데 겸해서 자기네도 좀 불투명한 점이 있고 또 專門家的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챠트」를 보냈다 하는 그런 具體的인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저희 部로서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대폭 豫算面에서도 增編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積極的인 사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報告드립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묻는 것은 벌써 文군이 죽은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 중요한 職業病問題에 대해서 報告에 의하면 아마 일정한 業所에 대해서 檢診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현재 어제 잠깐 資料로 제출되었읍니다마는 제한된 人員가지고 7個班을 편성해서 全國的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도중도중 問題點이 도출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是正 中毒患者에 대한 치유를 병행하면서 一方的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이러한 職業病分野도 새롭게 발견되고 있읍니다.

어제 잠깐 報告가 되고 오늘도 報告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部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지표명으로 일단 中間報告를 했읍니다.

아마 여러 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部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로 이것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李相洙委員 물론 의지를 강하게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具體的으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18歲 미만 勤勞者에게 有害危險한 事業에는 사용을 시킬 수 없다는 規定이 있는데 혹시 현재 有害業所가 몇個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業所에 대해서 18歲 미만의 勤勞者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은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긴급지시를 해서 조사되고 있고 또 그러한 違法業體에 대해서는 事業體에 대해서 刑事立件시키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特殊事業場에 대해서 特殊診斷을 1年에 한번씩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키고 있나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이번에 다시 1年에 2回 이상 하도록 새롭게 저의 部의 지침을 바꿨읍니다.

○李相洙委員 지나간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지지 않겠읍니다마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9月 定期國會때 한번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겠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文군이 죽기 전에 서울大學病院에 診斷書까지 첨부해 가지고 産災療養을 신청했는데 南部地方事務所에서는 기절했읍니다.

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양해해 주신다면 具體的으로 좀더 상세하게 局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려도 괜찮겠읍니까?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勤勞基準局長 金基德입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을 올리겠읍니다.

애당초 文松勉군이 職業病을 인정해 달라고 저희 南部地方事務所에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3月22日字 서울大病院 診斷書에 보면 事業主의 확인이 누락되는 등 職業病 인정의 근거가 상당히 불확실했읍니다.

이 당시 서울大病院에서 측정한 수은농도는 일단 검출은 되었읍니다마는 허용한계가 다소 부족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月22日 카톨릭 病院하고 漢江聖心病院에다가 일단 다시 측정을 의뢰했는데 양쪽 전부 각각 다른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5月27日 카톨릭 醫大 李상묵敎授등 4名에게 疫學調査를 의뢰를 했었읍니다.

6月14日 일단 카톨릭 醫大에서 文군의 수은중독은 職業關聯性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6月20日 일단 요양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5月16日 疫學調査를 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은중독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사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文군이 4月7日에 서울大病院에서 수은중독인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産災療養請求를 했으면 바로 그 즉시 그와 같이 정밀조사를 해서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그 이후에 방금 했다는 두 病院에 대한 조사는 서울大病院에서 한 조사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日刊新聞에 보도되어서

5月15日 日刊紙에 보도되니까 그때 가서야 정밀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애당초 원래는 産災療養을 받으려면 産災療養機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울大學病院은 지금까지도 療養機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漢江聖心病院 등 저희 療養病院에다가 재차 文군에 대한 정확한 여러가지 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병원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第3 機關인 「카톨릭」醫大에 다시 疫學調査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전부 취했읍니다.

○盧武鉉委員 혹시 下級機關의 과오가 있으면 솔직이 시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李相洙委員 다시 묻겠는데 4月7日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서울大病院에서 수은중독으로 보인다고 해서 産災申請을 했으면 만일에 當局에서는 약간 의문스러우면 그 이상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바로 그 즉시 疫學調査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거의 한달 보름이 지나서 5月15日에 日刊紙에 보도되니까 비로소 그런 조사를 실시했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다시 한번 報告올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은중독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機關이라는 것이 몇個 機關이 안됩니다.

그중에는 서울大學도 제외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大學도 이런 産業保健問題에 깊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아까 長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수은에 대해서 서울大學에서도 다른 데다가 측정 자체를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産災療養機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후에 漢江聖心病院이라든지 이런데에 재차 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늦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항간에는 勞動部에서 가능하면 職業病이 발생한다는 것을 밖으로 公表하지 않기 위해서 消極的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가 막바지에 新聞에 보도되니까 바로 다음날 정밀조사를 의뢰했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985年부터 職業病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간에 이미 납이라든지 석면 등을 조사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금년에도 애당초 利川에 있는 어느 형광등 공장에서 수은중독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은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18個 業所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읍니다. 이 당시 이미…

그래서 숨기거나 그러려고 했던 사실은 전혀 없읍니다.

○李相洙委員 그 문제에 관한 논의는 그 정도하고 관련해서 묻겠는데 一般的으로 産災가 발생했을 때 産災患者들이 療養申請을 해오면 지난번에 보니까 勞動部는 産災報償金이 오히려 남아서 적립한다고 어제 말씀하시던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진단서까지 첨부해 가지고 療養申請을 하면 자꾸만 「비토」를 합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지금 産災療養이 되려면 要件이 필요합니다.

우선 作業을 하는 도중에 作業과 관련되어서 다치거나 병이 들어야 産災療養이 되기 때문에 그런 要件이 충족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바로 入院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이 職業關聯性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좋아요. 職業關聯性 얘기를 꺼내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會社에서 確認書를 안해 오면 보통 療養申請을 안해 주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안해 줍니까? 法的인 근거가 있나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法的인 근거가 있읍니다. 施行規則 27條에 나와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會社에서는 그 이상의 損害賠償을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보통 確認書를 안해 주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친 사람은 바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勞動部에서는 診斷書를 첨부해 가지고 會社의 확인없이 동료들의 어떤 확인만 해오면 이런 産災補償 처리해 주고 나중에 확인할 용의는 없는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지금도 대부분은 일단 事業主 확인이라든지 신청서는 사실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우선 필요한 요양 조치를 한다든지 필요한 수술이 있다면 수술까지 시키고 사실 절차는 추후에 받는 경우가 허다이 많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도 됩니까?

職業病關聯與否가 문제될 때에는 別論으로 치고 診斷書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會社에서 一方的으로 손해를 물지 않기 위해서 確認書를 안해주고 지체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一律的으로 앞으로 일응 먼저 産災補償申請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孫柱煥委員 産災療養處理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바로 그건데요. 그것은 그 事業場에서 실지 그러한 産災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확인 없이도 앞으로 즉각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트겠읍니다.

○梁慶子委員 産災가 발생했을 때 勞動者는 會社측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勞動部측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會社에서 確認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勞動部에서 그것은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되는데 다만 産災保險을 타는 과정에서 勞動部가 너무나 탄력성없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솔직이 시인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産災가 생겼을 때 너무 인색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쪽에 선례라든지 관례가 없으면 굉장히 시간이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에서 勞動部로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거울 삼아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李相洙委員님 質問의 요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현재 그와 같은 조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各 事業所에 지시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産災分野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國庫에서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재검진을 시키는 그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李委員님께서 事業主 누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읍니다.

원래 産災保險이라는 것은 過失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事業主의 故意와 또는 過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補償問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企業主가 사실상 더러 해주지 않고 마는 경우가 더러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바로 民事로 가서 자기가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러 미루고 잘 안해 주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報告를 드립니다.

○李康熙委員 長官님 答辯하고 조금 상반된 것이 있는데 지금 지적을 하자면 問題點이 많이 있읍니다.

우선 企業主나 또 勞動部로서는 사건발생 위주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지적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勞動部가 물론 전문의나 그런 감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요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勞動部에서 솔직이 애로사항에 대해 어제 報告에 상당히 장황하게 希望的인 勞動政策이 나왔는데 그럴만한 것을 政策을 펴려면 人的資源이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차마 그 말이 안 나와서 勞動部處에 대한 그런 보완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答辯이 솔직하게 돼야 앞으로 勞動部의

살림이 어떻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保險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産災件數가 많이 나오고 産災保險料가 그 會社에 많이 지급이 되면 産災保險徵收金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調整問題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産災對象者가 어려운 속에서 保險金을 받지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수가 다시 法的 次元에서 辯護士하고 해서 다시 判事쪽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것도 補償金이라는 原則에서는 모든 것이 만족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法問題가 제기되어서 같은… 물론 司法府와 行政府가 다르기는 하지마는 그 문제가 一括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그런 政策이 우리가 紛糾의 要素나 또는 患者 當事者의 家族에 대한 쓰라린 고통을 하나라도 사전에 豫防할 수 있는 문제도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硏究次元에서… 저는 이따가 質問時間에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勞動部가 民營化해서 一般保險會社式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도 質問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李相洙委員님한테는 죄송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保險業務의 民營化問題는 政策的인 문제인데 현재 우리 勞動部 자체가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일부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해 볼 문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參考로 해서 다시한번 積極的으로 硏究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관련되는 事項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文松勉군 死亡 이후로 産災에 관한 勞動部의 特別對策이 나오고 있는대 法令違反을 하면 강력히 依法措置하도록 地方事務所에 指示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指示內容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指示한 公文이 있을 것 아닙니까? 寫本을 提出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그 資料가 本部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書面으로 提出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두번째로는 特殊檢診을 實施하고도 그 原因을 발견하지 못한 醫療機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勞動部에서 具體的으로 어떠한 措置를 하셨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어제 작금에 報道된 일부 내용중에 한 해당되는 부분인데 鍍金業體들을 취급해서 그것을 事前에 발견 못한 病院에 대해서는 一次的으로 이유를 규명해서 結果措置하도록 그렇게 措置를 取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原因發見 못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카드뮴」事件 경우에서 보면 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特殊檢診에서도 原因을 發見 못한 경우가 행여나 고의성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거니와 앞으로도 이런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防止해야 되겠고 고의성에 의한 것도 방지해야 될텐데 그런 점에서 醫療機關 選定問題라든가 이런 점에 대한 勞動部의 具體的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어제 現況報告에서 잠깐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역시 勞動部가 관장하고 있는 病院에 委囑을 해서 專門硏究機關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福祉會社가 관장하고 있는 저의 中央病院에 이런 職業病硏究所를 설치해서 專門的으로 投資해서 이 機關에서 이 分野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현재 저희 勞動部하고 맡고 있는 産災病院에 대해서 參考的인 資料를 제공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業務를 進行시킬 計劃입니다.

○李相洙委員 마지막으로 職業病問題에 관해서 하나만 묻겠읍니다.

文군이 일하다 죽은 협성계공 있지 않습니까? 협성계공은 우선 法으로 금지된 水銀處理作業을 未成年者에게 시켰고 두번째로는 유해한 환경에 局所挑氣裝置등 職業病 豫防을 위한 措置를 일체 取하지 않았고 세번째 水銀에 中毒된 어린 少年을 保險 治療하기는 커녕 職業病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事件隱蔽에 급급했고 네째로 被害者 家族은 물론 診斷醫

師에게까지 폭언 및 위협적인 言辭로 모욕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다섯째로는 수차에 걸친 産災處理要求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對策도 세워주지 않고 産災療養請求書에 확인 날인도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故人의 入院室 및 영안실에 한차례도 방문한 일이 없읍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人間的인 양심조차도 팽개친 企業主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勞動部에서 그 협성계공에다가 취한 措置가 어떤 것들입니까? 具體的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우선 一次的으로 그분에 대한 잘 잘못을 막론하고 저희 擔當事務所에 一次的인 責任을 물어서 저희 職員들에 대한 懲戒 내지는 事務所長을 解職을 해서 待機發令을 시켰고 이어서 협성계공 代表者를 刑事立件시켜서 連行 도중 高血壓으로 重患者室에 入院이 되었다고 해서 마침 그 아들이 工場長입니다. 그래서 工場長을 手配 拘束시키려고 措置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행방이 묘연하고 그다음 둘째아들이 무슨 部長으로 있기 때문에 그라도 拘束시키자고 했었는데 지금 一次的으로 새로 就任한 事務所長에게 그 社長이 그러한 중태라면 그 다음에 工場長이 되는 큰아들의 所在를 찾아서 拘束 刑事立件시키는 방향으로 業務를 推進중에 있는데 所在把握이 아직 안되어서 指名手配를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刑事告發을 한 모양인데 그외에 현재 협성계공의 作業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여타 부분은 稼動을 하고 있는데 水銀을 取扱하고 있던 부분만은 완전히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이런 工場은 마땅히 作業場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措置를 취하지 않고 또다시 그런 事故가 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문제가 아닌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水銀을 取扱하던 그 場所만은 폐쇄를 시켰읍니다. 그래서 지금 職業病이 발생할 수 있는 危險要素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폐쇄시켰지마는 여타 부분은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李相洙委員 여기에서 어떻게 答辯해도 관계없읍니다마는 현재 협성계공은 作業이 進行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長官께서는 바로 이 會社의 作業實情을 알아보고 根本的으로 對策을 세워주시고 다른 이와 비슷한 業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行政措置를 취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른 質問은 뒤에 質問하실 분들이 質問할 때 보충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읍니다.

「솔제니친」이 한 얘기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法이 아니라 法을 執行하는 執行者라는 말이 있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最低賃金法이 것 아주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改正되기 전에 現在段階에서도 그 執行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러면 政府에서 最低賃金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最低賃金도 지키지 않는 業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團束을 하겠다고 했는데 團束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具體的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報告드린 대로 一次的으로 이것이 今年度에 처음 實行되는 分野입니다. 그래서 6月까지 各 事業所別로 거기에 未達하는 業體에 대한 啓導를 해가지고 7月부터는 實行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指示가 되었고 만일 6月까지 是正이 안되는 業體에 대해서는 立件措置하라 強力措置하라 하는 것을 指示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와같이 啓導한 결과 많이 是正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未是正된 분야는 현재 40個 業體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從業員은 823名으로 통계를 잡고 있읍니다. 이것은 7月19日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業體의 나름대로의 고충은 冒頭에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대다수 纖維分野의 下請業體인데 그 下請을 주는 業體에서 이와같이 下請을 맞는 業體에게 最低賃金을 實行할 수 있도록 製品 製造 賃金單價를 올리도록 一方的인 措置도 取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報告드립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行政的인 補完措置도 取한다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정말 最低賃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業所가 있다고 하면 長官께서는 一定期間후에는 전부 告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이미 40個 業體는 告發

이 되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告發이 안된 業所는 언제까지 告發할 豫定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현재 是正이 안된 業體는 다 告發이 됐읍니다. 그래서 告發된 곳의 40個 業體 從業員은 823名으로 나와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서는 현재 違反業體에 대해서는 전부 告發됐다는 말씀이신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李相洙委員 이상입니다.

○李海瓚委員 最低賃金制에 관련한 質問을 한가지만 하겠읍니다.

어제 業務報告過程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質問이라기 보다는 確認하는 것입니다.

昨年度 最低賃金制가 있은 후 今年에 施行되는 과정에서 11萬3,000원으로 策定을 했고 日當 3,700원으로 잡았읍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것은 만일 그런 基準을 設定을 했다면 실제로 25日을 일하면 11萬3,000원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施行이 되고 있읍니까? 만약에 30日을 勤務하면 그에 다른 延長勤務手當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合法的으로 支給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40個 業體에 대한 告發措置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最低賃金은 11萬1,000원 또 한가지 「그룹」은 11萬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基本給이고 그외에 手當을 합치면 平均 약 20% 내지 25%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額數로 표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最低賃金分野에 속하는 勤勞者들이 받는 月平均 取得額이 약 14萬원 내지 15萬원이 되는 것으로 統計를 잡고 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 質疑에 들어가기전에 長官한테 부탁이 있읍니다.

産業安全保健法 第6條에 의하면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를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設置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設置되어 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것은 中央行政機關과의 關聯主要政策을 審議 調整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 施行令에는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主要政策을 審議 調整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즘 職業病 關係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으니만큼 이에 대한 審議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各委員님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李康熙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李康熙委員 李康熙委員입니다.

우선 우리 13代國會 출범과 함께해서 制憲史上 처음으로 勞動委員會가 保社委員會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가지고서 勞動問題만을 우리 國會에서 심도깊게 論議케 됐음을 23年間 勞動現場에서 모든 勤勞者하고 고락을 함께한 本委員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勞動問題는 産業發展과 經濟發展의 원동력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事案인 勞動問題를 다루게 된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모든 委員님께 本委員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與野를 초월해서 生産的이고 發展的인 運營이 이룩되는 우리 勞動委員會를 이루자고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 우리 歷史는 勞動問題와 관련된 諸般 立法 또 司法 行政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節次와 변화를 같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긴 안목의 次元에서 完全的 解決보다는 時代的 변화에 급급한 나머지 問題點 發生時마다 땜질 형식으로 方便的으로 해결하는데 불과하였음은 또한 우리 모두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歷史의 흐름속에 오늘날 현실은 勤勞者와 使用者間의 利益紛爭과 權利紛爭이 날로 심화되어서 자칫 國基를 흔드는 위태로운 고비를 우리가 수없이 실감하고 있는 것이 현안입니다. 더우기 6·29宣言 이후에 급변하는 民主化의 물결속에서 勞使問題는 극도에 달하고 있읍니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勞使紛糾가 계속될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質問을 드리기 전에 答辯에 法을 改廢 또는 新設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檢討하는 式으로 答辯을 해 주셔도 異議가 없겠읍니다. 또한 答辯은 局長이 응해주셔도 좋겠읍니다.

또 하나 많은 委員님들이 저하고 중복되는 質問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서 또한 번 答辯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國會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一問一答으로 進行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長官님께서는 利益紛爭과 權利紛爭중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利益紛爭과 權利紛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利益紛爭과 權利紛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다같이 보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차례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 우선 本委員은 利益紛爭權의 解消策으로서 制憲 당시의 憲法에 명시했던 利益均霑權을 勞動部가 再復製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生產性 向上 및 物價引上 등을 고려한 賃金引上 連動制를 실시해서 賃金引上에 따른 勞使間의 紛爭을 최소화할 수 있는 對策을 강구해 보시면 어떠할지 이에 대한 長官님의 견해를 바라고 또 한편 최근 발생하는 勞使問題에서 소위 救社隊 民主勞組 그리고 自由勞組 旣存勞組 御用勞組의 분류를 우리 勞動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勞動問題의 파급되는 惡影響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이에 대한 答辯을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끝 부분부터 먼저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救社隊 또 御用勞組… 몇 가지를 쭉 列擧하셨읍니다마는 저희 勞動部로서는 무슨 民主勞組 혹은 御用勞組 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 분류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法테두리내에서 自主的으로 그 組合이 결성돼서 운영되는 모든 組合은 同一視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지금 勞動組合法 12條2項과 勞動爭議調整法 13條2項에는 第3者 介入禁止條項이 明文化되어 있는데 최근 勞使問題에서 本 法條項의 違反者는 없었는지? 法違反者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處理過程은 어떻게 했으며 또 앞으로도 이 法을 몰라서나 또는 무시해서 違反者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勞動部는 처리할 것인지 한편으로는 勞使紛爭 현장에서 일부의 在野人士 또는 일부의 宗敎人士 기타 직접 勞使擔當者가 아닌 特定人이 實態把握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指導 또는 助言 등의 명분으로 油印物을 살포하는 등 이러한 現場活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럴 때에 이것이 勞動關係法上에 第3者介入 規定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와 또 저촉이 된다면 앞으로의 對策은 勞動部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한 質疑는 잠깐 일부 중복된 答辯을 드렸읍니다마는 勞組 同質의 혹은 上級團體가 개입하는 것은 法的으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연 관계없는 外部勢力이 개입해서 妨害 操縱 煽動하는 분야는 분명히 第3者 介入으로 저희들은 現行法上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그 事業主의 고발에 의거해서 司直當局이 처벌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油印物이 配布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파악을 안하였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委員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또 혹은 全國的으로 그러한 事項을 알고자 해서 현지에 가서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第3者 介入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말씀드립니다.

○李康熙委員 아까도 어느 委員님께서 第3者 介入 禁止때 논란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通常的인 勤勞者를 몇 名으로 勞動部는 추정하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約 910萬名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통상 1,000萬 勤勞者라고 표현하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잘 몰라서 묻겠는데 혹시 우리나라 勞動組合 歷史가 얼마인 것으로 學術的으로 보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가 얼핏 듣고 또 알기로는 解放後 48年부터인가 勞動組合運動이 처음 발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勞動組合法에 의해서는 그렇지만 실제의 勞動組合이 하나의 求心點을 이룬 것은 百年 歷史로 통상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第3者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長官께 매듭을 짓고 가고 싶습니다.

우선 1,000萬에 가까운 勤勞者중에 勞動組合을 自體的으로 自生的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1,000萬이 되는 많은 勤勞者끼리 100年의 歷史를 가지고 있는 勞動組合團體가 自生力으로서의 勞動組合을 이룩할 수 있다 勞使 對策의 어떤 經濟的인 原則은 되지만 어떤 知識的인 면에서 뒤지고 있다 또는 勤勞者 自生力이 있을 수 없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長官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自生的으로 이제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좋습니다. 혹시라도 自生力이 없더라도 스스로의 自生力을 기르고 모든 行政이나 立法이나 司法에서 自生力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勞動組合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또한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勞動部의 行政的 뒷받침에 대해서는 어떤 용의가 있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李康熙委員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3者 介入에 대해서 補充質疑 하나만 하겠읍니다.

3者 介入 문제는 아까 質問한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기왕에 나왔으니까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質問하겠읍니다.

지난 6月25日 삼양교통에서 정병두씨가 3者 介入件으로 해서 구속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병두씨는 아까 말씀하신 僞裝就業者나 學生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버스」技士입니다. 서울 市內「버스」 들이 延長勤務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技士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爭議에서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정병두씨가 삼양교통에서 해고된 運轉技士로서 北部勞動事業所가 告發措置해 가지고 구속이 됐읍니다.

그런데 정병두씨는 일단 解雇無效 確認訴訟을 하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勞動法上으로 제 판단으로는 勤勞者라고 생각이 되는데 第3者로 고발할 적에는 勤勞者가 아닌 것이라고 고발했을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法的 根據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일응 해고가 되면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第3者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 地域의 勞組委員會에서 어떻게 해석을 내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다 專門的인 法的인 知識은 이것이 司直當局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海瓚委員 3條4項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救濟申請을 한 상태에서는 勤勞者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李相洙委員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리지요. 「勤勞者가 아닌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해놓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라고 法에 나와 있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具體的으로 그것은 좀더 제가 파악을 하겠읍니다.

일일이 長官이 머리가 나빠서 個人問題까지 전부 다 파악을 못했읍니다.

○李海瓚委員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事例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병두씨의 根本的인 拘束原因은 이런 사실상의 法的 根據라기 보다도 제 판단으로는 이 분이 해고된 뒤에 無效訴訟 다툼을 하면서 서울 市內「버스」 技士들의 延長勤務手當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에 대한 報復的인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서울市內「버스」 技士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어서 앞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계속 남으리라고 봅니다. 정병두씨 拘束件에 관한 勞動部의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康熙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잘 몰라서 勞動部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지금 勞動組合法과 상반된 문제가 나왔을 때 司法府와 行政府로서의 體系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그 體系上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勞動部에 관계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勞動組合法 勤勞基準法 이것은 그 法에 의거해서 立件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最低 審判은 司直當局에 의해서 결론 내려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李康熙委員 그런 法을 위배했을 때는 반드시 勞動部의 立法節次를 거쳐야만 그 다음 司法府로 移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勞動部가 그런 문제를 손을 안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勤勞監督官의 손이 못 미치거나 판단 미스로 해서 미처 勞動部가 行政 影響力을 발휘 안했을 적에 司法部에서 막바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認知事件으로 해서 司直當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혹시 지금 그런 質問을 다른 委員들이 하시는 것이 그런 견해에서 오는 차질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이 경우는 바로 北部勞動地方事務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司直當局에 의해서 認知事件으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勞動部의 地方事務所에서 바로 3者 介入으로 告發措置를 해서 立件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경위는 조사해서 추후에 다시 報告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權利紛爭과 利益紛爭을 논란하다가 權利紛爭에 있어서 아까도 많은 논란이 되었읍니다. 勞動關係法에서 勞使對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勞使紛爭 과정에서 소위 救社隊라는 이름으로 해서 籠城 勤勞者를 強制解散시키고 勤勞者간에 서로의 충돌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社會的 물의를 빚고 있는데 勞動組合의 團結力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여기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의 正體가 뭣인지 勞動部의 특별한 어떠한 분석이 있었는지 答辯을 주시고 또 事業主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진짜로 사주해서 이런 救社隊가 동원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진단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件數別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勞使紛爭의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事業主의 사주에 의해서 행해졌던 그러한 때도 있었읍니다. 이런 때는 저희들이 역시 事業主를 立件措置한 事例를 아까도 報告드렸읍니다마는 정당한 勞組活動에 대한 어떠한 加害措置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강력하게 勞組를 保護 育成한다는 측면에서 政府가 개입해서 이러한 것을 依法措置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熙委員 勞動組合이 튼튼하고 團結力이 도모되어 있을 때만이 이러한 勞使問題가 또 勞使紛爭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制度化될 문제가 따르는데 그러기 위해서 완전 유니언 숍制를 채택할 勞動部의 行政의 용의는 없는지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全體 勞組가 원한다면 저희 政府로서는 반대할 추호의 이유도 없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立法問題이니까 차후에 논의드리고…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農民들에 대한 農業協同組合 또 水産人에 대한 水産業協同組合이 있는데 勞動金庫를 설치해서 근로자에 대한 어떤 貯蓄心 함양이나 財産保護의 育成策을 지도해 줄 만한 여건은 勞動行政이 없는지?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이 報告드렸읍니다마는 勞動金庫 내지는 勞動銀行문제는 設立하는 것을 勞動部의 政策으로 이미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그외 근로자들의 中産層化를 위해서 政府各 部處와 협의해서 稅制面 住宅面 福祉厚生面에서 이렇게 多角的인 면에서 이런 문제를 重點施策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李康熙委員 그 다음에 어제 報告에서도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勤勞者 賃貸아파트 가 靑少年 또는 未婚女性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賃貸아파트 建立 과정에서 建築費의 50%를 行政府가 지원하고 나머지 垈地問題나 또 50%는 地方團體가 모든 것을 해놔야 된다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형평상 매우 現實的으로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一元化하는 체계를 政府部處에서 할 용의가 없는지 質問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未婚女性이나 勤勞靑少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을 가지고서도

현재 생활이 어려운 家長 역할을 하면서 생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러한 住宅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方案의 硏究 檢討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첫째 근로자에 대한 賃貸「아파트」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어제도 잠깐 도중에 答辯을 드렸읍니다마는 사실 地方自治團體에서 50% 부담 그리고 加外로 垈地까지 마련한다 하는데 굉장히 요즘 宅地가 不足하고 求得難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土地開發公社 내지는 住宅公社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實務的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可及的이면 中央部署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고 있는 比率을 낮추느냐 아니면 宅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일부 地方에서는 가능한 地方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어제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嶺南 中部地域을 벗어나서 湖南地域 河南工團 裡里工團地域도 이것을 적용시켜 본 바를 저희들이 再次 修正 檢討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家長 勤勞者에 대한 住宅 또는 未婚 혹은 旣婚女性들에 대한 住宅問題 이것은 建設部가 추진하고 있는 住宅事業計劃에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綜合的으로 다루어 져야 되지 않는가 왜? 이러한 專門性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건의는 하겠읍니다마는 저희 勞動部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일 필요하시다면 실지 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福祉公社 社長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參考的으로 答辯을 구하신다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됐읍니다.

○梁慶子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零細民 내지는 零細勤勞者들을 위해서 勞動部가 기위 託兒所를 많이 지금 짓는 政策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豫算에도 아마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애석한 것은 몇 개 손꼽을 만한 정도의 託兒所를 짓고 있는데 굉장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實質的으로 부모가 母性保護라는 측면도 있고 企業主나 본인에게도 자기가 아이를 완전히 위탁할 수 있고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면 30代 前後에 아이를 생산하고 키워야 하는 女性도 남편을 도와서 가계를 더 풍족하게 도울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질 좋은 勞動力을 제공해서 生産性을 올리는 그래서 女性이 勤勞條件 면에서 차별받지 않는 勞動活動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零細勤勞者들 특히 주부들을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지난번에 여떤 企業體에서는 스스로 託兒所를 건립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읍니다마는 官 主導型으로 할 수 없다면 또 官 主導型으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설립을 해주시고 그리고 企業主에게는 그런 권장사업으로 했을 때 稅制惠澤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行政支援을 해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몇 名 이상의 勤勞者에 대해서는 託兒所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차제에 한번 더 建議드리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託兒所 설치로 인해서 사실 事業主측으로서는 熟達된 女性人力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 勞動生産性이 계속 提高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勤勞者側은 계속 취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보장되고 그러니까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政府의 示範託兒所의 건립은 작년부터 91年까지 每年 2個所씩 10個所를 主要工團地域에 건립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事業場 自體에서도 託兒所를 설치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현재 6個 個人事業場에서 託兒所를 設立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저희 勞動部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政府가 가지고 있는 財政의 여유만 있다면 좀 더 이러한 事業은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豫算審議過程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좀 잘 반영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읍니다.

○李康熙委員 그 다음 質問 계속하겠읍니다.

産業安全協會가 있지 않습니까? 産業安全協會의 運營費令達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年間豫算은 産業協會가 어떻게 가지고 다루는지 答辯을 좀 바라고 현재 있는 産業安全協會를 産業安全管理公團으로 統合해서 一元化된 體系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가 왜 그런 提案을 드리는가 하면 産業安全協會가 民間으로 주도가 되었지만 歷史的으로 24年의 歷史를 가진 것으로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24年을 가진 民間人 團體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支援問題나 또는 運營問題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 根本的인 問題點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統廢合을 해서 차라리 24年동안 이러한 安全管理를 해 온 유능한 사람들을 그리고 영업을 해서 하나의 體制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實際的인 價値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또는 정 統合이 어렵다면 어차피 아까 産災保險料徵收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額數는 얘기를 않겠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부분적이나마 지원을 해서 모두가 다 공동으로서의 그 産業安全에 대한 대처를… 심화되는 産業問題에 적법하게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支援體系는 할 수가 없는지…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알겠읍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具體的인 數字도 나와 있고 해서 實務局長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李康熙委員 좋습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勤勞基準局長 金基德입니다.

李康熙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올리겠읍니다.

産業安全工團이 今年初부터 業務가 개시가 되었읍니다마는 과거에 쭉 해오던 産業安全協會와 機能面에서 상당히 중복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특히 産業安全協會라는 것은 순수한 民間團體로서 원래 設立目的自體가 會員間의 權益保護와 會員業體의 災害豫防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會員數가 事業場의 安全管理 등을 비롯해서 約 5,800餘名이 지금 會員으로 되어 있고 組織과 定員은 中央會에 約 43名 그리고 16個 支會에 約 49名 정도가 있으면서 年間豫算은 約 18億원을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産業安全協會의 主要한 機能은 현재 産業安全敎育을 실시한다든지 그 외에 災害多發事業場에 대한 安全診斷을 실시하는 것등을 主要事業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에 설치되어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産業安全公團은 보다 차원높은 의미에서의 여러가지 産業災害와 또 保護能力에 관한 여러가지 技術指導라든지 長期的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일이 주로 되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統廢合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각각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된 産業安全協會도 그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發展的인 共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李康熙委員 18億의 豫算이 어디서 令達되게 되었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전부 다 會員相互間의 會費와 그 외에 診斷을 해 주면 거기서 받는 手數料가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래서 이것이 물론 企業主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勤勞者들이 利益問題때문에 상당한 勞使紛糾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企業人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아마 웬만한 企業에서는 부분적으로 8萬3,000원씩을 매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産業災害費를 徵收를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産業安全管理公團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문제가 2重 3重 複合的인 문제가 결과적으로 勤勞者의 어떤 利益配分의 問題點에서도 상당한 危害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것을 해소하는 방책이 하나의 一元化하는 體系가 된다면 오히려 經費節減의 문제라든가 運營體系에 좀 더 확실하고도 體系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바램입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양쪽의 의견도 전부 듣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는… 統合하게 되면은 이쪽 安全만 統合하기도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고 그렇게 되면은 保健問題까지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쪽이 共存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事業을 개발해서 共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李康熙委員 共存은 찬성입니다. 다만 그러한 資金問題에 있어서 어딘가 부담을 주는 문제가 가해져서는 안되겠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것이 企業과 勞使間에 하나의 配分問題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순을 낳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是正措置를 할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 質疑입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래서 앞으로 會費라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集團安全管理診斷體制도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事業主들로부터 診斷을 해 주고 돈을 받아서 그 受益金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과거에는 이것은 勞動部에서 일부 지원했었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일부 國庫支援을 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다가 이제, 끊어진거죠?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예. 國庫支援하던 것이 産業安全公團이 생기면서 전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事業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社會的 問題點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자적합니다.

그 다음에 職業訓練管理公團에 있어서 87年에 定員이 1萬1,740名인데 실제 應募者가 3萬8,688名입니다. 그래서 職業訓練院에 그나마 기술이라도 배우려는 그 應募者에서 脫落者가 2萬6,948名으로 昨年度에 集計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敎育問題에 있어서 大學에 가는 문이 좁아서 그나마도 어렵고 또다시 職業訓練院마저 문이 좁아져서는 우리 社會問題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全國民의 3.1%의 失業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訓練院에 대한 확장을 좀 더 할 용의는 없느냐…

○勞動部次官 李龍俊 委員長님 長官께서 지금 화장실에 가셨는데 제가 대신 答辯드려도 되겠는지요?

○委員長 金令培 그렇게 하십시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長官께서 答辯을 하시면 더 정확하고 명확한 答辯을 하실 수 있을텐데 제가 해서 얼마나 충실한 答辯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職業訓練管理公團의 支援者중에서 한 2,600餘名이 本人은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收用能力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고 하는 점이 우선 國家的으로 봐서 非進學靑少年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점과 기술을 배워서 건전한 靑少年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社會政策的인 측면도 고려가 돼서 이번에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本人이 원한다고 한다면 國民學校를 졸업하고 中學校를 못갔거나 中學校를 졸업하고 高等學校를 못 갔거나 또 高等學校를 졸업하고 大學을 못갔거나 이러한 靑少年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國家에서 全額 無料로 兵役上의 혜택도 주고 또 부분적으로 學力도 인정해 주고 그래서 3個年에 걸쳐서 1,210億원의 豫算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전원 기술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는 訓練公團도 우리가 夜間도 활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지금 工業學校나 農業學校에서도 일부 이와 관련한 學科를 증설하거나 시설을 증설을 해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비단 이 2萬6,000名뿐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의 다 무료로 職業訓練을 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來年度부터 시키는데 來年에는 6,650名 또 90年에는 1萬6,765名 91年에는 約 2萬6,000名 지금 우리가 원하나 受容能力이 없어서 다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數字를 다 技術訓練을 시키려고 계획이 확정이 돼서 豫算確保까지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來年부터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勞動部次官 李龍俊 예.

○李康熙委員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물론 自體的인 勞動問題點도 있기 때문에 國際的 勞動問題를 생각해 볼 그러한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견해가 많이 있을 것입니

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國際勞動關係에 해 온 실적하고 또 ILO에 加入하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성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勞動部에서 그 동안에 國際會議에 「업저버」로 ILO總會에 참석한 회수는 얼마나 되며 또 그것에 대한 성과는 과연 무엇이 있었다고 진단이 되시고 또 언제쯤이나 ILO에 國際勞動關係에 적어도 비중있는 그러한 外交 國際勞動機構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전망을 勞動部는 진단하고 계신지 좀…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문제에 대해서는 82年부터 저희들이 ILO에 「업저버」로 참가하고 있고 本人이 금년에는 처음 참가했읍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次官께서 계속해서 이 ILO에 금년을 제외하고는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저희 次官으로 하여금 이 부분도 같이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李康熙委員 좋습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지금 長官께서 答辯하신 대로 저희가 公式 「업저버」로 참석한 것은 82年 이후 금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委員님들도 아시다시피 IL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ILO總會에서 政府代表 3分의 2를 포함한 總會會員 3分의 2를 획득해야 ILO에 가입할 수 있읍니다. 다른 UN傘下 16個機構는 대개 政府만이 가입했지만 ILO만 유독 勞使政이 가입이 되어 있읍니다.

政府가 두 票 勤勞者 한 票 使用者 한 票 한 나라에 네 표 입니다.

이러한 加入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이 되어서 ILO 事務總長에게 ILO憲章을 지키겠다는 우리 政府의 覺書만 보내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길이 다 그리 용이하지를 않고 또 外務部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다소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非同盟國이라든가 또는 北歐羅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여러가지 불투명한 점이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約 157個國이 가입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120個國의 지지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加入申請을 해야 만약에 우리가 加入申請을 했다가 否決이 된다고 하면 南北間에 여러가지 國際的인 外交的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加入申請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업저버」로 참석하면서 우리가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확산하는데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우리 지지세력이 늘어가고 있다고 보고는 있읍니다마는 이번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은 우리를 지지하는 國家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政治·經濟·文化·社會的인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가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ILO加入國家들이 거의다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南北間의 政治的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쉽사리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南·北韓이 共同으로 ILO에 가입해도 좋다고 하고 以北代表에게 같이 가입하자고 권고하기 까지도 했읍니다.

그러나 以北은 그렇게 되면 두 개의 韓國을 책동하는 결과가 되니까 統一이 된 다음에 加入을 하나로 하자는 것이 그들의 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以北이 같이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건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가입할 수 있는 저희 준비는 갖추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李台燮委員 잠깐 좀 물어보고 싶은데 ILO는 政府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政府 두 票 勞動團體 한 票 使用者側 한 票 이렇게 되어 있는데 勞動者側을 대표하는 機關은 어디가 가입을 하게 되고 使用者側은 어디서 가입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이것이 물론 國家單位로 가입은 합니다마는 그 票를 행사하는 데는 가입된 國家가 네 票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政府代表는 두 票를 행사를 하고 勞動者代表는 그 나라의 勞動組合代表 한 사람이 投票權이 있고 使用者團體는 使用者團體代表가 投票權이 있읍니다. 그래서 ILO가 시작이

되면 總會에 앞서서 「워커스 그룹」의 戰略會가 이루어지고 또 使用者 「그룹」의 戰略會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總會議長이 內定이 되고 副議長 또는 幹事가 內定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投票해서 가입된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바바라도스」같은 데는 政治的인 그런 다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용이하게 됐읍니다마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南北間에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업저버」가 우리는 82年度부터 참석을 했지만 83年度부터 以北이 「업저버」資格을 가지고 똑같이 참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지금 加入을 선뜻 신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梁慶子委員 次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ILO에 加入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美國에서 GSP制度를 卒業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 저는 ILO 規定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거기 수준이 미흡해서 못한다 라고… 예컨대 「유니온 샵」의 認定이 안되어서 4名 이상을 雇傭하고 있는 業體에서 勞組組合形成을 못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ILO에 加入 못한다는 具體的으로 이런 條件들이 있었는데 지금 次官님께서 以北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北韓은 지금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보다 勞使間의 이런 문제가 완전히 더 형편없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加入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以北의 勞使關係랄까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제가 이것을 情報的인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以北의 사정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만 이 GSP問題는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저희의 勞動法이 ILO勸告에 상당 수준에 올라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언제인가는 이 GSP에서 卒業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通商摩擦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GSP 除外問題가 나왔고 한 동안은 GATT에 社會條項을 넣는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GSP에서 除外되는 이유가 勞動關係法이 不充分해서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GSP를 除外하려는 이유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通商關係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臺灣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韓國… 다른 이유에서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금번 ILO總會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勞動部長官을 美國 勞動省長官이 초청을 해서 歸路에 美國 勞動省長官을 만났고 계제에 美國 勞總委員長을 또 별도로 만났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昨年에 勞動法 改正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美國의 勞動省 내지는 美國의 勞總 勞動團體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일부 白眼視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초청을 해서 美國 勞動省長官이 23日 今週 土曜日 여기에 도착하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때 저희들 對談 가운데서 이제는 韓國의 여러가지 사정이 人權的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장을 기했다 하는 것을 솔직이 시인하면서 오히려 美國 勞總委員長은 소위 冷却期間 그러한 문제는 자기네는 하루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改正한 너희 法이 지금 와서는 우리 美國의 勞動關係法보다는 앞서고 있다는 言까지 주었읍니다.

과거에 저희 政府 關係사람들이 가면 美國의 勞總委員長이 사실은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만나는 과정에서 約 1時間 20分동안 國際部長 겸해서 같이 連席會議를 했읍니다마는 아주 진지하게 兩國의 사정을 기탄없이 토론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차제에 報告겸 해서 參考的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仁濟委員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ILO에는 國家하고 使用者 代表 그리고 勞勞者 代表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社會主義國家에서는 使用者概念이 없을텐데 그 國家에

서는 누가 使用者側을 代表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李康熙委員님께서 언제쯤 ILO 加入展望이 서느냐 이렇게 물은 물음의 眞意는 지금 어느정도까지 우리의 ILO加入을 찬성하는 國家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 물음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은 안해 주신 것 같아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가 答辯 드리지요.

현재 저희 勞動部의 판단으로서는 현재도 신청을 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勞動部 獨單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專門分野를 담당하고 있는 外務部當局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거치고 있읍니다마는 실지 加入을 하려면 상당한 經費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ILO에 加入되어 있는 150餘個國 가운데 저희가 得票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經費一部를 대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정까지 또한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여러가지 外交的인 측면에서 보다 專門的인 분야에 대해서는 外務部에서 이 문제를 綜合的으로 檢討 分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듭 재강조드립니다마는 저희 勞動部의 생각같아서는 이제는 가능하다 하는 선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社會主義國家에서도 역시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形式上으로는 그러한 멤버들이 나오고 있읍니다.

○金炳龍委員 지금 우리가 ILO 하면 이것은 國際勞動機構에 일단 加入을 하면 우리 國家的으로나 또는 1,000萬 勤勞者에게 뭐가 혜택이 오고 또 國家的으로 얼마만한 利得이 오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지금 長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國際勞動機構에 加入할 수 있는 政府로서도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 次官께서는 勞動組合法이나 또는 勤勞基準法 다시 말씀드리면 勤勞條件도 이제는 우리가 加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거의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加入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는 勤勞時間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平均勤勞時間을 보면 아마 10時間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質疑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勤勞時間을 좀 短縮시키면서 雇傭도 增大를 하고 또 이러한 여건을 완화시켜서 우리가 國際勞動機構에도 加入을 해서 世界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서 이제 바꾸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은 또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勤勞與件 또는 政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여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不滿足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런 여건까지 안 와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勞動部次官 李龍俊 저희가 勤勞時間을 앞으로 短縮해서 勤勞者가 餘暇를 많이 선용하도록 하고 또 人間답게 좀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勤勞時間을 短縮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하고 ILO에 加入하는 條件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ILO에 지금 157個國이 加入된 것은 投票에 의해서 加入된 나라는 별로 없고 거의 UN에 加入이 되어있기 때문에 自動的으로 加入이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ILO에 加入이 되어있고 아시아에서도 우리하고 臺灣만 빼놓고… 臺灣도 들어갔다가 中共이 내쫓았읍니다마는 우리와 臺灣을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條件으로서는 저희가 충분하고 또 반대로 ILO本部가 있는 스위스는 ILO에 加入을 안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勞動部 水準으로서는 ILO에 加入해도 충분히 되고 거기에 勸告事項에 未達되는 것이 별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勤勞時間을 短縮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추구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勤勞時間때문에 ILO에 加入하는데 沮害要因이 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炳龍委員 저는 과거에 그 會議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참석했을 때도 역시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勤勞條件이 國際水準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그런 여건을 못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제일 첫째 條件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UN을 통해서 우리가 加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加入하는 節次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 안해도 自動的으로 다 加入되는 문제이고 다만 現實的인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가 ILO에 加入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건을 國際勞動機構가 요구하는 그런 勞動條件이 勤勞基準法이나 또는 勞動組合法이나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선 勞動者에 대한 모든 條件을 어떻게 지금 政府가 처리하고 있고 또 勞動者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勤勞時間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國際勞動機構에 加入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勤勞條件서부터 改善을 하고 떳떳하게 그 國際勞動機構에 그 條件을 내놓아도 손색없도록 되어야만 우리가 加入할 수 있는 여건이 나름대로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을 때에 바로 그 조건이 첫째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 봐야 소용없다 그 당시 참석했을 때에 알고 왔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改善을 해 가지고 그런 여건도 완화시켜서…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우선 우리가 改善할 것은 改善하고 맞도록 해놓고 해야지 사실 臨時變通으로 안되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李委員이 있지만 李委員한테 물어보십시오.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勤勞條件이 우리가 나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改善해서 우리가 모든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加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勞動部의 政策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李海瓚委員 관련되는 補充質問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12代國會 議事錄에도 보면 ILO 加入問題에 관한 이런 유사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 때에도 勞動部에서는 뭐라고 答辯했느냐 하면 外交問題때문에 加入 안되는 것이지 勤勞條件이나 勤勞法때문에 加入안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議事錄에 실려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읍니다.

그 會議는 勞動法 改正 이후 會議입니다.

그런데 지금 長官께서는 勞動法改正이후에는 얼마든지 加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바로 12代 國會에서 이 문제가 提起되었을 때 外交問題라고 하는 말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ILO 加入을 위한 명확한 勞動基準을 저도 ILO 關係文獻을 갖다 놓고 바빠가지고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읍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産業災害安全施設이 미비해 가지고 ILO의 支援金이 중단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명확하게 ILO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條件에 관련된 일련의 基準 勞動時間 組合 産業災害安全施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ILO가 권장하고 있는 基準을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基準에 맞추어서 우리의 勞動條件이 합당한 지 안한 지가 얘기가 되어야 이 논쟁이 끝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밤 열한時까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李相洙委員 납득이 안가는데 그 「네가티브 컨디션」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 안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읍니까? 비밀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얘기해 주세요.

ILO 基準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勤勞條件이 미달하는 곳이 어디어디이다 한 번

지적을 해 주세요.

○李康熙委員 지금 ILO에 加入하는 문제가 나는 잘 몰라서 묻는데 나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加入을 해서 國際的인 그러한 勤勞의 環境을 國際的인 수준에 우리가 맞추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여기에 加入을 함으로써 빨리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먼저 加入하는 條件에 그러한 缺格事由가 걸리는 것이 있읍니까?

우리가 加入을 함으로 해서 國際關係에서 그런 것이 빨리 勤勞者 環境이 國際水準이 되어야 하는데…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단지 政治的인 또 國際的인 社會에서 ILO에 加入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 어떤 名譽的인 문제이지 加入함으로써 무슨 우리가 꼭 法的으로 規制를 받고 制裁를 받는 부분도 없고 加入 안했다고 해서 勤勞者를 위한 福祉 내지는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執行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아니 答辯을 해 주십시오. 네 가터브 컨디션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ILO의 支援基金이 중단되었던 원인 그리고 중단될 때 조건보다 현재 産業災害安全施設條件이 나아졌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答辯을 기왕에 나온 얘기이니까 매듭을 짓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 부분은 저희 局長으로 하여금 答辯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勤勞基準局長 金基德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 올리겠읍니다.

저희가 1977年度에 지금도 있읍니다마는 勤勞科學硏究所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읍니다.

이때 UNDP의 돈을 가지고 ILO에서 一次事業으로 5年間 100萬弗정도를 우리 나라에서 投入을 했는데 이때 주로 事業은 勞動科學硏究所에 필요한 각종 裝備 約 40萬弗 그리고 專門家들이 와서 여러가지 諮問에 응해 주는 그 돈이 約 40萬弗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가지 연구하기 위해서 海外硏修하는 것이 約 15萬弗 기타 約 5萬弗 이렇게 되어서 100萬弗을 5年間을 사용을 했었읍니다.

그러다가 2次事項을 검토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몇 個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勞動科學硏究所가 현재 36名 밖에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103名으로 大幅 增員을 좀 시켜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기타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아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었고…

○李海瓚委員 기타 몇 가지가 아니고 나머지 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 당시에는 增員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더 이상 2次事業에 대해서 일단 1次事業으로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일이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마치 KS 마크를 획득하면 商品의 品質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면 우리나라가 공인된 勤勞條件을 가진 先進國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만일에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가 勤勞集約的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될텐데 자꾸만 거짓말 해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지금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제가 政府에 들어오기 전에 勤勞者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政府에 들어와서 봐도 그렇고 ILO勸告事項이 저희가 두려워서 가입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스도 안하고 있고 또 美國도 ILO에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갔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성장하는데 ILO加入與否하고는 함수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또 勤勞關係法의 수준이 ILO에 가입된 나라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수준에 그리 못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개 ILO勸告條項을 美國이나 佛蘭西라든지 日本이라든지 거의 다 대개 한 육칠십% 밖에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반대로 저희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勤勞條件을 法律的으로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 ILO의 政治的인 분위기는 가입하기가 선뜻 어려운 입장이라고 逆說的으로도 말씀드

릴 수 있겠읍니다.

○李海瓚委員 ILO에서 권고하는 勞動條件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항목만 말씀해 보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마다 「컨벤션」이 나오기 때문에…

○李海瓚委員 今年度를 기준으로 해서 勞動時間은 몇 시간을 권고하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ILO에 여러번 참석하셔서 대충 기준을 알고 계신 것같은데 자꾸 얼버무리시는데 지난 12代 國會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때의 勞動法 條件이라는 것은 改正前의 勞動法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ILO 加入條件… 그 문제가 아니고 南北問題라고 분명히 그때도 答辯을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은 答辯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ILO에 관한 문헌을 충분히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勤勞條件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勞動時間은 週當 몇 시간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권고하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40時間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우리나라의 勤勞者의 평균 勤勞時間은 몇 시간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한 50餘시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40% 가까이 높지요?

세계에서 제일 勞動時間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産業安全災害率에 있어서 어제 業務報告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지요? ILO에서 권고하고 잇는 指數는 얼마입니까?

○李康熙委員 지금 우리 李委員한테 양해를 委員 입장에서 구해야겠읍니다.

質疑를 해놓고 상당히 심각히 논란이 되셔서 이 문제때문에 다른 質疑를 드릴 것도 많이 있고 또 다음 委員님도 계셔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李委員님 양해를 하시면 委員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서류로 勞動部가 제출하시면 어떻습니까?

○李海瓚委員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金炳龍委員 다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委員들한테는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말아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일단 質疑한 분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委員들 병신 모양으로 그것때문에 구애는 안받는다 실제 國際勞動機構에 가입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長官으로서는 현재 단 한번밖에 못 가봤는데요. 물론 政治的으로 國際社會에서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勤勞條件에다가 勤勞關係法을 우리 勤勞者들의 복지를 위해서 적용시키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나름대로 저는 오판이었는지 모르지만 저 長官으로서는 그렇게 확실히 판단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炳龍委員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규정이 나와있는 것이 40時間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자체가 벌써 안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40時間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ILO정신에 의거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政策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지요.

○李康熙委員 ILO에 대한 문제를 지금 勞動部 측의 答辯이 좀 불성실하다 하는 입장은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아까 어느 委員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國會 지난 年度의 議事錄을 보면 그때도 ILO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읍니다.

제가 오늘 또 왜 質問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막대한 國庫를 들여서 外國에 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會議에 참석을 한다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本人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國庫의 문제를 앞으로 長官이 交替되고 勤勞者 代表가 交替되고 企業人 代表가 交替되었을 때마다 한번 外遊하는 입장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 國際問題가 다루

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가 연속이 되어왔기 때문에 단 한번 갔다오신 실토적인 얘기에서 확실한 그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갔다오셨고 분위기상 보고 오셨다는 점에서 그러한 答辯이 확실하게 나오지 못한 것도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政府측에서 적어도 ILO에 가입하는 기본목적을 우리가 무엇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本質的인 문제를 가지고 확고부동한 자신속에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本人의 뜻으로 質問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勞動部長官 崔明憲 네 李康熙委員님이나 여러 委員님들의 뜻을 충분히 잘 이해하겠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도 생기고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의 뜻을 십이분 참작해서 政策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읍니다.

○金炳龍委員 發言 좀 주세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요.

지금 次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ILO에 加入하는 것이 특별한 무슨 의마가 없다 이런 式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政府가 그 會議에 해마다 參席을 합니까?

意義가 없는 한… 첫째 그 勞動機構에 加入하는 것이 적당히 外交關係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國際勞動機構니까 全世界的인 사람들이 다 加入을 하니까 加入이나 해둔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오산이다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政府가 그런 式으로 國際勞動機構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機構에는 상당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加入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야지 왜 적당히 별것 아니다 加入해 보아야 무슨 별 덕보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으로서는 1千萬 勤勞者에게는 상당한 得을 볼 수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소홀히 넘길 수 있어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는데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勞動時間을 줄이는 문제하고 ILO에 加入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확실히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ILO 勸告事項이 161個인가 해서 나라마다 그것을 다 못지키고 있는데 加入된 나라도 161個 중에서 100個를 비준한 나라가 스페인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그 밑으로 대개 비준하고… 이 비준은 ILO에 加入했다고 勸告를 하면 國會에서 비준을 해야 그것이 그 나라에 發效가 되는데 各 나라마다…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스페인이 100個를 비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與件만 造成이 되면 이 與件이라고 하는 것이 政治的인 與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外交的인 與件만 造成이 되면 언제든지 加入할 그런 의사가 뚜렷이 있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熙委員 外國問題 말씀드리는 순서가 되겠는데 外國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技術問題하고 기술에 대한 資本을 支援받는 것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현재 있는데 具體的인 事項은 현재 필요하다면 局長으로 하여금 答辯시켜도 괜찮을까요?

○李康熙委員 받는 문제하고 支援하는 문제가 南美 아프리카에 支援하는 문제가 어제 報告에 나왔는데 받으면서 또 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물론 주는 문제의 뿌듯함도 느끼고 國際的인 地位向上도 상당히 느끼고 있지만 그럴만한 어떤 國際的인 문제가 받고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성급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本人의 생각에서 質疑를 드리는데…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이 技術을 받는 것은 역시 저희보다 앞선 技術을 저희나라 產業發展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外國에 원조하는 것은 技術支援하는 것은 國際的인 協力關係를 돈독히 하는데 目的이 있고 두번째

걸들여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約 520萬弗정도 支援하고 있는데 職員이 나가 있읍니다마는 全部 거기 설치된 機械가 전부 저희 機械입니다. 그 機械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技術을 습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나라 機械市場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와 같은 것에도 일부 報告에서 나온 것처럼 「아프리카」라든지 中東地域에서 技術을 원하는 人力을 ILO勸告事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현재 技術敎育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李康熙委員 알겠읍니다.

그 다음에 아까 勤勞監督官에 관한 問題点이 많이 나왔읍니다.

勤勞監督官이 357名인데 實際로 資格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20名으로 答辯하신 것으로 아는데…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런 뜻이 아니라 375名 가운데 저희들이 公式으로 勤勞監督官要員으로 해서 공모해서 모집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런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래서 이 監督官들이 몇 個企業을 1人當 擔當을 하고 있으며 또 勤勞者들을 監督官 1人에 몇 名을 監督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女性勤勞監督官은 현재 몇 名이나 勞動部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勤勞監督官 1人當 擔當하고 있는 業體數가 294個에 勤勞者는 1萬2,786名입니다. 參考的입니다마는 女子勤勞監督官은 12名밖에 없읍니다.

이 12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勤勞監督官 한 사람이 294個 事業場의 1萬2,000餘名에 대한 監督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分野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報告를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政府가 行政改革審議委員會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檢討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勤勞監督官問題 産業安全部 昇格問題 그리고 지금가지 論議가 되었읍니다마는 國際課… 이것이 國際係밖에 없는데 이 國際係를 課로의 昇格問題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各 部處하고 協議하고 있읍니다. 많은 人員이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는 人員은 375名의 倍에 가깝게 필요한데 一次的으로 긴급하게 100名內外를 요청하고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年內로 보충해달라고 저희가…

○李康熙委員 실제로 700名정도가 있어야…

○勞動部長官 崔明憲 이 700名정도를 지금부터 敎育을 하고 훈련을 거쳐야만 충분한 業務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李康熙委員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計劃에 있어서도 人的資源問題때문에 勞動部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質疑를 하는 것은 勞動部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改善하고 또 앞으로 같은 部處끼리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따른 問題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과거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래의 분위기는 비교적 勞動部의 業務를 많이 이해하고 積極的인 그런 協助를 해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機構 즉 다시 말씀드려서 人力의 增員등 이런 문제는 財政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政府 全體的인 豫算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들 部의 部分的인 문제입니다마는 특별하게 다른 部處와 달리 考慮가 되고 있다는 點을 報告드립니다.

○李台燮委員 勤勞監督官 문제가 나와서 여쭈어 보겠는데 그것이 先進國에도 있는 制度입니까? 자세히 說明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崔明憲 先進國에도 있고 저희들보다는 상당이 고도로 훈련받고 敎育받은 人員을 가지고 이 業務를 專擔을 시키고 있읍니다.

日本의 경우를 參考的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日本 全體의 企業體數가 123萬1,145個인데 여기에 勤勞監督官이 3,216名이 있읍니다. 그래서 1人當 擔當하고 있는 業體數는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382個로 되어 있는데 그대신 勤勞者數는 機械化되어 있어서 반대로 9,823名을 擔當하고 있는데 日本의 勤勞監督官의 경우는 엄선된 公務員가운데에 다시 시험을 치루어서 선

발해 가지고 特別敎育을 필한 연후에 實際業務에 임하도록 그러한 措置를 하고 있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李台燮委員 美國이나 英國이나 獨逸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다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하여간 역시 監督이나 勤勞環境을 개선하는 모든 체제에 있어서 勞動行政을 원만히 펼려면 충분한 人的 資源이 따라야 되니까 豫算反映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勞動部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失業者問題때문에 우리 勤勞者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産業發展과 더불어 필연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떠한 代案없는 事業主側에 의해서 自動化「시스템」 機械化「시스템」에 의해서 일하는 勤勞者들이 失職을 당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機械化 自動化「시스템」에 맞는 勤勞者들의 失業에 대한 문제를 勞動部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勞動部뿐만 아니라 政府全體의 문제로 産業構造改編 機械化過程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失業者問題는 저희 政府部處에서 같이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읍니다.

가령 例를 들어서 農村人力問題 또 漁村人力問題 등등 綜合的인 次元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參考的으로 報告를 드립니다.

(金令培委員長, 張永喆幹事와 司會交代)

○李康熙委員 지금 얘기하신 政府次元이 아니라 勞動部次元에서 적어도 현재 生業을 갖고 있는 勤勞者가 機械化問題로 인해서 어떤 현재의 열악한 勤勞條件까지 뺏기고 失職당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勞動部가 철저한 對備策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質問을 마치겠읍니다.

○委員長代理 張永喆 다음은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시간이 너무 됐고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께도 미안하고 答辯하시느라 수고하시는 長官님 이하 公務員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욕심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가다가 시간이 너무 늦으면 停會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란」에서 돌아온 勞動者들 특히 病院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7時半까지 大林本社앞에서 찬비를 맞으면서 농성을 하고 있읍니다. 患者들이 전부 그 중에 한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들어갔고 나머지 患者들은 역시 길가에서 7時半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다하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 문제와 오늘 質問이 반드시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 시간만 불평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勞動狀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答辯을 들으면서 과연 이런 質問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政策質疑라고 하니까 政策에 관한 것을 물으면 좋겠는데 또 지나간 일의 適法與否를 따지는 경우도 있읍니다.

答辯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쩌다 國會議員 한 번 됐다고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사람 골병들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장래의 國會에서 하나하나 法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현재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한편 國會의 行政府에 대한 牽制的機能이라고 할 까 그 機能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法과 制度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質問을 本格的으로 하기 전에 答辯에 대해서 좀 섭섭한 점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림으로써 보다더 성실한 答辯을 듣고자 하는 제 욕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文松勉군의 水銀中毒事件에 관해서 報告가 있을 때 그 事件의 處理過程에서 公務員은 별로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報告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서 報告하시는 분이 그 사정을 낱낱이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심각하게 社會問題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公務員이 內部的으로나마 懲戒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잘못이 없었다는 변명이 불성실한 答辯이거나 거짓말이라는 점

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몇가지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文松勉군이 12月5日 入社한 이후 1月20日에 會社에서 앓기 시작했읍니다. 病院에 다니기 시작했고 2月8日에는 休職屆를 제출했는데 1月26日에 한강성심病院으로 하여금 疫學調査를 하게 했읍니다.

그 결과 6名의 勤勞者들에게서 水銀의 血中濃度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이 발견됐읍니다. 血中濃度가 400(마이크로미리그람)이 넘는 사람이 두 사람 300상태를 넘는 사람이 둘인가 셋이 되고 여섯 名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措置가 없었읍니다. 없었고 그 當該 여섯名의 勞動者들이 즉시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아무런 措置를 받지 못했읍니다.

그 결과는 當該勞動事務所에서도 알고 있었고 會社에서도 물론 알고 있었읍니다.

그이후 2月16日부터 病院에 入院해 가지고 3月5日 高大九老病院을 退院할 때까지 증세를 발견 못했고 3月14日에 비로서 서울大學病院에서 水銀中毒이라는 診斷書가 나왔읍니다.

아까 答辯하실 때는 有機溶劑中毒이라고만 答辯을 하셨는데 診斷書를 보면 분명히 水銀中毒까지 표현되어 있읍니다.

3月29日에 陳情書가 제출됐고 4月7日에 産災療養申請書가 제출돼었읍니다.

이미 1月26日에 조사한 결과가 當該勞動事務所에 2月初旬에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疫學調査結果와 이 事件에 있어서의 因果關係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專門家가 뭐라고 하든간에 그로부터 5月中旬에 言論機關에 報道될때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읍니다.

事業主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를 회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조사를 因果關係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勞動部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다가 5月18日인가 16日인가 新聞에 報道가 되자 5月24日에 1次疫學調査에 들어갔고 6月2日에 2次調査를 다시 들어갔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懲戒措置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좀더 밝히고자 한다면 이 성심病院의 疫學調査結果에 보면 그 水銀注入室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그 바닥에 水銀방울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調査報告書에 나와 있읍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또한 이 陳情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했읍니다.

그이후 저희가 事故가 난 후에 會社에 조사를 갔었는데 水銀注入口 「밸브」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깨끗하게 「모노륨」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內部設備는 전부 개조되어 있었읍니다.

勞動部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혀 얘기가 없었지요.

그날 그 자리에서 여섯名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전부 社長이 말하는 것과 꼭같은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그날밤에 夜間學校에 다니는 사람을 밤중에 다시 불러서 만나가지고 너 血中의 水銀濃度가 400(마이크로미리그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病인가를 설명해 주자 비로서 자기이익을 위해서 그당시 文松勉군이 근무하던 당시 水銀「밸브」가 옆에 새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를 했읍니다.

會社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밖에서 만났을 때는 실토를 했읍니다.

그다음 서울大學病院에서 文松勉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醫師와 一問一答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注入「밸브」가 그와 같이 고장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읍니다.

自己醫師에게 정확한 診斷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상태를 그리고 病歷을 말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있을리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주장을 오랫동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읍니다. 앞으로 저는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事件處理가 있고 企業主가 이와 같이 自己會社에서 病들은 사람을 내팽개치고 아무도 國家機關이 도와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양심있는 사람이 도와 주려고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不純分子이고 外部勢力입니다. 이번 文松勉君葬禮節次에 있어서 여러번 警察과 대

치했던 소위 在野團體 運動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결국 警察과 대치되어서 많은 사람이 부닥쳐 다치기도 하고 했읍니다마는 소위 이 不純分子 過激分子들은 어디서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정이 오늘 이 國會에서도 진지하게 答辯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역시 不純分子가 있게 마련이고 그사람들과 동조하는 國會議員들이 나가서 거기서 戰警에게 얻어맞는 불상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質問하겠읍니다. 高相國씨 事件을 혹시 長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카드뮴」中毒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事件입니다.

因果關係에 관한 문제가 밝혀져서 지금 産災處理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혜택을 받고있지 못한지 우선 먼저 물어 보겠읍니다.

(張永喆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 준비한 資料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京畿道富川市所在 건화상사 代表는 정화춘입니다. 이 會社의 勤勞者數는 230名 亞鉛 鍍金斑 酸處理部에 勤務하는 高相國 男子입니다. 47세 지난 3月24日 出勤準備중 어지러워 부천 대성病院에 入院하여 腦出血 高血壓으로 診斷받고 치료중 지난 4月19日 家族의 요청으로 城南 인하病院으로 轉院하였으며 인하病院에서는 患者의 血液 1「리터」중 「카드뮴」이 249「마이크로그람」으로 職業病 認定基準의 25倍나 검출된 점등을 이유로 「카드뮴」中毒으로 診斷하였으나 同年 5月9日 勤勞福祉公社 半月病院에서 조사한 결과는 作業關聯性이 희박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었읍니다.

當部에서는 「카드뮴」中毒이 희귀한 것으로 정확한 原因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카톨릭」醫大에 疫學調査를 의뢰하여 지난 5月27日부터 이광목教授등 4名이 조사한 결과 調査班이 5月27日 채취한 血中「카드뮴」濃度가 3.15「마이크로그람」으로 정상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와 있읍니다.

위 會社 作業場 공기중에서「카드뮴」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同僚勤勞者 12名이 血液中「카드뮴」濃度도 正常範圍였으며 과거 10餘年間의 職歷에서 「카드뮴」을 흡입할 수 있는 期間이 발견되지 않았고 患者의 증상이 다른 질병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등 때문에 「카드뮴」中毒 가능성이 희박하고 作業關聯性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었읍니다.

지난 7月5日 腎臟組織檢査 結果 「카드뮴」多量檢出 됐다는 東亞日報의 報道가 있었읍니다. 그전에 6月19 高相國씨가 인하病院에서 退院해서 6月25日 高相國씨가 自家에서 결국 死亡을 했읍니다마는 서울大病院 臨床病理科 서정욱教授 執刀에서 高相國씨에 대한 剖檢을 해 봤읍니다.

그리고 同年6月27日 녹십자臨床病理科 醫院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試料는 腎臟 肝 肺 血液등 冷凍試料 6件 分析要求 事項은 「카드뮴」 납 亞鉛등 3種이었었읍니다.

7月5日현재 檢査중이며 7月10日頃 分析終了 서울大에 結果通報 豫定으로 되어있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저희 當部로서의 措置計劃은 「카드뮴」中毒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희귀한 職業病인 점을 감안해서 7月18日 斯界의 專門家 15人으로 職業病判定審議委員會를 構成해서 7月22日 이 委員會 全員이 소집이 되어서 本件 調査 또는 診斷에 관련한 서울大醫大 인하病院 勤勞福祉公社 中央病院 「카톨릭」醫大 녹십자 臨床病理科醫院등 關係機關의 資料를 檢討해서 職業關聯性 여부 내지는 음식물 섭취 關聯性 環境關聯性 여부등에 대한 廣範圍한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단 職業病審議委員會는 서울醫科大學에서 3名 카톨릭醫大에서 2名 延·高·中大에서 각각 1名씩 그 다음에 人道主義協會에서 2名 社會福祉公社 安全公團에서 각각 1名 기타 醫大産業保健促進會에서 2名 그 다음에 科學硏究所에서 1名 計 15名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검출하기 위한 委員會가 개최 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면 一部 臟器를 추출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가 힘이 들고 결국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조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카톨릭醫大疫學調査에서 본인의 身體를 직접 조사의 대상으로 했읍니까? 그 與否를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 實務者들의 報告는 血液檢査를 직접 했다고 현재 報告가 되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調査報告書 寫本을 제가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른 病院에서 조사한 결과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직접 조사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래서 직접 醫師를 만나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요.

調査報告書에 의하면 引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引用된 資料만 가지고 간접적인 調査結果를 가지고 지금까지 職業關聯性을 인정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읍니다.

죽지 않았다면 이 판정이 그대로 관철됐을 것 아닙니까? 이 판정의 근거가 된 부분에는 세 차례에 걸친 勤勞福祉公社所屬 中央病院의 作業環境調査書가 역시 뒷받침되고 있읍니다.

그 조사중 일부는 鍍金班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 뒷받침되어 있읍니다. 作業環境測定結果報告書…… 그리고 勤勞福祉公社所屬 中央病院에서 「카드뮴」 또는 기타 重金屬을 분석할 수 있는 檢査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는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갖추고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業務報告 당시에도 報告를 드렸는데 아직 일부 미비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카드뮴」 부분인지의 여부는 제 자신이 아직 확인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盧武鉉委員 이제 확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결국 이 문제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마는 1985年6月4日 125回 國會의 質疑에서 職業病과 重金屬中毒 따위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質問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다음에 86年6月 130回 國會에서도 역시 같은 職業病 문제가 質問의 대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勤勞福祉公社에 있는 단 하나의 中央病院이 「카드뮴」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質問하나마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勤勞福祉公社에서 운영하는 病院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國家에서 長期的인 計劃을 세워서 政策的으로 國立病院 또는 公立에 가까운 病院에 職業病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어떤 設備와 醫療陣을 갖추도록 그 당시부터 계획을 세워온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어떤 具體的인 計劃이 계신지?

제가 왜 이런 質問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疫學調査를 하려 해도 專門家 없이 疫學調査가 될 수 없고 專門機器 없이 할 수가 없읍니다. 서너 坪짜리 방에 庭球場을 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마당에서 蹴球場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데 거기에 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具體的으로 세워놓고 계신지 간단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崔明憲 거듭 중복되는 答辯이 되겠읍니다마는 長官의 명예와 職位를 걸고 이 職業病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重點的으로 政策을 樹立 執行해 나갈 생각입니다.

○盧武鉉委員 제가 강조한 점은 醫療陣의 양성과 設備의 도입 그리고 各 工團에서 쉽사리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物的 뒷받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1年에 한 번씩 特殊檢診을 받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醫師가 없다면 돌팔이 醫師 돈 벌어주는 제도일 뿐이지 勞動者를 위한 제도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李康熙委員 지금 勤勞福祉公社가 직영하고 있는 赤字가 나는 병원에 대해서 앞으로 黑字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希望的인 것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경영에 있어서 黑字經營을 하려고 하면 그 병원에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職業病硏究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營利爲主로 하다가 보면 오히려 不誠實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職業病 문제만은 다소의 政府의 부담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投資를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方向設定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中央病院을 産災病院으로서 經營上에 赤字는 있지만 産災病院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다 할 수 있도록 國家的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勤勞福祉公社의 病院이 經濟問題나 여러 가지가 赤字가 나더라도 國費를 들여서 지원해서 다시 運營問題를 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전부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랬을 때 勤勞者에게 實際的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되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實際的인 혜택이라는 것은 병원으로서 患者에 대한 效果的인 治癒策이 아마 勤勞者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론여서 차제에 報告드리겠읍니다마는 이번에 政府에서 政府出損機關 내지는 投資業體에 대한 經營評價를 했는데 저희 福祉公社의 경우는 사실 제일 末尾를 차지했읍니다.

그래서 經濟長官會議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建議를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營利爲主로 해서 이러한 公社에 대한 經營評價를 한다면 현재 福祉公社가 가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營利部門에서 많이 果實을 낼 수 있는 産婦人科 小兒科 內科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반론도 제가 했읍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듭 중복이 되는 答辯이겠읍니다마는 政策的으로 産災 입은 勤勞者에게 어떠한 得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政策을 현재 좀더 積極的으로 實行할 생각입니다.

○李康熙委員 지금 제가 質問하는 취지는 中央病院을 開院 당시는 서울大病院에 능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었읍니다. 그리고 開院했는데 현재의 運營狀況에 있어서는 상당한 赤字가 나 있다 그러니 앞으로 國庫를 여기다 지원해서 現代施設을 갖추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勤勞者에게 實際的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國庫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一般病院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한다면 國庫를 지원해서 확장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質問드리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거기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대개 作業現場에서 災害를 입은 勤勞者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施設投資하고 治癒費를 國庫負擔으로 지원한다면 그것이 勤勞者에대한 間接的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康熙委員 治癒費를 지원해서 어떤 病院費를 갖다가 節減할 수 있는 代案을 해주시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李康熙委員 좋습니다.

○李海瓚委員 카드뮴 문제에 관해서 盧委員께서 質問을 하셨는데 勞動部측의 答辯은 職業病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런 취지로 答辯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補充質疑를 좀 하겠읍니다.

우선 건화상사의 高相國씨 사건이 나기 전에 건화상사에 대해서 카드뮴 이라든가 납등 重金屬 取扱에 대한 環境安全施設에 관한 測定을 勞動部에서 定期的으로 해왔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저희들이 이 業體에 대해서는 法에 규정한 대로 年 1回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會社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2回로 늘리겠다고 報告를 드렸읍니다마는 1年에 한 번씩은 한 것으로 파악이 됐읍니다.

○李海瓚委員 이 사건 이전에 한 사실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예.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 기록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高相國씨 事件 이후에 카톨릭 醫大팀이 作業環境測定을 했는데 會社측에 미리 알리고 했읍니까 그냥 가서 했읍니까?

答辯 안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건화상사 機械를 전부 가동하고 측정 했읍니까 아니면 일부만 가동하고 측정 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參考的으로 여기 저희들이 疫學調査報告書를 가져온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한번…

○李海瓚委員 疫學調査報告書를 저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會社의 경우는 특히 건화상사의 경우는 機械를 전부 가동하고 했을 때와 일부 가동하고 했을 때의 疫學調査의 결과가 전혀 달리 나올 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疫學調査에 참가한 사람이 機械를 전부 가동하고 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가동하고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읍니다.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추후에 파악해서 나중에 資料로 제출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職業病 문제중에서 因果關係가 勞動部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지금 檢討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화상사의 廢水 혹은 흙에 대한 重金屬 濃度檢査를 실시한 것이 나옵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廢水와 土質에 대한 檢査結果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읍니다.

○李海瓚委員 대체로 이러한 作業環境에서는 部分的으로 機械를 가동해 놓고 疫學調査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廢水라든가 흙이라든가 日常的인 作業環境이 오래 농축되어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濃度檢査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臨床的인 經驗的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亞鉛속에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高相國씨가 행한 業務가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鍍金班에서 酸處理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鹽과 亞鉛의 분말을 溶液에 섞어가지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런 작업은 法律的으로 몇 시간 노동하게 되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여섯 시간 하게 되어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런데 高相國씨의 경우는 통상 몇 시간을 했읍니까?

이런 일련에 관해서 전혀 조사해 보지 않고 職業病이 아니라고 단정하시는 勞動部의 基本立場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이에 관련된 조사를 저희 秘書陣에서 불과 하룻 만에 조사해서 報告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高相國씨가 「카드뮴」으로 해서 죽어가지고 社會的인 물의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勞動部에서 일련의 작업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質問이 나오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議會에 대해서 答辯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大法院 判例 입장이 作業場에서 사고가 나면 立證責任이 會社에 있는 것으로 해서 거의 作業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처음에 血中濃度를 재어 보니까 무려 正常人의 25배가 나왔읍니다. 그것이 祿十字病院에서 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組織檢査를 해보니까 무려 正常人의 15倍가 나왔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시간 勞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열두 시간 했읍니다. 그러면 최소한 人間的인 측면에서 産災處理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꾸물꾸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건화상사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作業停止시키거나 한 적이 있읍니까? 자꾸 말로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선 産災處理를 빨리 해주세요.

○李海瓚委員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서울醫大 病理學科에서 屍體剖檢 했지요? 그 屍體剖檢 結果를 왜 발표 안하고 있읍니까? 일련의 이런 情況的인 論據를 가지고 高相國씨의 경우 분명히 亞鉛을 취급했고 亞鉛 속에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고 여섯 시간 作業場에서 열두 시간 이상 노동했고 「카드뮴」으로 인해서 死亡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건화상사에 대한 作業環境 측정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가지 情況으로 봐서 職業病으로 인한 産災라는 것이 충분히 상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職業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입장에서 議會에 나와서 報告하시는 勞動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李康熙委員 剖檢을 서울大學病院에서 한 것이 사실입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그것은 祿十字病院에서

해서 서울大學으로 보냈는데 그 발표를 서울大學에서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高相國씨문제는 職業病이 아니라고 부정한 사실도 없고 行政處理上 審判委員會에서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結論이 나오는 대로 産災處理는 하겠읍니다마는 당연히 그 會社에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結論이 나기 전에 産災處理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일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剖檢結果에 대한 발표를 剖檢한 病院이 하게 되어 있읍니까? 勞動部가 하게 되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崔明憲 病院이 하게 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令培 잠깐 發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質疑중입니다마는 子正이 되었읍니다. 國會의 1日 1次會議 원칙에 따라서 일단 散會하도록 하겠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59分 散會)

○出席委員

金令培	金東仁	孫柱煥
梁慶子	李康熙	李潤子
李台燮	張永喆	李相洙
李海瓚	盧武鉉	石準規
李仁濟	金炳龍	金鎔采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立法審議官 宋芳燮

○出席國務委員

勞動部長官 崔明憲

○出席政府委員

勞動部

次官	李龍俊
企劃管理室長	鄭東佑
勞政局長	具然春
勤勞基準局長	金基德
職業安定局長	金濟憲
職業訓練局長	禹誠
勞動保險局長	姜斤熙

○其他參席者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理事長	李憲琦
韓國産業安全公團 理事長	鄭東喆
勤勞福祉公社社長	沈大燮
韓國海外開發公社社長	威永燾

【報告事項】

○請願回附

勞動關係法改正에관한請願

(7月18日 韓國勞動組合總聯盟委員長職務代理 李時雨로부터 金東仁議員외 紹介로 提出)

要 旨

1. 現行 勞動關係法은 아직도 勞動基本權을 制約하는 條項을 內在하고 있음으로 均衡있는 勞使關係와 勞動問題의 해결을 위해 勞動關係法 改正을 바람.
2. 우리나라 勞動關係法은 1953年 制定이후 계속 改惡되는 과정만 거쳐 資本蓄積을 위한 勞動統制手段으로 活用되어 正當한 勞動運動을 彈壓하므로 87. 7~9月 勞動者大罷業을 가져오게 한 原因이 됨.
   이후 다소 改善된 現行 勞動關係法은 아직도 勞動基本權을 制約하는 條項을 內在하고 있는 바.
3. 勞動者들의 勞動基本權이 보다 民主的으로 保障될 수 있도록 勞動關係法의 改正을 바라는 請願임.

7月19日字 回附됨.